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인도 편 —

2013. 11.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보람 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서 언

인도는 11억명의 인구를 지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토 면적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대국이다. 또한 인도는 일찍부터 의회민주주의가 잘 발전되어 정치적으로 매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발달된 민주주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인종과 언어가 존재하는 후진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인도는 폐쇄적인 자급자족형의 사회주의 특성을 가진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한때는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1991년에는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외환위기 이후에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고통받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국가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나라에게는 여전히 낯선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며 경제적인 활로를 찾아왔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도는 향후 우리나라가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인도의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의 하나로 인도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최근 인도는 외국자본에 대한 공격적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도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인도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본 보고서가 인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자 및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인도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급격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변화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가장 최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인도 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최기호 교수와 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의 최보람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 작성과정 중 세미나 등에서 크게 도움을 준 오은미 회계사, 김태환 회계사, 고빛나 세무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또한 본 보고서에 대한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서울시립대 김완석 교수, 본원의 홍범교 박사 그리고 본원의 세법연구센터 연구원들과 교정 및 편집에 수고한 연구행정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의 최종 단계에서 감수를 통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삼일회계법인의 관계자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목 차

제1편 총론	19
I. 사회 및 경제 환경	19
1. 사회 환경	19
2. 최근의 경제 환경	21
가. 경제성장 추세	21
나. 무역수지 동향	23
다. 최근의 경제동향	23
II. 조세체계	25
1. 세목의 구성	25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25
가. 조세법의 법원	25
나. 세무행정	26
III. 세수입 규모 및 구성	28
IV. 인도 세제의 개요와 조세정책 동향	32
1. 인도 세제의 개요	32
가. 기업에 대한 과세	32
나. 개인에 대한 과세	35
다. 국제조세	36
2. 조세동향	36

가. Direct Tax Code (DTC)로의 수정	37
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의 시행	39
다. 기타	40
제2편 소득세제	43
I. 법인-개인 소득과세(Income Tax)	43
1. 개관	43
가. 납세대상자	43
나. 소득의 분류	44
다. 과세연도	44
라. 납세의무의 범위 (Incidence of Tax)	44
마. 거주자의 구분	45
바. 소득의 종류	47
2. 면제 규정 (Exemption Provisions)	50
가. 중요 면제조항	51
나. 비영리기구와 관련된 면제	59
다. 무역자유지역에 신설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특례	61
라. 신규 100% 수출지향형 사업 (Export Oriented Undertakings: EOU)에 대한 특별 규정	64
마. 특별경제구역(SEZ)에 신설된 기업(Unit)에 대한 특례	65
3. 급여 (Salaries)	67
가. 급여의 개념	67
나. 과세의 기초 (Basis of Charge)	68
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69
라. 보상급여 (Allowances)	71
마. 복리후생급여 (Perquisites)	73

바. 퇴직급여(Retirement Benefits)	79
사. 급여 대체 수익(Profits in Lieu of Salaries)	80
아. 공제와 면세	81
자. 감면 규정	82
4.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84
가. 거주용 부동산(House Property) 소득의 개념	84
나. 소득의 계산	84
다. 수익의 인식 시기	86
라. 부동산의 공동소유	86
마. 소유자와 연간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	87
5.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87
가. 과세대상(Chargeability)	87
나. 사업소득의 계산	90
다. 감가상각비	92
라. 기타의 특별공제	98
마. 일반공제	99
바. 불공제 비용	102
사. 기타 특별규정	103
아. 특정 상황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나 지출	104
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의제 소득	105
차. 특례규정	105
카. 회계처리방법	107
타. 사업소득의 추계방법	107
6. 양도소득(Capital Gains)	111
가. 양도차익	111
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	113
다.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Computation of Capital Gains)	116
라. 특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120

마. 양도차익의 면제(Exemption from Capital Gains)	122
바. 기타 사항	124
사. 세율	125
7.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126
가. 소득의 종류	126
나.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	130
다. 불공제 비용	131
8. 손실의 상계와 이월(Set-off and Carry Forward of Losses)	131
가. 같은 소득항목하에서 한 원천의 손실과 다른 원천소득과의 상계	132
나. 하나의 소득 범주의 손실과 다른 소득 범주의 이익과의 상계	132
다. 손실의 이월 공제와 상계(Carry Forward and Set-off of Losses)	132
라. 결손 신고서의 제출(Return of Loss)	137
9. 개인에 적용되는 공제(Deductions Available to Individuals)	137
가. 지출에 따른 소득 공제	138
나. 소득에 따른 공제	144
다. 기타공제	145
10. 특수한 세액 계산방법	145
가. 총액 과세방법(Gross Income Taxation)	145
나.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149
11.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153
가. 비거주 인도인(NRI)의 정의	153
나. NRI 과세제도	154
다. 절차 규정	157
라. 비거주자 채육인, 연예인 및 체육협회에 대한 과세	158
12. 특수한 납세대상자(Person)의 납세 의무	160
가. 납세대리인(Representative Assessee)의 납세의무	160
나. 조합(Association of Persons)에 대한 과세	164
다. 파트너십 과세(LLP 포함)	170

1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174
가. 2013/14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174
14. 소득세 행정	176
가. 소득의 신고	176
나. 부과와 징수	180
다. 세금납부 및 징수	186
라. 과세 합의(Settlement of Cases)	203
마. 불복(Appeal Procedures)	205
바. 벌과금	209
사.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s)	213
아. 형벌(Prosecution)	217
15. 기타 사항	221
가. 세법규정의 실행과 관리	221
II. 구조조정세제	225
1. 합병(Merger)/기업합병(Amalgamation)	225
가. 합병 세무 처리	226
나. 합병 관련 세액의 계산	228
다. 해외 기업들의 합병	231
2. 기업분할	233
가. 분할 세무 처리	234
나. 분할 관련 세액의 계산	235
다. 해외 회사의 분할	237
3. 기타의 구조조정	238
가. 일괄 매각(Slump Sale)	238
나. 자산 매각(Asset Sale)	239
다. 청산	241
라.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법인으로의 전환	243

마. 사업의 승계(Succession in Business)	248
Ⅲ. 국제조세	250
1. 개요	250
가. 인도와 다른 국가 간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251
2. 인도 조세조약의 특정사항 검토	257
가.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257
나. 사용료 및 기술료	260
3.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261
가. 개요	261
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262
다.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행위	263
라. 절차 규정	265
4. 이전가격세제	266
가. 개요	266
나. 이전가격 규정	267
다. 정상가격 결정	269
라. 정상가격의 사전 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271
마. 문서화 의무	271
바. 가산세	273
사.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	274
아. 기타 이슈	279
자. 이전가격 관련 주요 판례	281
제3편 소비세제	285
I. 서비스세(Service Tax)	285
1. 개요	285

2. 납세의무자	286
3. 과세대상 서비스	286
4. 과세표준 및 세율	289
5. 면제와 감면	289
가. 일반 면제	289
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면제	290
다. 부분감면(Abatement) 및 총액 계산(Composition Scheme)	290
6. 세무행정 및 신고 납부	291
가. 소비세 및 관세 부분의 조직 체계	291
나. 사업자 등록	291
다. 서비스세 납부기한(Due Date for Payment of Service Tax)	292
라. 서비스세 납부방법	292
Ⅱ. 물품세(Exise Duty)	293
1. 개요	293
2. 물품세의 종류	294
가. 기본 물품세 의무	294
나. 물품세의 추가적인 의무와 특별 물품세	295
3. 납세의무자	296
4. 과세대상과 세율	296
Ⅲ. 판매세(Sales Tax)	298
1. 개요	298
2. 납세의무자	299
3. 과세표준	299
4. 세율	300
5. 면제	300
6. 사업 청산시 증양판매세의 납세의무	300

7. 제재	301
8. 주 판매세법(State Sales Tax Laws)의 일반 원칙	301
IV. 부가가치세(State VAT)	302
1. 개요	302
2. 과세대상과 세율	303
3. 과세방법	304
제4편 기타세제	305
I.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305
1. 개요	305
2. 과세대상 주식의 가액	306
3. 기타 규정	306
가. 증권거래세상 용어의 정의	306
나. 증권거래세의 징수	307
다. 서식의 제출	307
4. 증권거래세의 세무행정	307
가. 부과 절차(Assessment Procedure)	307
나. 불복(Appeals)	308
다. 형벌(Prosecution)	308
II. 배당분배세	309
1. 국내 회사가 배당금으로 분배한 수익에 대한 과세	309
가. 배당금의 정의	310
나. 배당금에 대한 세율	310
다. 배당분배세 납부기한	310
라. 배당분배세의 지연납부 이자	311

마. 가산세 및 법적 처벌	311
바. 배당분배세 공제 가능 여부	311
사. 해외 관할권의 배당분배세 공제 가능성	311
2. 뮤추얼펀드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	312
Ⅲ. 부유세(Wealth Tax)	313
1. 개요	313
2. 과세대상, 과세 포함, 감면 자산	313
가. 과세대상 자산	313
나. 과세에 포함하는 자산	314
다. 과세 제외 자산	315
3. 과세방법	315
가. 순자산의 계산방법	315
나. Foreign Citizens, Non-residents와 NOR의 순자산	316
다. 납세대상자(Person)에 따른 납세 범위	316
4. 과세행정	316
가. 신고 방법	316
나. 부과	317
다. 지연이자와 가산세(Interest and Penalties)	317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317
참고문헌	318

표 목차

제1편

<표 1-I-1> 인도의 인구분포	20
<표 1-I-2> 인도의 최근 연도별 · 산업별 GDP규모와 성장률	22
<표 1-I-3> 인도의 연도별 교역규모	23
<표 1-III-1> 인도의 연도별 세수입 규모와 구성	29
<표 1-III-2> 인도의 연도별 총세입 규모와 구성	31
<표 1-IV-1> 기업에 대한 과세	32
<표 1-IV-2> 개인에 대한 과세	35
<표 1-IV-3>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36
<표 1-IV-4> 기업에 대한 과세 변화	37
<표 1-IV-5> 개인에 대한 과세 변화	39

제2편

<표 2-I-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45
<표 2-I-2> NOR의 판단 기준	46
<표 2-I-3> 농업소득의 간주소득비율	53
<표 2-I-4> 특별경제구역(SEZ)에서의 사업(Undertaking)에 대한 공제율	63
<표 2-I-5> 특례 공제의 적용	65
<표 2-I-6> 비과세되는 복리후생급여	73
<표 2-I-7> 퇴직적립금 유형별 과세방법	79
<표 2-I-8> 지출의 공제	100

<표 2-I-9> 실제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106
<표 2-I-10> 양도소득의 추정가치 계산방법	117
<표 2-I-11> 자산별 취득원가의 산정	118
<표 2-I-12> 자본적 지출	119
<표 2-I-13> 양도차익의 면제	122
<표 2-I-14> 결손금의 이월	137
<표 2-I-15> 의료보험료	141
<표 2-I-16> 소득의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146
<표 2-I-17> 비거주자 인도인의 판단	153
<표 2-I-18> NRI의 소득에 따른 세율 적용	156
<표 2-I-19> 납세대리인	161
<표 2-I-20> 최고한계세율	162
<표 2-I-21> 구성원의 지분 불명 시 세율	165
<표 2-I-22> 구성원의 지분 명확 시 세율	165
<표 2-I-23> 파트너 보상에 대한 제한	171
<표 2-I-24> 개인(이전연도에 60세 미만), NRI/HUF/AOP/BOI/AJP	174
<표 2-I-25> 노인 거주자의 세율	175
<표 2-I-26> 고령 노인 거주자의 세율	175
<표 2-I-27> 기타 납세자에 대한 세율	176
<표 2-I-28> 신고기한	177
<표 2-I-29> 납세자별 서명 의무	180
<표 2-I-30> 통지의 기한	185
<표 2-I-31> 급여의 지급	188
<표 2-I-32> 유가증권 이자의 지급	188
<표 2-I-33> 배당금 지급	189
<표 2-I-34> 유가증권 이자 이외의 이자 지급	190
<표 2-I-35> 복권이나 십자말풀이 당첨금 지급	190
<표 2-I-36>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	191

<표 2-I-37> 커미션/중개수수료 지급	191
<표 2-I-38> 임대료 지급	192
<표 2-I-39>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지급	193
<표 2-I-40>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193
<표 2-I-41> 세금의 분납	197
<표 2-I-42> 위원회의 활동중지	204
<표 2-I-43> 벌과금	209
<표 2-I-44> 벌과금의 시효	212
<표 2-I-45> 기소규정의 요약	219
<표 2-I-46> 보고의무자	222

<표 2-III-1> 조세조약 체결현황	251
<표 2-III-2> 일부 한정된 조세조약 체결현황	253
<표 2-III-3> 제한세율 요약표	253
<표 2-III-4> 고정사업장의 판단 판례	258
<표 2-III-5> 대리인 PE의 판단 판례	259
<표 2-III-6> 서비스 PE의 판단 판례	260
<표 2-III-7> 문서화 의무 판례	272
<표 2-III-8> 회계법인 보고서 판례	273
<표 2-III-9> 세무조사 기한	277
<표 2-III-10> 고등법원의 주요 판례	278

제3편

<표 3-I-1> 서비스세 과세대상	287
<표 3-IV-1> VAT 과세대상과 세율	304

제4편

<표 4-I-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세율 및 납세의무자	305
<표 4-II-1> 뮤추얼펀드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	312
<표 4-III-1> 부유세 대상 자산	314
<표 4-III-2> 부유세 과세 제외 자산	315
<표 4-III-3> 납세대상자(Person)에 따른 납세 범위	316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Ⅲ-1]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체계	275
---------------------------------	-----

제1편 총론

I. 사회 및 경제 환경

1. 사회 환경

인도의 국토면적은 328만km²로 세계에서 7번째로 넓으며 2011년 현재 인구는 11억명으로 추산되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아래의 <표 1-I-1>은 인도의 2011년 현재 연령별 분포와 2016년 추정치를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인도의 인구는 2016년에는 12억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20대 이하의 인구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인구와 더불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강대국이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앞선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도 한다. 인도는 의회민주주의체제하의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 28개주, 7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특히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민자치제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일정 의석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하층 카스트들에게 할당하여 모든 계층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선진화되어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종교와 언어를 가진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조적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표 1-1-1〉 인도의 인구분포

(단위: 천명)

연령구분	2011년			2016년(추정)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0~4	114,878	60,745	54,133	114,101	60,353	53,748
5~9	113,486	60,092	53,394	113,309	60,022	53,287
10~14	118,577	61,318	57,259	112,880	59,803	53,077
15~19	121,727	63,479	58,248	117,928	61,014	56,914
20~24	118,038	62,281	55,757	120,774	63,028	57,746
25~29	101,956	54,079	47,877	116,887	61,687	55,200
30~34	88,905	46,050	42,855	100,854	53,458	47,396
35~39	80,759	40,595	40,164	87,811	45,398	42,413
40~44	73,464	36,773	36,691	79,536	39,858	39,678
45~49	65,211	33,218	31,993	71,954	35,856	36,098
50~54	54,195	28,157	26,038	63,204	31,990	31,214
55~59	42,837	22,390	20,447	51,624	26,589	25,035
60~64	32,405	16,693	15,712	39,886	20,606	19,280
65~69	24,397	11,991	12,406	29,097	14,759	14,338
70~74	18,943	8,909	10,034	20,851	10,048	10,803
75~79	13,092	6,075	7,017	15,025	6,851	8,174
80+	9,633	4,470	5,163	13,238	5,847	7,391
Total	1,192,503	617,315	575,188	1,268,959	657,167	611,792

자료: 인도 통계청 홈페이지(www.mospi.nic.in)

2. 최근의 경제 환경

가. 경제성장 추세

2000년대 인도경제는 급성장을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인도는 폐쇄적인 자급자족형의 사회주의 특성을 가진 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 국가 중심의 중공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정책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1991년에는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저개발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외환위기 이후에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2050년경에는 세계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인도가 2032년에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¹⁾

1) 삼성경제연구소, 코트라, 2006, 『인도경제를 해부한다-인도 진출을 위한 현장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p. 10.

〈표 1-I-2〉 인도의 최근 연도별 · 산업별 GDP규모와 성장률

(단위: 천만루피,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추정)
농업	594,487	619,190	655,080	655,689	662,509	709,103	728,667
	(0.051)	(0.042)	(0.058)	(0.001)	(0.010)	(0.070)	(0.028)
광업	86,141	92,578	95,997	98,055	104,225	109,421	108,469
	(0.013)	(0.075)	(0.037)	(0.021)	(0.063)	(0.050)	(-0.009)
제조업	499,020	570,458	629,073	656,302	719,728	774,162	793,468
	(0.101)	(0.143)	(0.103)	(0.043)	(0.097)	(0.076)	(0.025)
전기, 가스	67,123	73,362	79,430	83,050	88,266	90,944	98,105
	(0.071)	(0.093)	(0.083)	(0.046)	(0.063)	(0.030)	(0.079)
건설	258,129	284,806	315,495	332,329	355,717	384,199	404,617
	(0.128)	(0.103)	(0.108)	(0.053)	(0.070)	(0.080)	(0.053)
무역	535,397	594,918	655,013	692,224	746,178	813,079	904,884
	(0.122)	(0.111)	(0.101)	(0.057)	(0.078)	(0.090)	(0.113)
운송	280,010	315,166	354,507	392,901	451,035	517,376	557,888
	(0.118)	(0.126)	(0.125)	(0.108)	(0.148)	(0.147)	(0.078)
금융	492,340	561,063	628,124	703,629	769,883	849,995	931,714
	(0.126)	(0.140)	(0.120)	(0.120)	(0.094)	(0.104)	(0.096)
통신	440,426	452,823	483,917	544,497	610,096	637,675	674,703
	(0.071)	(0.028)	(0.069)	(0.125)	(0.120)	(0.045)	(0.058)
GDP	3,253,073	3,564,364	3,896,636	4,158,676	4,507,637	4,885,954	5,202,514
	(0.095)	(0.096)	(0.093)	(0.067)	(0.084)	(0.084)	(0.065)

주: 1. 괄호 안은 성장률.

자료: 인도 통계청 홈페이지

〈표 1-I-2〉는 최근 인도의 GDP 규모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인도경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2008년 6%로 하락하였으며 다시 2012년에도 6% 정도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무역수지 동향

인도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의 무역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1-I-3>은 2000-2001회계연도부터 2007-2008회계연도 간의 인도의 수출입 규모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교역규모는 2002년부터 거의 매년 20~30%씩 증가하여왔으며 불과 8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성장의 결과로 2009년 기준으로 인도는 수출규모 면에서 세계 22위, 수입규모 면에서는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교역규모 면에서는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²⁾ 또한 우리나라는 인도의 10위 수출대상국이고 9위 수입대상국으로서 2003년부터 급속하게 교역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I-3> 인도의 연도별 교역규모

(단위: 십억루피, %)

연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수입	2,309	2,452	2,972	3,591	5,011	6,604	8,405	10,123
수출	2,036	2,090	2,551	2,934	3,753	4,564	5,718	6,559
무역수지	(273)	(362)	(421)	(657)	(1,257)	(2,040)	(2,687)	(3,564)
교역규모	4,344	4,542	5,523	6,525	8,764	11,168	14,123	16,682
성장률		0.046	0.216	0.181	0.343	0.274	0.265	0.181

자료: 인도 통계청 홈페이지(www.mospi.nic.in)

다. 최근의 경제동향³⁾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경제의

2) KOTRA(2010), 『KOTRA 국가정보 인도편』 참조

3) KPMG, “2013 India budget”을 참조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12회계연도에 6.2%에 그쳤는데 2011회계연도에는 9.3%로 예측된 바 있다. 인도연방준비은행에서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6.5%로 다소 낮추어 잡았는데 이조차 2011회계연도의 예측치인 7.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러한 침체는 물가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부대효과로 볼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7.5%에 머무르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과 유동성 압박으로 투자자들은 더 큰 경기침체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투기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위기감 속에서 인도정부는 제2분기 말에 시행될 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2016년까지 연기하는 등의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성장을 되살리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013년 1월 인도 통계청에서는 2013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을 5%로 낮추어 예측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로 인하여 외부투자자들이 바라보는 2014회계연도 인도경제 예측은 낙관적이다. 세계은행에서는 인도경제가 2014년에는 6.4%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2013년 초의 5%에 비하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재정은 2012-13회계연도에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재정적자를 GDP의 5.1%로 축소하기로 하였지만 낮은 경제성장과 저투자로 인한 재정수입의 악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인도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투자등급을 투기등급으로까지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도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여전히 계속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 상황만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것과 동시에 인도정부의 개혁적인 조치들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조세체계

1.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제

직접세제: 소득세(income tax), 부유세(wealth tax), 이자소득세, 증여세

간접세제: 물품세(central excise duty), 관세(customs duties), 서비스세(service tax), 지출세(expenditure tax)

②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제

직접세: 농업소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영업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물품세(State excise), 토지수입세(Land Revenue), 사치세(Luxury Tax) 직
업세(Tax on professions)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가. 조세법의 법원

인도의 조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부과하지만 일부 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과하기도 한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인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도 헌법에서는 조세부과의 권한을 중앙과 주정부 간에 배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 246조). 헌법 제265조에는 이러한 권한에 대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되거나 징수될 수 없다”. 따라서 부과되거나

나 징수되는 조세 각각에 대해서는 국회나 주 입법기관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나. 세무행정

1) 국세청(Income Tax Department)

인도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기관이며 인도 국회에서 제정한 다음과 같은 세법과 관련된 행정을 맡고 있다.

- 소득세법
- 부유세법
- 증여세법
- 이자소득세법
- 재정법(Finance Act)

인도 국세청에서는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전가격과 같은 국세조세업무를 맡고 있다. 2012 재정법에서는 인도 국세청에 일반조세회피방지법을 통해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중앙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

중앙직접세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의 일부이다. CBDT에서는 인도의 직접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통해서 직접세 행정을 맡고 있다. CBDT는 1963년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에 의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중앙재정수입위원회는 1924년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최초 이 위원회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를 담당하였는데 담당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어 1964년 1월 1일부터 중앙직접세위원회와 중앙소비세 및 관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분리는 1963년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에 따른 것이다. 중앙직접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인도정부의 부문별 장관들이다.

3) 관세와 소비세에 관한 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

관세와 소비세에 관한 위원회는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 인데 이 조직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산하의 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의 일부 조직으로 부과와 징수, 밀수 방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CBEC는 하부 조직으로 Custom Houses, Central Excise Commissionerates 및 the Central Revenues Control Laboratory를 두고 있다.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표 1-Ⅲ-1〉에서는 인도의 연도별 세수입 규모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조세수입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수입은 알 수 없다.

〈표 1-Ⅲ-1〉에서 인도의 조세수입규모는 2012-2013년 예산기준으로 대략 10조 루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3-2004회계연도 조세수입이 2조 5천억루피였던 것에 비하면 10년 동안 거의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목별 비중을 보면 법인세가 2006-2007회계연도부터 30%를 넘기 시작하여 2009-2010년에는 40% 가까이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2012-2013년에는 35%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개인소득세, 관세와 물품세 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2-2013년 예산상으로는 물품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Ⅲ-1〉에서는 또한 매년 세목별로 조세수입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조세수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다소 정체되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20% 이상씩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물품세, 관세, 서비스세 등 간접세 등은 성격상 증가율이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III-1〉 인도의 연도별 세수입 규모와 구성

(단위: 천만루피, %)

		2003 — 2004	2004 — 2005	2005 — 2006	2006 — 2007	2007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2011 — 2012	2012 — 2013
총조세 수입	금액	254,348	304,958	367,474	473,512	593,147	605,299	624,528	793,072	901,664	1,077,612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가율	—	19.9	20.5	28.9	25.3	2.0	3.2	27.0	13.7	19.5
법인세	금액	63,562	82,680	101,277	144,318	192,911	213,395	244,725	298,688	327,680	373,227
	비중	25.0	27.1	27.6	30.5	32.5	35.3	39.2	37.7	36.3	34.6
	증가율	—	30.1	22.5	42.5	33.7	10.6	14.7	22.1	9.7	13.9
법인세 제외 소득세	금액	41,387	49,268	57,308	75,093	102,644	106,046	122,475	139,069	166,679	189,866
	비중	16.3	16.2	15.6	15.9	17.3	17.5	19.6	17.5	18.5	17.6
	증가율	—	19.0	16.3	31.0	36.7	3.3	15.5	13.5	19.9	13.9
이자 소득세	금액	(46)	50	13	5	3	9	4	4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증가율	—	(208.7)	(74.0)	(61.5)	(40.0)	200.0	55.6	0.0	(100.0)	—
기타소득 및 소비세	금액	50	36	31	62	38	18	(62)	29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증가율	—	(28.0)	(13.9)	100.0	(38.7)	(52.6)	(444.4)	(146.8)	(100.0)	—
관세	금액	48,629	57,611	65,067	86,327	104,119	99,879	83,324	135,813	153,000	186,694
	비중	19.1	18.9	17.7	18.2	17.6	16.5	13.3	17.1	17.0	17.3
	증가율	—	18.5	12.9	32.7	20.6	(4.1)	(16.6)	63.0	12.7	22.0
연방 물품세	금액	90,774	99,125	111,226	117,613	123,611	108,613	102,991	137,701	150,075	193,729
	비중	35.7	32.5	30.3	24.8	20.8	17.9	16.5	17.4	16.6	18.0
	증가율	—	9.2	12.2	5.7	5.1	(12.1)	(5.2)	33.7	9.0	29.1
서비스세	금액	7,891	14,200	23,055	37,598	51,301	60,941	58,422	71,016	95,000	124,000
	비중	3.1	4.7	6.3	7.9	8.6	10.1	9.4	9.0	10.5	11.5
	증가율	—	80.0	62.4	63.1	36.4	18.8	(4.1)	21.6	33.8	30.5
재산세	금액	0	0	(1)	2	0	1	0	0	0	0
	비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증가율	—	—	—	(300.0)	(100.0)	—	(100.0)	—	—	—

〈표 1-III-1〉의 계속

(단위: 천만루피, %)

		2003 — 2004	2004 — 2005	2005 — 2006	2006 — 2007	2007 — 2008	2008 — 2009	2009 — 2010	2010 — 2011	2011 — 2012	2012 — 2013
부유세	금액	136	145	250	240	340	389	505	687	1,092	1,244
	비중	0.1	0.0	0.1	0.1	0.1	0.1	0.1	0.1	0.1	0.1
	증가율	-	6.6	72.4	(4.0)	41.7	14.4	29.8	36.0	59.0	13.9
기타세금	금액	1,306	1,022	8,121	10,987	16,854	14,519	10,529	8,083	5,821	6,541
	비중	0.5	0.3	2.2	2.3	2.8	2.4	1.7	1.0	0.6	0.6
	증가율	-	(21.7)	694.6	35.3	53.4	(13.9)	(27.5)	(23.2)	(28.0)	12.4
연방관할 지역조세	금액	658	819	1,125	1,263	1,324	1,488	1,614	1,982	2,317	2,310
	비중	0.3	0.3	0.3	0.3	0.2	0.2	0.3	0.2	0.3	0.2
	증가율	-	24.5	37.4	12.3	4.8	12.4	8.5	22.8	16.9	(0.3)

주: 1. 2012-2013은 예산이며 나머지는 실제임.

2. '-'는 전년 금액이 0이거나 자료 미비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인도 재무부 홈페이지(indiabudget.nic.in)

〈표 1-III-2〉는 연도별 총세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2-13년 연방세수입이 총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III-2〉 인도의 연도별 총세입 규모와 구성

(단위: 천만루피)

	수익적 세입 (Revenue Receipts)			자본적 세입 (Capital Receipts)	총세입 (Total-Receipts)
	연방세수입 ¹⁾ (Tax Revenue)	세외수입 (Non-Tax Revenue)	합계		
2004-05	224,798	81,193	305,991	200,391	506,382
2005-06	270,264	76,813	347,077	179,549	526,626
2006-07	351,182	83,205	434,387	144,482	578,869
2007-08	439,547	102,317	541,864	197,978	739,842
2008-09	443,319	96,940	540,259	299,863	840,122
2009-10	456,536	116,275	572,811	453,063	1,025,874
2010-11	569,869	218,602	788,471	402,428	1,190,899
2011-12	629,765	121,672	751,437	568,918	1,320,355
2012-13 ²⁾	742,115	129,713	871,828	564,148	1,435,976

주: 1) 연방세수입은 총조세수입(Gross Tax Revenue)에서 주정부 지분(State's share)을 제외한 것임

2) 2012-13은 개정수치(Revised Estimates)임

자료: Receipt Budget 2013-2014, ANNEX-1 Trends in receipts
(<http://indiabudget.nic.in/ub2013-14/rec/annex1.pdf>)

IV. 인도 세제의 개요와 조세정책 동향

1. 인도 세제의 개요

본 인도 세제의 개요는 2012-2013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가. 기업에 대한 과세

인도의 소득세법은 개인과 기업 등에 관한 소득과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구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는 <표 1-IV-1>과 같다.

<표 1-IV-1> 기업에 대한 과세

항목	내용
거주성	인도 내에서 설립되거나 인도 내에서 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거주자이다. 거주자는 전 세계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인도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거주자 기업이 획득한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외 기업으로 과세된다.
과세소득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이익(사업 소득, 투자소득(passive income) 및 양도소득을 포함하고 법에서 규정된 사업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배당에 대한 과세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배당분배세가 과세되며 유효세율은 16.22%이다. 배당분배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수령자 단계에서는 면세된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표 1-IV-1〉의 계속

항목	내용
양도소득	<p>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특정 주식의 경우 1년)는 장기양도소득으로 본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또는 특정 채권의 장기양도소득은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해당 자산에 대하여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다). 인플레이션 조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장기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20%의 세율로 과세된다.</p> <p>주식과 특정 채권의 단기양도차익은 증권거래세 대상인 경우 15%의 세율로 과세되고 기타 자산의 단기양도차익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부가세(surcharge)와 부가목적세(cess) 또한 추가로 부과된다.</p>
손실	<p>사업손실과 양도손실은 8년 동안 이월공제된다. 이때 단기양도손실은 단기양도차익과만 상계되고 장기양도손실은 장기양도차익과만 상계된다. 미상각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손실은 세무신고가 신고기한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만 미래에 이월공제될 수 있다.</p> <p>사업손실이 사업이익과만 상계되는 반면 미상각 감가상각액은 모든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p>
세율	<p>국내 기업의 경우 30%,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한다.</p> <p>부가세와 부가목적세를 추가로 고려하면 최고 유효세율은 내국법인은 32.445%, 외국기업은 42.024%이다.</p>
부가세	<p>소득이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는 5%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외국법인에는 2%가 적용된다.</p> <p>추가적으로 3%의 부가목적세가 적용된다.</p>
최저한세	<p>최저한세는 조정회계이익(감면전 관세표준)의 18.5%이다.</p>
외국 납부세액공제	<p>과세소득의 외국소득 비율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p>
자본참가 면제제도	<p>없음</p>
지주회사 제도	<p>없음</p>
조세감면	<p>특정 과학분야를 위한 재단에 지출하는 것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과학 연구에 대하여 투하된 자본이나 자본적 지출액의 200%까지 공제한다.</p> <p>이러한 산업에는 냉동설비와 창고업 등이 있다.</p> <p>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수출소득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른 세금 혜택들은 산업과 지역별로 다르다.</p>

〈표 1-IV-1〉의 계속

항목	내용
원천세	<p>배당: 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16.22%의 배당분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이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0% (추가로 부가세와 부가목적세 부담)로 원천징수한다. 동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p> <p>2011년 6월 1일부터 사회간접자본 펀드로 구성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가 납세번호 (Permanent Account Number)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세율과 20%의 세율 중 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다.</p> <p>사용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으로 적용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고 비거주자가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세율과 20%의 세율 중 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다.</p> <p>기술자문료: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조세조약과 납세자번호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다.</p>
급여원천징수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12%를 사회연금(Provident Fund)에 납부한다.
재산세	300만루피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산의 총가치의 1%를 재산세로 납부한다. 이때 비영업용자산이란 토지,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연간 50만루피를 초과하는 종업원의 거주용 주택, 특정 귀금속, 차, 항공기와 요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연도	회계연도(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연결과세	연결과세는 허용하지 않는다. 각 기업은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필요사항	<p>회계연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납부된다 (납부연도: assessment year) 회사는 이 납부연도 9월 30일까지 최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제 거래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경우 11월 30일).</p> <p>장부가 감사받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나머지 납세자들은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조세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신청기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기업은 회계연도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선납하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의 15%를 6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의 45%를 9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의 75%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3월 15일까지 100%의 세금을 납부한다.</p>
사전답변제도	과세당국은 사전답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는 질의된 특정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다.

나. 개인에 대한 과세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 <표 1-IV-2>과 같다.

<표 1-IV-2> 개인에 대한 과세

항목	내용
개요	<p>인도의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p> <p>비정규거주자(not ordinarily resident: NOR)는 일반적으로 인도 내에서 통제되어 발생한 소득이나 인도에서 수령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p> <p>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p> <p>총소득에서 노인 거주자는 25만루피가 면제된다(60~80세), 고령노인(80세 이상)은 50만루피가 면제된다. 노인이 아닌 경우 거주자 여성은 19만루피가 면제되고 거주자 남성은 18만루피가 면제된다.</p>
거주성	<p>1년에 182일 이상을 머무르거나 직전 4년 동안 365일 이상 인도 내에 있던 개인이 60일을 머무르는 경우 그 개인은 인도의 거주자로 본다.</p> <p>인도를 떠나 인도 배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도시민의 경우 182일 규정만 적용되어 거주자를 판단한다.</p> <p>NOR의 경우 10년 중 9년이 거주자가 아니거나 연속된 7년의 기간 동안 730일 미만으로 인도 내에 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p>
신고 지위	<p>개인 납세자는 각 개인별로 신고와 납부가 수행된다. 이때 50만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제외된다.</p>
과세소득	<p>근로소득에는 모든 금전적 혜택이 포함되어 과세된다. 개인의 사업이나 전문직업소득의 경우는 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된다.</p>
경비 등의 공제	<p>의료비, 보험료, 퇴직연금, 주택담보이자, 교육비 등이 공제된다.</p>
세율	<p>세율은 30%가 최고세율인 누진세로 여기에 추가적인 부가목적세(applicable cess)가 가산된다.</p>
과세연도	<p>회계연도(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p>
신고와 납부	<p>고용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개인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원천징수와 선납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추가된다. 부과연도의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p>
자본취득세	없음
부동산세	없음
상속/증여세	없음

〈표 1-Ⅳ-2〉의 계속

항목	내용
사회보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10~12%를 사회연금(Provident Fund)에 납부한다.
재산세	300만루피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산의 총시가의 1%를 재산세로 납부한다. 이때 비영업용 자산이란 토지,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연간 50만루피를 초과하는 종업원의 거주용 주택, 특정 귀금속, 차, 항공기와 요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와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Ⅳ-3〉과 같다.

〈표 1-Ⅳ-3〉 국제거래에 대한 과제

항목	내용
이전가격	이전가격 규정은 OECD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특정 벌칙규정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격하다.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간주 규정들 때문에 주주관계나 지배력 관계를 넘어서 존재하기도 한다.
과소자본세제	없음
CFC 규정	없음

주: CFC는 Controlled Foreign Company

2. 조세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경기침체와 함께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Direct Tax Code(DTC)로의 수정

현 인도 세법의 근간인 소득세는 1961년에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제정된 법안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정이 가해져서 인도 세법은 그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목이 뒤섞여 있어서 매우 이해하기 난해한 세법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인도 과세당국은 1961년 제정된 인도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 8월 12일 새로운 직접세법(Direct Taxes Code Bill, 2010)(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인도 직접세에 구조적인 변화를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당초 이 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⁴⁾ DTC로 개정되는 경우 소득세, 배당분배세,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이며 자진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과세체제로 변환될 것이다. <표 1-IV-4>의 사항은 DTC로 인한 법인과세의 변동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 1-IV-4〉 기업에 대한 과세 변화

항목	내용
법인세	법인 소득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모두 부가세나 부가목적세 부담 없이 30%로 고정될 것이다.
지점세 (Branch profit tax)	30%의 법인 소득세에 추가하여 지점의 경우 15%의 세율로 총소득에 대하여 지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저한세	기업들은 20%로 최저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 동안 최저한세 추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STT(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폐지될 예정이다.
재산세	재산세는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인에게 과세된다(현재 재산세의 면세점은 300만루피이다).

4) <http://indiatoday.intoday.in/story/budget-2012-direct-and-indirect-tax-reforms-to-miss-deadline-says-pranab/1/178042.html> 2012년 3월 세법 변경 시한을 놓쳤다는 재무장관의 발표 이후 아직 발효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표 1-Ⅳ-4〉의 계속

항목	내용
원천세	<p>배당: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한 배당의 경우 DDT를 적용하지 않을 때 소득지급자는 10%의 세율(조세조약으로 제한세율이 없는 비거주자 수령인의 경우 20%)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부가세와 부가목적세는 추가되지 않는다.</p> <p>이자, 사용료, 기술사용료: 위와 동일하다.</p> <p>기타: 비거주자의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 역시 부가세와 부가목적세는 추가되지 않는다.</p>
조세조약의 우선 (Treaty override)	조세조약의 조항들은 국내법보다 우선하지만 이때 GAAR(General Anti Avoidance Rule), 국외지배주주(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직접세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
국내 기업	국내 기업(domestic company)이란 인도의 거주자인 기업으로 정의될 것이다.
손실	손실은 무기한 이월공제된다.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범위에 모든 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며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는 자산이 포함된다.
자본 차익 (양도 차익)	투자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이때 단기양도와 장기양도 사이의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1981년 4월 1일을 자본 재화 계산 시 취득의제 시기로 정하던 것을 2000년 4월 1일로 변경한다.
인센티브	면제 규정 중 일부가 폐지되고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대체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관계 회사로 구분되는 양 기업 간 면제규정이 강화되고 사전합의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s)와 거래에 관한 엄격한 규정 (safe harbor rules)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기업이 아니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인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8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벌과금	벌과금은 과소 납부세액의 100~200%의 금액으로 한다.
GAAR	신설규정인 GAAR은 조세회피 의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권한을 과세관청에 부여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조세회피에는 정상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DTC(신설 직접세법)의 약(오)용에 따른 조세회피, 상업적 실질의 결여, 신의성실의 위반에 따른 조세회피가 해당한다.

개인에 관하여 개정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 1-Ⅳ-5〉와 같다.

〈표 1-IV-5〉 개인에 대한 과세 변화

항목	내용	
거주성	거주자에 대한 과세 원칙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나 NOR(not ordinarily resident)이라는 개념은 폐지된다. 또한 인도 시민(Indian citizen)이나 인도에 방문한 인도 출신 인(person of Indian origin on a visit to India)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예외규정들도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와 공제	<p>다음의 경우 각 한도까지 면제(공제) 규정이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연금과 같이 승인된 기금에 대한 투자: 10만루피까지 - 특정인에 대한 생명/건강 보험과 교육비: 5만루피까지 - 자가 거주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 15만루피까지 - 의료비: 5만루피까지 <p>다음의 면제(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임차료, 여행 경비,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자선기관의 대출 이자 	
과세 구간 (Tax brackets)	개인 과세구간과 세율은 범위가 넓어진다. 성별의 고려 없이 기본 면제한도는 20만루피로 유지된다. 노인을 위한 면제는 25만루피로 높아지게 된다. 각 과세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구간	세율
	20만루피	면제
	20만루피 초과 50만루피 이하	10%
	50만루피 초과 100만루피 이하	20%
100만루피 초과	30%	
재산세 (capital tax)	1천만루피를 초과한 순자산은 1%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조세조약 적용	외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인도 내에서 조세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국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의 시행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조세회피거래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일률적으로 모든 조세회피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다. 인도는 이러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2010년에 제정하였고 2011-1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표하였지만 국내외 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이러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도의 경우에만 국내외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특정 기업에 과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1962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인도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은 영국계 통신회사인 보다폰과의 조세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를 다시 과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다소 무리한 소급과세 규정을 삽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규정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보다폰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계 회사들도 조세회피로 과세되게 되어서 대략 80억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정부까지 나서서 인도정부에 새로운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게 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에 밀린 인도정부는 당초 시행일로 공표했던 2011-12 회계연도에서 2012-13회계연도로 시행을 1년간 유예를 했지만 국내외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유치가 시급해지면서 2013년에는 또 다시 시행일을 2016-17회계연도로 유예하게 된 것이다.

다. 기타

2013-14회계연도의 주요 조세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세율

직접세의 경우, 대표적으로 개인과 법인소득세율의 변동은 없다. 소득이 50만루피 이내인 인도 거주자들에게 연간 최대 2천루피까지 소득세를 환급한다. 개인의 과세 소득이 1천만루피를 초과하면 연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과세소득이 1억루피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율이 내국법인은 5%에서 10%로, 외국법인은 2%에서 5%로 각각 인상된다.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분배세는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

한 부가세율 인상은 1년간 적용된다.

간접세의 경우, 관세, 물품과 서비스세율은 변동 없다. 그러나 냉방시설이 있는 식당이나 주차시설에 대한 서비스세가 도입되는 등 과세범위가 제한적으로 넓어졌다. 또한 사치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성능 자동차, 자전거와 요트 등에 대한 관세, 2천루피를 초과하는 휴대전화나 SUV 차량에 대한 물품세, 2천평방피트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나 1천만루피 이상의 부동산 이전에 대한 수수료 등에 대한 서비스세 등이 인상되거나 추가되었다.

2) 조세감면

- ① 전력생산에 대한 조세감면의 일몰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 ② 2013년 4월1일부터 2015년 3월31일 사이에서 10억루피 이상의 신규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15%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장이나 기계에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은 제외되며 거주목적이나 사무실에서의 집기 등도 제외한다.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인도 내 혹은 밖에서 사용되던 것이 아니어야 하며 만일 공제를 받은 후에 처분하거나 이전하면 공제받은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즉각 과세한다.
- ③ 이전 조세감면에 대한 대체로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도 기업에 대해서 추가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합병이나 인수로 인한 신규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1유형으로 등록한 벤처기업펀드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⑤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등록된 협회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거래세를 부과한다.⁵⁾
- ⑥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증권화신탁이익에 대해서 면세한다. 개인 혹

5) PwC, 2013, Navigating growth amidst challenges Union Budget p. 26

은 HUF⁶⁾에 대해서 25% 기타 30%가 부과되는 배당분배제도 면제한다.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

농지를 제외한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인도 거주자에게 처분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처분대금의 1%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인지세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만일 인지세 과세표준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요청에 따라서 과세당국이 인지세 과세당국에 적절한 시가표준을 조회한다.

4) 과세기반 확충

비거주자의 사용료나 기술료 등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본세율은 25%로 인상한다. 그리고 인도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총국외배당(지분율 26% 이상)에 대해서 2013-14 회계연도에 한하여 세율을 15%로 적용한다. 이러한 배당이 50% 이상을 소유하는 해외회사로부터 온 것일 때에는 이 금액을 배당분배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 분배소득으로 보아 20%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매입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가 된다. 또한 모든 비지분펀드에서 개인이나 HUF에 분배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12.5%에서 25%로 인상한다.

6) Hindu Undivided Family의 약자로서 인도의 독특한 납세대상자임.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함.

제2편 소득세제

I. 법인-개인 소득과세(Income Tax)

1. 개관

가. 납세대상자

인도 소득세법은 납세대상자(person)⁷⁾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ncome Tax Act 2(31)).

- ① 개인(individual)⁸⁾
- ② 힌두 비분리 가족(HUF: Hindu Undivided Family)⁹⁾
- ③ 기업(company)
- ④ 유사파트너십(firm)¹⁰⁾
- ⑤ 조합(association of persons or a body of individuals)¹¹⁾
- ⑥ 지방당국(a local authority)

7) 납세대상자는 'person'을 번역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와는 달리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의미로 이용하였다.

8) 자연인을 의미한다.

9)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파트너십은 제3자 간에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이는 혈통상으로 묶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중과 유사한 개념이다.

10)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도관체로서의 파트너십은 아니며 여러 명이 함께 일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계약을 맺은 실체로서 파트너십은 파트너와 분리된 납세의무를 가진다.

11)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결성한 단체를 의미한다.

⑦ 기타 법률상의 납세자(every artificial juridical person)¹²⁾

나. 소득의 분류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Income Tax Act 14).

- ① 근로소득(Salaries)
- ② 부동산소득(Income form house property)
- ③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 ④ 양도소득(Capital gains)
- ⑤ 기타 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다. 과세연도

세무상 과세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하는데 3월 31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이 과세 대상연도가 되며 이를 이전연도(previous year)라고 부른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직 전연도 4월 1일부터 당기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전체 소득이 이 법하에서의 소득이다(Income Tax Act 3).

라. 납세의무의 범위(Incidence of Tax)

납세의무자는 일반거주자, 비정규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다(Income Tax Act 5).

- ① 일반거주자(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과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 ② 비정규거주자(NOR: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인도 내에서 수령

12) 앞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실체를 말한다.

한 소득과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인도 내에서 설립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 ③ 비거주자(non-resident):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과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마. 거주자의 구분

거주 상태는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에 거주하는 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가릴 뿐만 아니라,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선 납세대상자(person)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Income Tax Act 6).

〈표 2-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의 판단	기준
개인	1. 개인이 과세기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총 182일 이상일 것 2. 개인이 과세기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이고, 직전 4년 동안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일 것
HUF/Firm/ 인적조합(AOP)/ 기타 납세자	과세기간 동안 실체(entity)의 사업을 인도에서 부분적 또는 전부 경영하고 통제할 것
기업(company)	인도 기업이거나 전년도에 기업의 사업을 인도에서 전부 통제하고 경영할 것

1) 개인의 거주자 판단(residential status of an individual)

〈표 2- I -1〉의 일수는 연속적인 체류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도착한 날부터 떠난 날까지로 계산한다(Income Tax Act 6).

다음의 경우는 거주자 판정 시 예외가 된다.

- ① 인도 시민이 항해를 목적으로 떠나 있거나 고용상의 이유로 인도를 떠나 있을

경우

- ② 인도 시민과 인도로 온 인도계 인(indian citizens and persons of indian origin coming to india)의 경우 이들이 정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인도에 방문목적으로 방문하고 머무를 경우

다만, 체류일수가 182일 이상일 경우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위 표의 판정 기준에 따라 거주자가 된다.

2) 비정규거주자(NOR) 판정의 기준

HUF나 개인은 NOR이 될 수 있다. NOR은 근본적으로는 거주자이지만 과세소득의 범위가 제한된다. 거주자는 인도 내에서 수령하거나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NOR은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인도에서 설치된 사업이거나 인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NOR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처리, 조세회피를 위한 비거주자에 의한 거래 처리 및 유언집행인이 주관하는 사망인의 재산에 대한 과세 처리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처럼 취급한다(Income Tax Act 6).

〈표 2-1-2〉 NOR의 판단 기준

분류	기준
개인	직전연도 10년 중에 9년을 인도를 떠나 있었거나 7년 동안 729일을 초과하여 인도에 체류하지 않은 개인
HUF	직전연도 10년 중에 9년을 인도를 떠나 있었거나(head of the HUF), 729일을 초과하여 인도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HUF의 manager)

바. 소득의 종류

1) 소득의 유형

- ① 이익과 이득(profit and gains): 소득세는 수익이 아닌 이익 혹은 이득에 대해 부과한다.
- ② 배당(dividends): 기업(company)이 지급하는 분배금액이지만 2011년 4월 3일 이후 인도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배당분배세가 부과된다.
- ③ 기부수익(voluntary contributions): 승인받은 비영리단체나 연구소 등이 받는 자발적 기부금을 말한다.
- ④ 현물급여(perquisite or profit in lieu of salary): 급여 대신에 받는 복리후생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용인이 종업원을 위해 납입하는 연금 중 연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 등이 있다.
- ⑤ 실비변상 급여(allowance or benefit): 납세자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해준 금액을 의미하는데 교육비, 이사비용 등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⑥ 보상급여(benefit or perquisite from a company): 기업의 임원이나 주주 혹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전 혹은 비금전 보상금액을 말한다.
- ⑦ 납세대리인의 보상급여(benefit or perquisite to a representative assessee or a beneficiary): 납세대리인이 받은 보상금의 가치를 말한다.
- ⑧ 법 제28, 41, 59조에 따른 특정 수익 합계¹³⁾
- ⑨ 양도소득(capital gains): 자본재산의 이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한다.
- ⑩ 보험소득(insurance profits): 상호보험회사의 보험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이득을 말한다.

13) 법 제28조: 보상받은 금액, 비금융이자, 수입라이센스의 판매 수익 등 법 제41조 또는 제59조: 대손충당금 환입, 과학 연구 목적 자본재 자산의 판매로 공제 받은 초과금액

- ⑪ 은행소득(banking profits): 은행업으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 ⑫ 복권소득(chance winnings)
- ⑬ 종업원이 부담하는 종업원 복리후생(employees' contribution to employee welfare funds):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준비기금, 퇴직연금 등을 종업원이 고용주를 대신해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고용주의 소득이 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납부한다면 이는 고용주의 비용이다.
- ⑭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수증(monetary and non-monetary receipts): 5만루피 이상의 금전 수령, 자산 취득은 소득이다. 그러나 친척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결혼, 유산의 방법 등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간주소득(Deemed income)

소득은 반드시 실제로 수령하거나 인도 내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도 내에서 수령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도 특정한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인도 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이며 제8조는 배당소득이고 제9조는 인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이다.

① 간주소령(Income Tax Act 7)

다음과 같은 소득은 납세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i) 종업원이 가입한 연금의 이자로서 중앙정부가 고시한 이자율(현행 9.5%) 이상인 금액
- ii) 고용주가 종업원의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

② 배당소득

기업이 선언하거나 분배하거나 지급한 배당금은 해당 시점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③ 인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i) 인도 내의 관련사업, 인도 내의 재산 혹은 인도 내의 자산이나 원천소득으로부터 생겼거나 혹은 이를 통해서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생긴 소득

여기에서 인도 내의 관련사업(Business connection)이란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속대리인을 통해서 수행한 사업활동 개념을 포함하며 인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익이나 이득을 창출하는 비거주자가 수행한 사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이익이나 이득 창출에 기여한 인도 내에서의 활동과의 연관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인도 내에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모든 활동이 전부 인도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where all operations are not carried out in India): 모든 활동이 전부 인도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인도 내에서 수행된 부분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 수출용 재화의 구입(purchase of goods for export): 비거주자의 경우 모든 수출용 재화의 거래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뉴스의 수집(collection of news): 인도 밖으로 송출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뉴스 수집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특정 영화 제작(shooting of cinematographic films in India): 인도에서 외국인, 비거주자인 법인 등(해당 법인은 인도 시민권 혹은 거주자인 파트너나 주주를 가지지 않아야 함)이 제작하는 영화

ii) 인도 내에서 받는 급여

인도 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했을 때 급여로 보아서 과세한다.

iii) 인도정부가 인도 국민에게 인도 외에서의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급여

인도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인도 국민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록 그 급여가 인도 외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도 내에서 지급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iv) 인도 외에서 인도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v) 특정한 경우의 이자소득, 사용료, 기술료

다음의 이자소득, 사용료, 기술료는 비록 인도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 인도정부로부터 받은 이자, 사용료, 기술료
- 인도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 사용료, 기술료
-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 중에서 인도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달된 차입금의 이자 혹은 사용료와 기술료

2. 면제 규정(Exemption Provisions)

소득세법 제10조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계산 시에 면제되는 소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 항목들은 사회, 경제, 정치, 국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해당 조항의 내용과 범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법 조항과 면제 조항의 해석 규칙에 대한 다양한 사법 판결들에서 추론될 수 있는 광범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제10조에 열거된 소득들은 총소득 계산 시 완전히 제외된다. 그러나 몇 가지 조항들에서는 면제 처리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이 있다.
- 일부 면제 조항은 소득의 특성이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예: 농업소득이나 자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소득). 이 경우 소득 수령자에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A조에 따르면 면제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다른 과세소득에 대해 이러한 경비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이중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특정 소득이 특정 조항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자신이 면제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중요 면제조항

1) 농업소득¹⁴⁾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농업소득이란 인도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개인, HUF, 인적 조합(Associate of Person: AOP) 또는 BOI(Body of Individuals)의 경우 농업소득은 비농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농업소득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partial integration)은 순농업소득이 5천루피를 넘고 비농업소득이 과세연도 동안 최대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사례 2-1-1〉 농업소득의 계산

2010/11과세연도의 크리쉬나 씨의 비농업 과세소득이 19만루피이고 농업소득이 (a) 5천루피 (b) 15만루피라고 가정할 때 그가 지불해야 할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 농업소득이 5천루피를 넘지 않으므로(농업소득의) 부분적 포함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는 19만루피에 대해서만 계산되어 3천루피가 된다.
- (b) 농업소득이 5천루피를 넘고 비농업소득이 최대 면제한도를 초과하므로 부분적 포함방식이 적용되어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4) 소득세법 제10조(1)조, 제2(1A)조

(단위: 루피)

단계	금액
1단계	
농업 및 비농업소득의 합계	340,000
340,000루피에 대한 조세	22,000
2단계	
160,000루피(비농업소득의 최대 면제 한도)와 농업소득을 합계	310,000
310,000루피에 대한 조세	16,000
3단계	
1단계 조세에서 2단계 조세를 차감함	
비농업소득에 대한 조세(22,000-16,000)	6,000

〈사례 2-1-2〉 농업소득의 면제

람(Ram)씨는 2010/11과세연도 동안 농업소득 30만루피와 비농업소득 9만루피를 벌었다. 이때 비농업소득이 해당 연도의 최대 면제 한도인 16만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분적 포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농업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없다. 또한 농업소득은 그 자체로 소득세가 면제이다.

납세자가 부분적으로는 농업소득이고 부분적으로는 비농업소득인 종합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종합사업소득은 납세자가 경작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감면된다.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면 추정비율을 법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¹⁵⁾

15) 소득세법 제10(1)조, 제2(1A)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 7A, 7B, 8조

〈표 2-1-3〉 농업소득의 간주소득비율

(단위: %)

종합소득	간주소득비율
고무 재배 및 제조로 벌어들인 소득	35
판매자가 재배 및 가공한 커피 판매로 벌어들인 소득	25
판매자가 재배, 가공, 로스팅 및 그라인딩한 커피 판매로 벌어들인 소득	40
차 재배 및 제조로 벌어들인 소득	40

2) 구성원이 HUF로부터 받는 소득¹⁶⁾

개인이 HUF 회원으로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금액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제된다.

- a) 해당 총액이 HUF 소득에서 지불된 경우, 또는
- b)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그 총액이 HUF에 속한 재산의 소득으로 지불된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중과세방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HUF의 소득은 HUF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당 소득에서 회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3) 파트너십의 지분¹⁷⁾

파트너십인 경우 유사파트너십(firm)의 총소득에서 파트너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제는 이중과세방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LLP)는 법 제2(23)조에 나오는 유사파트너십(firm)으로 본다. LLP와 그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십 및 그 파트너와 같은 방식으로

16) 소득세법 제10(2)조

17) 소득세법 제10(2A)조

과세된다.

4) 비거주인 외부 계좌(NRE) 이자소득¹⁸⁾

개인의 경우, 인도 은행에서 비거주인 외부 계좌(NRE: Nonresident external account)를 통해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면제는 외환 관리법 또는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해당 계좌 유지 허가에 따라서 인도 이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허용된다.

5) 항공기 임차료 지급¹⁹⁾

인도 회사가 해외 정부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항공기/항공기 엔진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순지급액(총액-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7년 3월 31일 이후 체결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계약에 대해서 혜택이 부여된다. 임대한 항공기 운영에 사용되는 부품,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대금은 면세되지 않는다.

〈사례 2-1-3〉 항공기 임차료 지급시 세액

인도 회사인 스카이 에어라인 리미티드는 해외기업인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한 대를 1억루피의 연간 임차료를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스카이 에어라인은 항공기 운항 사업을 하고 2007년 4월 30일에 체결한 계약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양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은 임차료 지불 금액에 대한 세금도 인도 측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임차료 지불에 대해서는 해당 지불 금액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0,000,000 / (100 - 10) \times 10 = 11,111,111 \text{루피}$$

18) 소득세법 제10(4)조

19) 소득세법 제10(6BB)조

동항의 면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도 회사는 지불한 금액의 10%인 1천만루피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6)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²⁰⁾

생명보험에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 종업원수익자보험금(Keyman Insurance Policy)에 따라 수령한 금액
- 보험 가입자가 유지 분담금(maintenance contribution)을 부담한 장애인 부양자 사망 시 수령한 금액
- 해당자의 사망을 제외한 고수익보험²¹⁾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7) 비거주자의 특정 이자 소득²²⁾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① 비거주자의 본국 송환 불가한 현지화 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자
- ② 지정 은행에 가지고 있는 외화 예금에 대해 비거주자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벌어들인 이자²³⁾
- ③ 해외 금융기관에서 2005년 4월 1일 이후 개설된 예금에 대해 비거주인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벌어들인 이자

20) 소득세법 제10(10D)조

21) 보험의 수익률이 보장원금의 20%를 초과하는 보험

22) 소득세법 제10(15)조

23) 이러한 예금이 수락되려면 RBI의 승인이 필요하다.

8) 장학금²⁴⁾

교육비 충당을 위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마드라스 대법원은 CIT v VK Balachandran (1984) 147 ITR 4 (Mad)에서 지불 목적이 교육비 충당을 위한 것인 경우, 수혜자가 해당 금액 전액을 쓰거나 그 중 일부를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는 장학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9) 승인된 과학연구기관의 소득²⁵⁾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 또는 사회과학 연구나 통계 조사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승인된 연구기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 ① 해당 기관이 그 소득을 전적으로 그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 또는 적립
- ② 정해진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을 것

10) 뮤추얼펀드 소득²⁶⁾

다음과 같이 뮤추얼펀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 ①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 등록된 뮤추얼펀드
- ② 공공부문 은행이나 공공 금융기관이 만들었거나 RBI가 승인한 기타 통지된 뮤추얼펀드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투자자(unit holder)에게 배당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법 제10(35)조는 이러한 뮤추얼펀드에서 투자자가 받은 소득은 투자가 단계에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24) 소득세법 제10(16)조

25) 소득세법 제10(21)조

26) 소득세법 제10(23D)조

11) 벤처캐피털 기업 및 벤처캐피털 펀드에서 나오는 소득²⁷⁾

벤처캐피털 사업(VCU: Venture Capital Undertaking)에 따른 투자에서 벤처캐피털 기업(VCC: Venture Capital Company) 또는 벤처캐피털 펀드(VCF: Venture Capital Fund)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조세 면제의 목적은 VCC 또는 VCF의 투자로 개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해당 개인이 직접 VCU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과 동일하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²⁸⁾.

12) 미성년자의 소득²⁹⁾

미성년자의 소득은 부모 중 소득이 더 높은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각 미성년 자녀에 대해 1,500루피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13) 배당금³⁰⁾

모든 국내 기업은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4) 뮤추얼펀드 가입자에 관한 소득³¹⁾

10)의 뮤추얼펀드 가입자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7) 소득세법 제10(23FD)조

28) 소득VCC, VCF와 VCU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VCC: SEBI로부터 등록증을 받고 SEBI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VCF: 신탁증서(trust deed)에 따라 운용되고 SEBI의 등록증을 받았으며, SEBI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 ③ VCU: SEBI(VCF) 규정(1996)에 따른 VCU

29) 소득세법 제10(32)조

30) 소득세법 제10(34)조

31) 소득세법 제10(35)조

15) 특정 장기 자본이득에서 발생하는 소득³²⁾

기업의 주식이든 주식형 펀드의 계좌(unit)이든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세(STT)가 부과되는 장기 고정자산(capital asset)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고정자산으로 간주한다.

16) 역모기지 거래에 따른 소득³³⁾

특정 역모기지 거래에서 일시불 또는 할부로 된 대출로 개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17) NPS(New Pension System) 신탁에 따른 소득³⁴⁾

1882년 인도 신탁법에 따라 2008년 2월 27일에 설립된 NPS 신탁에서 개인이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배당분배세는 NPS 신탁에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NPS 신탁은 해당 신탁에 의한 주식 및 파생상품의 매입 및 매각 시 증권거래세를 모두 면제한다. NPS 신탁은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수령한다.

18) 원유를 판매하는 외국기업의 소득³⁵⁾

2012년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모든 인도의 납세대상자(person)에게 원유를 판매하고 인도 통화로 인도에서 수령하는 소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

32) 소득세법 제10(38)조

33) 소득세법 제10(43)조

34) 소득세법 제10(44)조

35) 소득세법 제10(48)조

- 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중앙정부에 의해 협의된 소득
 - ② 국가의 이익이 있다고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거래일 것
 - ③ 인도 내에서 동 소득 외에는 다른 활동이 없을 것
- 이 면제조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나. 비영리기구와 관련된 면제

자선단체 및 공공 종교기관에 허용되는 면제 관련 조항은 소득세법의 제11, 12, 12A, 12AA 및 13조³⁶⁾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자선 또는 공공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허용되는 소득 및 면제 계산 방식을 설명한다. 1956년 회사법(Companies Act)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자선 신탁, 단체 또는 기업들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정한 소득의 조세가 면제되는 특정 기관들이 있다. 법 제11~13조에 따른 소득 면제 관련 조항 및 특정 카테고리 규정하는 각 조항들은 서로 다른 조항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관의 소득은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조항(하나 또는 두 개 조항 모두)에 의거하여 면제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자선기관은 부가급여세(FBT: Fringe benefit tax)³⁷⁾ 또한 면제된다. 2009/10회계연도부터

36) 제11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선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탁된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제12조는 자선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이나 기관이 받은 자선 기금 및 제11조의 목적으로 신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제12A조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적용하기 위해 기관 등록을 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제12AA조는 신탁 또는 기관의 등록 절차를 명시한다. 제13조는 제11 및 제12조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부인될 수 있는 제한 요건을 다룬다.

37) 부가급여세(FBT)는 2005/06회계연도에 도입된 세금으로 회계 기간에 고용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의 가치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외국회사의 주재원이 인도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숙소, 차량 등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하여 33.99%의 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거주용 시설, 설비, 서비스 또는 특전
-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의 사적인 여행에 대해 지출한 비용
- 각 고용인에 대해서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기업부담금

위에 사항에 더하여, 사업 추진 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월 1%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FBT는 납세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 자선 목적

법 제2(15)조는 자선 목적에 빈민 구제, 교육, 의료 구제, 환경, 기념물 또는 예술이나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나 대상의 보전(2009/10과세연도부터 유효함) 및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시설의 증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관이나 신탁은 법 제11~13조 조항에 따른 면제 자격이 되려면 이 정의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09회계연도부터 한 단서가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시설의 증가는 무역, 상업 또는 사업의 속성을 가진 활동 또는 무역,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선 목적이 더 이상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재정법(Finance Act)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시설의 증가가 무역, 상업 또는 사업의 속성을 가진 활동 또는 무역,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활동에서 나오는 총소득이 직전 연도에 250만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선 목적인 것으로 규정되도록 제2(15)조를 개정했다.

2) 자선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 적용되는 면제 사항

법 제11조 및 12조 조항 이외에, 특정 조항들에서 아래와 같은 기관들에 대해서 기타 면제조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 ① 정부 지원 대학, 병원 및 기타 교육·의료 기관³⁸⁾
- ② 교육 또는 특정 질병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연간 소득이 1천만루피를 넘지 않는 기관³⁹⁾
- ③ 자선 또는 공공 종교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소득세 주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38) 소득세법 제10(23C)조의 (iiiab)와 (iiiac)

39) 소득세법 제10(23C)조의 (iiiad)와 (iiiae)

펀드/기관/신탁의 소득⁴⁰⁾

- ④ 소득세 관련 주무당국이 승인하고 교육 및 자선의 목적(의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⁴¹⁾

3) 자선 목적의 기부자에 부여하는 세금 혜택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자는 해당 자선기관이 법 제80G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면 과세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승인을 위해 충족해야 할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주체의 소득 및 자산이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주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그 혜택이 특정 종교단체나 계급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계좌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③ 공공 신탁,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기업이어야 한다.
- ④ 소득세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무역자유지역에 신설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특례

1) 적용 대상

수출지역(Export-oriented Unit: EOU), 무역자유지대(set-up in free trade zones: FTZs), 전자제품기술지역(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소프트웨어기술지역(software technology parks: STP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에서 얻은 이득에 대한 공제를 제10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화(article)나 물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 이 공제가 적용된다.

40) 소득세법 제10(23C)조의 (iv)와 (v)

41) 소득세법 제10(23C)조의 (vi) 및 (via)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 함은 디스크나 테이프, 천공매체(perforated media) 또는 다른 저장장치 등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CBDT에 IT 관련 서비스가 제시되어 있다. 동 특례는 2012년 4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신설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기간

이 공제는 재화(article)나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제조·생산된 날부터 연속 10년 동안 가능하다. 회사가 이 기간 만료 전에 합병 분할을 하게 되면, 이 공제는 존속회사(amalgamated or resulting company)가 적용받을 수 있다.

3) 공제 범위(Quantum of Deduction)

수출에 따른 이익이나 이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A(B/C)$$

- * P=재화(article) 또는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수출로 인한 이익
- * A=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
- * B=수출 매출액(export turnover)
- * C=그 사업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수출매출액(export turnover)이라 함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더한 기간 내)에 받은 수출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것을 말한다. 이때 매출액에 화물료(freight), 통신요금 또는 운송을 위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의 예금이자는 직접적으로 이자와 착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연관이 있어야 하고 예금이 단지 신용장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계없는 손실은 상계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과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액

(unabsorbed depreciation)이 사업(undertaking) 이익과 상계가 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표 2-1-4> 특별경제구역(SEZ)에서의 사업(Undertaking)에 대한 공제율

기간	공제율
첫 5년	100%
다음 2년	50%
다음 3년	수익의 50%까지 특별적립금을 적립함

특별적립금이라 함은 3년 이내에 사업목적상 새로운 기계나 설비를 인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과세가 된다.

4) 적용 조건

- ① 재화(article)나 물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생산할 것
- ② 이 기업이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의 분할(splitting up)이나 복원에 의한 기업이 아닐 것
- ③ 이 기업이 전에 다른 목적으로 쓰던 기계나 시설을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하여 만들어진 기업이 아닐 것
- ④ 재화(article)나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받는 돈을 외화로 회계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을 것

5) 절차 준수

신청한 공제 내역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공제를 신청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라. 신규 100% 수출지향형 사업(Export Oriented Undertakings: EOU)에 대한 특별 규정⁴²⁾

1) 적용 대상

100% EOU가 재화(article)나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출함에 따른 이익이나 이득이 대상이 된다.

2) 적용기간

이 공제는 재화(article)나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제조·생산된 날부터 연속 10년 동안 가능하다. CBDT는 국내과세지역(DTA)에서의 설치와 재화(article) 등의 수출로 인한 이익을 나중에 EOU로 전환을 한다면 법 제10B조의 규정에 따라 100% EOU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규정은 앞의 일반 공제 규정과 같다. 회사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동 특례는 2012년 4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신설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준용 규정

공제 범위(Quantum of Deduction), 적용조건, 절차준수, 사전동의나 기피조항 등의 규정은 앞의 라.의 내용과 같다.

42) 소득세법 제10B조

마. 특별경제구역(SEZ)에 신설된 기업(Unit)에 대한 특례⁴³⁾

1) 적용 대상

SEZ에서 재화(article)나 물건을 제조·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2) 적용기간

재화(article)나 물건을 제조·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15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무역자유지역(FTZ) 또는 수출보세구역(EPZ)에 위치하던 것이 SEZ로 이동하였을 경우 FTZ 또는 EPZ에 적용되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이나 분할에 관한 사항은 앞의 제(10A)조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나 이 역시 2012년 4월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3) 공제 범위(Quantum of Deduction)

이 규정은 재화나 물건, 서비스의 수출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이득에 대해서 적용된다. 공제가 가능한 총기간은 15년이다.

<표 2-1-5> 특례 공제의 적용

기간	공제율
첫 5년	100%
다음 5년	50%
다음 5년	수익의 50%까지 특별적립금을 적립함

43) 소득세법 제10AA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재화(article) 또는 물건 서비스의 수출(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로 인한 이익} \\ & = \text{그 일로 인한 사업의 이익} \times \frac{\text{재화 물건 서비스의 수출액}}{\text{그 일로 인한 사업의 매출액}} \end{aligned}$$

SEZ에서의 수출이란 SEZ에서 육지, 바다, 비행기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SEZ에서 인도 밖으로 물건 또는 서비스가 나가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란 인도 밖 현지에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출액에 freight(화물), telecommunications charges(통신요금) 또는 운송을 위한 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착수 사업(undertaking)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월이 허용된다. 회사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4) 적용 요건

- ① FY 2005/06의 기간 또는 그 이후에 재화(article) 물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생산
- ② 이 기업이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의 분할(splitting up)이나 복원에 의한 기업이 아닐 것
- ③ 이 기업이 전에 다른 목적으로 쓰던 기계나 시설을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하여 만들어진 기업이 아닐 것

5) 절차 준수

신청한 공제 내역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급여(Salaries)

법 제15, 16, 17조는 급여명목하의 소득 계산을 다루고 있다. 급여란 개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이전 고용주를 포함)로부터 받는 보상을 말한다. 소득을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이를 살펴본다.

가. 급여의 개념

1) 고용관계

급여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개인, 법인, 정부 등이다. 고용시간이 풀타임인가 파트타임인가 하는 것은 급여로 보는 것과 무관하다. 고용주가 아닌 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급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고용 법인의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본다.

고용의 계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가 제작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급여가 아니다. 그러나 독립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집사(retainer)로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급여로 본다.

2) 급여의 포기

일단 급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포기하더라도 과세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상여가 지급되도록 되었는데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차기에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는 발생연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생 이전에 급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3) 세후 급여(tax-free salaries)

고용주가 세금을 부담한 후에 세후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고용주가 부담한 세금은 급여로 과세한다.

4) 이전, 현재, 미래 고용주로부터의 급여

이전 연도에 발생한 급여 혹은 당기에 지급받은 급여는 이전, 현재, 미래 고용주인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나. 과세의 기초(Basis of Charge)⁴⁴⁾

1) 받았거나 받을 금액기준 과세

급여는 수입 혹은 발생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과거에 과세되지 않았던 급여는 급여를 받게 된 연도 혹은 받게 될 연도에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일에 2010년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급여는 2010년 4월 1일 이전에는 과세될 수 없고 2010년 4월 1일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 선급 급여

미래 기간과 관련된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과세한다.

44) 소득세법 제15조

3) 회계처리와 무관련성

급여 귀속기간은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급여의 귀속 장소

급여는 근로가 제공된 장소에 따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근로가 제공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나 휴가급여라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제공된 근로에 의한 것이라면 인도에서 과세한다.

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1) 급여의 정의

급여는 임금(wages), 정기금 혹은 연금(any annuity or pension), 보상금(any gratuity), 수수료, 현물보상, 급여 대신 지급하는 이익, 선급급여, 휴가기간 중 지급액, 퇴직기금 기여금 중 과세되는 금액, 퇴직기금으로 이전된 금액 중 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① 임금(Wages)

임금과 급여는 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통상 임금은 육체노동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② 정기금(Annuity)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지만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기금은 기타소득이다.

③ 연금(Pensions)⁴⁵⁾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퇴직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급여로 과세한다. 다만 상속인들이 받는 연금은 기타소득이다. 연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부 혹은 일부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a) 정기연금: 종업원에게 과세한다.
- (b) 일시 지급 연금(commuted pension): 정부로부터 받은 연금에 대한 일시수령은 완전 면세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연금의 대체가치⁴⁶⁾를 구해서 연금 외에 퇴직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대체가치 중 3분의 1을 면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연금 외에 퇴직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의 대체가치 중 절반을 면세한다. 대체가치는 수령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 정해진다. UN으로부터 받는 연금은 면세이다.

④ 공로퇴직금(Gratuity)⁴⁷⁾

공로퇴직금이란 과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 시에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공로퇴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퇴직금의 면세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공로퇴직금은 면세이다.
- (b) PGA(Payment of Gratuity Act, 1972)에 따른 공로퇴직금은 실제 수령하는 공로퇴직금, 6개월 이상 근무한 연도의 15일 간의 급여, 10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매년 7일간의 평균급여와 10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 (c) 기타의 공로퇴직금은 실제 수령하는 공로퇴직금, 매년 반달간의 급여, 정부가 규정하는 금액(현재는 100만루피)의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만일 이전 기간에 공로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시 면제금액은 위 한도에서 공

45) 소득세법 제10(10A), 10(10A) (i), 10(10A) (ii), 10(10A) (iii) 및 10(23AAB)조

46)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가치

47) 소득세법 제10(10)조, 연금법(PGA) 4(2), 4(3)조

제한다. 그리고 실질임금감소보상금(dearness allowance)은 급여에 포함되지만 다른 보전금은 제외한다. 그리고 평균급여는 고용이 종료되기 전 10개월간의 평균이다.

⑤ 수수료와 상여(Fee, Commission and Bonuses)

종업원이 받는 수수료, 상여 등은 완전 과세이며 매출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는 각종 계산에서 급여에 포함된다.

⑥ 연월차수당(Leave Salaries)⁴⁸⁾

종업원들은 고용기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휴가를 보낸다. 만일 사용되지 않는 휴가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금전으로 보상받는다. 이때 금전보상 휴가는 과세한다. 다만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금전보상 휴가는 면세이다.

(a) 공무원이 받는 연월차수당은 면세이다.

(b) 다른 종업원들의 경우는 퇴직 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으로서 실제 지급액, 10개월간의 평균급여, 근속연수 동안 최대 연 30일간 유급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네 가지 중 정부가 규정한 금액(현재 10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

이전에 수령한 연월차수당 중 면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위 한도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연월차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고용주를 합쳐서 계산한다.

라. 보상급여(Allowances)

1) 보상급여의 의미⁴⁹⁾

보상급여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되거나 혹은 개인적인 특정 비용을 지

48) 소득세법 제10(10AA)조

49) 소득세법 제10(13A), 10(14)조

불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총급여에 포함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세되기도 한다.

2) 보상급여의 종류

① 주택보상급여⁵⁰⁾

실제 지급받은 주택 보상급여, 보상급여 중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급여의 40%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면세한다. 단, 자기주택을 소유하거나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급여는 전액 과세한다.

② 휴가여행 보상급여⁵¹⁾

인도 내에서의 가족과 함께 하는 휴가여행에 대한 보상급여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가족이란 배우자, 2명 이내 자녀, 부양하는 부모, 형제와 자매이다. 면세되는 범위는 일반석 항공운임, 기차의 경우에는 일등석 운임, 기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대중교통 일등석 운임을 한도로 한다.⁵²⁾

③ 특별 보상급여⁵³⁾

특정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 혹은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에 대한 보상급여를 면세한다.

(a) 실비보상급여(Non perquisite allowances)

종업원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근무 목적상 부담한 비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나 아니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면세한다.

- 출장비, 출장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정상적인 위치에 없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운송비용, 도우미(helper) 비용, 교육이나 연구기관에

50) 소득세법 제10(13A)

51)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Income tax rules, 1962) 제2B조

52) 4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었을 때 2회를 허용한다.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한 단위이다. 만일 4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단위의 첫째 연도에 한 하여 한번을 허용한다.

53) 소득세법 제10(14), 17(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BB조

서의 훈련비용, 작업복

(b) 복리후생 급여(Perquisites)

근무지에서의 사적 비용 혹은 주거비용 혹은 주거비 상승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이는 특정 목적의 지출에 한정되고 금액도 사전에 정해진다.

<표 2-1-6> 비과세되는 복리후생급여

자녀교육비	최대 2명의 자녀까지 자녀당 매월 100루피 한도
자녀숙박비	최대 2명의 자녀까지 자녀당 매월 300루피 한도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로서 매월 800루피 한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1,600루피 한도
운행경비	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운행경비로서 지급액의 70% 혹은 매달 6,000루피 중 적은 금액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2BB조의 항목들

④ 완전과세되는 보상급여

실질임금감소보상수당, 도시보상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의료수당, 하인(servant)수당, 전화수당, 가족수당, 중식대, 과제(project) 수당, 교육수당, 휴가수당의 항목들은 전액 과세한다.

마. 복리후생급여(Perquisites)⁵⁴⁾

1) 복리후생급여의 의미

복리후생급여란 통상적인 급여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보상이나 혜택을 말한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도 아니다. 복리후생이란 금전 혹은 무상이나 할인된 요율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복리후생급여로 제

54) 소득세법 제17(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공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과세된다.

2) 복리후생급여의 종류

①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혹은 낮은 요율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급여로 본다.

(a) 가구 없는 주택

공무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주택제공은 정부가 정한 공식 임대료에서 자기가 부담한 실제 임대료와 차이를 복리후생급여로 본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일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종업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민간부문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지불한 임대료 혹은 급여 15% 중 적은 금액을 복리후생급여로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 250만명을 초과하는 도시에 주택이 소재한 경우에는 급여의 15%, 인구 100만명에서 250만명까지 도시의 경우에는 급여의 10%, 기타 지역에서는 급여의 7.5%를 복리후생급여로 본다. 만일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위 금액에서 공제한다.

(b) 가구가 있는 주택

만일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a)의 금액에서 10%를 가산하거나 아니면 실제 부담한 가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c) 호텔

만일 주거서비스를 호텔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급여의 24% 중 적은 금액을 복리후생급여로 한다. 다만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이동 중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면세한다. 호텔이란 모텔,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이동주택, 주거용 선박 등을 포함한다.

광산 등 벽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는 과세하지 않는다.

만일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이전 주택에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는 최초 가치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과세한다.

법 제17(2)조에서는 주택 임차료 할인금액은 주택을 고용주가 소유하는 경우 종업원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임대료(앞에서 언급한 도시 인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주가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임차료가 고용주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급여의 15%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급여로 본다. 일단 한번 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복리후생급여로 보게 되면 이후 계속해서 복리후생급여가 된다.

② 특정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급여

회사에 중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임원이거나 비금전적 혜택을 제외한 급여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복리후생급여로 본다.

③ 스톡옵션

2007년 3월 31일까지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지만 2007년 4월 1일부터는 회사에는 과세하며 종업원에게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부터는 행사 시점의 주식의 공정가치를 급여로 보아서 종업원에게도 과세하는데 이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공정가치는 주식이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경우에는 옵션 행사일의 개장가격과 마감가격의 평균으로 하며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거래량이 큰 거래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행사일에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날 중 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제1종 상업은행(Category I merchant banker)이 결정한다.

④ 의료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위하여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종업원이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사용자가 보상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운용하거나 정부가 승인한 병원에서의 치료,

국세청장이 지침에 따라 승인한 치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회사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15,000루피 범위 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의료비란 진료비나 약품 등을 포함하지만 헬스나 요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의료행위가 인도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의료비, 치료에 필요한 숙박비와 여행 경비도 인도국립은행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는 종업원의 총소득이 20만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등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⑤ 청소원, 정원사, 경비원

청소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한 경비에서 종업원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한다.

⑥ 가스, 전기, 수도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가스, 전기, 수도는 과세한다. 만일 외부에서 구입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제조원가를 급여로 보는데 종업원 부담분은 제외한다.

⑦ 무상교육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종업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의 원가는 지리적으로 유사한 교육기관과 비교한 합리적인 원가로 하며 종업원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 1명당 매달 1천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이다. 종업원 부담분은 지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무상 대여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과세하는데 인도국립은행에서 부과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큼 과세하며 월별 최대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종업원 부담분은 제외한다. 그러나 2만루피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출을 위한 대여금 이자는 비과세이다.

⑨ 동산(moveable)의 이용

사용자가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동산들의 경우에는 사용자 소유 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10% 혹은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과세하는데 종업원 부담분은 제외한다.

⑩ 동산의 이전

사용자가 소유한 동산을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을 차감한 후 금액을 과세한다.

⑪ 자동차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각 상황에 따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업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되는 경우에는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급여로 보아서 과세하며 업무용과 개인용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과세되는 금액으로 본다.

만일 종업원이나 사용자가 업무에 사용했음이 분명하다면 그 금액은 위에서 정한 금액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지, 주행거리, 일자와 같이 세부 기록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이 지출을 공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승인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⑫ 열차

종업원이나 그 가족의 개인 여행에 무상 혹은 낮은 요율로 제공되는 열차서비스는 일반인에게 제공될 때의 금액으로 과세하는데, 단 항공사나 철도회사 종업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⑬ 여행과 숙박

종업원에게 보상해주는 여행 및 숙박비는 그 금액으로 과세하며 만일 사용자가 소유한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설이 일반대중에게 제공될 때의 가격으로 과세하고 종업원이 출장중에 가족을 동행한 경우에 동행에 소요된 경비는 과세한다. 그리고 출장일정을 넘겨서 휴가를 보낸 경우에는 공식 출장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⑭ 무상급식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비주류 음료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이 급여가 되는데 종업원 부담분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내 식사비용으로 식사당 50루피 범위 내에서 양도불가능한 식권으로 제공되는 경우, 근무시간에 제공되는 다과 및 벽지 등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비주류 음료는 비과세한다.

⑮ 선물

사용자가 종업원이나 가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직전연도 총 5천루피 이하의 선물과 상품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⑯ 회원권 및 신용카드연회비

종업원이나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회원권이나 신용카드 연회비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업무용인 경우에는 제외하는데 그 경우 상세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그 지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⑰ 퇴직기금에 대한 기여금

사용인 종업원을 위한 퇴직기금으로 연 10만루피 이상을 기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이는 종업원에게 과세한다.

⑱ 클럽활동비용(회원권)에 대한 보상

클럽 이용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 클럽 이용비용 혹은 보상금액으로 하며 종업원 부담분은 제외한다. 만일 사용자가 회사전용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이용비용에는 회원권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이 업무용이라면 과세하지 않는데 상세한 기록 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인의 승인, 모든 사용인에게 차별없이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⑲ 기타 과세되는 복리후생급여

기타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권리 등은 제3자와의 공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전화요금은 복리후생급여로 보지 않는다.

바. 퇴직급여(Retirement Benefits)

1) 퇴직적립금(provident fund)

퇴직적립금은 종업원부담금, 사용자 기여금, 이자수익, 환급금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에 대한 과세체계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퇴직적립금 유형별 과세방법

	Statutory pf	Recognised pf	Unrecognised pf	Public pf
종업원부담금	공제	공제	불공제	공제
사용자기여금	비과세	총급여 12% 비과세	비과세	해당없음
매년 이자	비과세	일정률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환급금	비과세	비과세	종업원 부담금 부분은 기타소득과세. 사용자 부담분은 급여	비과세

2) 퇴직 연금 및 일시금(Superannuation fund)⁵⁵⁾

종업원 부담금은 10만루피까지 공제한다. 사용자 기여금은 10만루피까지 종업원에게 비과세한다. 이자는 비과세한다. 환급금은 연금선택 시나 중도해약을 제외하고는 비과세한다.

3) 해외 사회보장에 대한 기여금(Contribution to overseas social security)

인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부담금은 소득을 전환시킨 것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한다.

사. 급여 대체 수익(Profits in Lieu of Salaries)

1) 급여 대체 수익의 의미⁵⁶⁾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2) 급여 대체 수익의 종류

퇴직수당(terminal compensation)은 고용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으로 과세한다. 해고수당(retrenchment compensation)⁵⁷⁾ 중 실제 지급액, 6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연도마다 15일간 평균임금, 중앙정부가 규정한 금액(현재는 5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은 면세한다. 명예퇴직수당⁵⁸⁾은 정부지침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55) 소득세법 제80C조

56) 소득세법 제17(3)조

57) 소득세법 제10(10B)조

58) 소득세법 제10(10C)조

지급한 금액은 50만루피를 한도로 면세한다. 사용자가 가입한 종업원수익자보험금(Keyman insurance policy)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한다. 고용 전 혹은 후에 지급⁵⁹⁾받는 금액은 급여는 과세한다.

아. 공제와 면세⁶⁰⁾

1) 접대비 보상에 대한 공제(deduction on account of entertainment allowance)

공무원에 한하여 실제 지출한 접대비, 급여 20%, 5천루피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데 만일 다른 종업원이 접대비를 보상받았다면 이는 과세한다.⁶¹⁾

2) 고용에 대한 직업세(profession tax on employment)

종업원이 부담한 직업세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한 고용세는 일단 급여로 보고 다시 급여에서 공제한다.⁶²⁾

3) 기타 면세

해외공관이나 주재원 등 외국 공무원 급여는 면세한다. 단, 외국주재 인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⁶³⁾ 외국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이 받는 급여 중 외국기업이 인도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인도 내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보상이 외국기업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한다. 외국선박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로서 인도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59) 소득세법 제17(3)(iii)조

60) 소득세법 제17(3)(iii)조

61) 소득세법 제16(ii)조

62) 소득세법 제16(iii)조

63) 소득세법 제10(6)조

경우, 외국정부 공무원으로서 교육 등의 이유로 인도에 체류하는 경우 면세한다.

비급전 급여에 대한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면제한다.⁶⁴⁾ 생명보험금은 면세한다.

자. 감면규정

1) 선급 혹은 이연지급된 급여에 대한 감면⁶⁵⁾

선급 혹은 이연지급으로 12개월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 이중과세 감면⁶⁶⁾

① 조세협약체결국가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 거주자의 급여는 인도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건은 인도 내에서 한 과세기간당 총 183일 이내 거주, 인도 거주자로부터 받은 보상이 아니어야 하고, 인도 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보상이 아니어야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도에서 과세할 것이며 납세자는 자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인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② 조세협약미체결 국가

인도 거주자는 인도와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중과세된 소득이 과세기간 동안 인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소득이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64) 소득세법 제10(10CC)조

65) 소득세법 제89(1)조

66) 소득세법 제90, 91조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인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인도 세율과 해당 국가 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받는다.

〈사례 2-1-1〉 급여소득의 계산

종업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다.

〈기본급 400만루피, 특별 보상금 100만루피, 상여 60만루피, 접대비 보상금 60만루피, 퇴직적립금에 대한 사용자 기여금 56만루피〉

위 항목 외에도 회사는 종업원에게 몸바이에서 가구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월임차료는 10만루피이고 가구비용은 연 5만루피이다. 그리고 자동차와 기사를 제공하고 요리사도 제공하고 있는데 요리사에게는 월 5천루피가 지급된다. 종업원은 월 2천루피의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급여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위: 루피)

기본급	4,000,000	
특별 보상금	1,000,000	
상여	600,000	
접대비 보상금	600,000	
퇴직적립금 회사 기여금	80,000	$560,000 - 4,000,000 * 12\%$
주택 제공	980,000	주 ¹⁾
요리사 급여	60,000	$50,000 * 12$
의료비 보상	9,000	$2,000 * 12 - 15,000$
자동차 보상	39,600	$(2,400 + 900) * 12$
	7,368,600	

주: 1) 기준급여 $4,000,000 + 1,000,000 + 600,000 + 600,000 = 6,200,000$
 $MIN(\text{기준급여} * 15\%, \text{실제 지출액}) = MIN(930,000, 100,000 * 12) = 930,000$
 주택 $930,000 + \text{가구 } 50,000 = 980,000$

4.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가. 거주용 부동산(House Property) 소득의 개념⁶⁷⁾

사업 목적이 아닌 거주용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의 연간가치는 거주용 부동산 소득의 항목으로 과세된다.

나. 소득의 계산

부동산의 연간가치를 계산한 후 법에 규정된 공제를 차감한다.

1) 연간가치의 계산⁶⁸⁾

연간가치는 매년 기대되는 가치를 합하여 합리적인 임대료를 계산한다. 만약 실제로 받은 금액이 예상 임대료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한다. 또한 1년 내내 임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이 합리적인 임대료보다는 적을 것이므로 이때에도 사실상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1년간의 가치로 본다. 인지세와 등록세는 연간가치를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부담금(society charges)은 공제된다. 기업의 부동산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 수송, 유지, 수리 등을 위해 들어간 비용(법적 규정을 준수한 경우)은 공제가 허용된다.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를 위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자가 고용사업 인적용역을 이유로 그들의 소유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므로 자신의 거주용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연간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67) 소득세법 제22조

68) 소득세법 제23조

2) 공제 가능 비용⁶⁹⁾

다음 비용은 거주용 부동산 소득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다.

- ① 지방정부에 납부한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
- ② 시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 후의 연간가치의 30%
- ③ 자산의 매입, 건설, 수리, 개선, 재건축을 위해 지불한 사실상의 이자비용

다만 이자비용은 1999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15만루피(자산의 수리, 개선, 재건축을 위한 이자비용의 한도는 3만루피) 공제 한도가 있다.

공제의 한도는 당해연도 이자비용과 건설하기 전의 기간의 이자비용 분할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외국으로 지급되는 이자비용도 법에 규정된 원천과세에 관한 것을 준수하였다면 공제 가능하다.⁷⁰⁾ 미지급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례 2-1 -2〉 거주용 부동산 소득의 계산

Ram씨가 인도에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009/10년 동안 매달 5만루피의 렌트를 수령하였다. 연간 합리적인 기대가치는 30만루피이다. 람씨는 5천루피의 시세를 납부하였고 21만루피의 이자를 부동산 구입을 위해 지출하였다. 위 상황에서 람씨의 거주용 부동산 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69) 소득세법 제24조

70) 그 외의 인도 외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5조).

(단위: 루피)

합리적인 거주 부동산의 연간가치		300,000
실제 수령한 임대료		600,000
총연간가치(300,000 vs 600,000)	600,000	
(-) 시에 납부한 세금	(5,000)	
순연간가치		595,000
(-) 공제 가능한 비용((a) + (b))		
(a) 순연간가치의 30%	178,500	
(b) 발생이자 ¹⁾	210,000	
		(388,500)
거주 부동산 소득		206,500

주: 1)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 이자는 모두 공제 가능하다.

다. 수익의 인식 시기⁷¹⁾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은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수령하는 시기에 소득으로 본다.

라. 부동산의 공동소유⁷²⁾

공동소유일 경우 자산의 구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된다면 소유자 각각이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면 인적 조합(association of person)으로 간주한다. 일단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자산의 소득에 대해 계산을 하고 공동소유자가 각각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이득만큼 세금을 납부한다.

71) 소득세법 제25AA, B조

72) 소득세법 제26조

마. 소유자와 연간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⁷³⁾

부동산(house property)의 소유자는 세금을 낸다. 배우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가격을 받고 별거가 아닌 사유로 부동산을 이전한 개인과 미성년 자녀(또는 결혼한 딸)에게 적당하지 않은 가격을 받고 자산을 이전한 개인의 경우에도 소유자로 본다.

5.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가. 과세대상(Chargeability)

다음의 항목들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① 1년간 납세자가 영위한 사업이나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과 차익 과세되는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상거래, 직업이나 특정한 서비스로부터 생긴 이익
 - 사업이나 직업수행 과정에서 생긴 효익이나 복리후생(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
 - 특정 행위, 노하우, 특허, 저작권, 상표권, 정보나 기술 등에 대한 독점 계약에서 생긴 현금 혹은 대가의 합
 - 경영자보험 수령액
 - 자산의 처분에 대한 대가. 자산의 원가는 비용으로 공제

1) 사업과 직업의 정의⁷⁴⁾

사업과 직업은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과세상 이 둘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사업은 과세연도에 수행되어야 하지만 과세연도 동안 계속 수행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에

73) 소득세법 제27

74) 소득세법 제2(13)조, 소득세법 제2(36)조

공제받은 대손금의 회수, 감가성 자산이나 연구용 자산의 처분, 사업중단으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이 없어도 과세된다.

사업은 납세자가 수행해야 하는데 사업은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자나 대리인을 고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을 여러 장소에서 영위한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인도 거주자가 소유한 해외지점은 인도 사업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해당 국가와 조세협약에 따라서 합산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사업별로 이익을 각각 계산하지만 과세는 모든 이익을 합산하며 한 사업의 이익이 다른 사업의 손실과 상계될 수 있다.

만일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활동의 축소 내지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불법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 이익과 차익의 정의⁷⁵⁾

소득에는 이익과 차익을 포함한다. 과세는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익과 차익에 대한 것이다. 이때 이익은 납세자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실제 이익으로 예상이익이나 명목이익이 아니다. 이익은 현금이나 다른 대가로 실현된다. 자본수익은 이익 및 차익으로 보지 않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의 목적이 납세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는 수익계정이며 새로운 사업단위를 만들거나 기존 단위를 확장하는 목적이라면 자본계정이다. 이연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은 실제 존재할 때 과세된다. 그리고 수수료는 실제 수입시기가 아닌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과세된다. 사업 및 직업 수행과정에서 대가로 받은 효익이나 복리후생은 금전으로 전환 가능하든 아니든 이익 및 차익으로 본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사업 및 직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75) 소득세법 제2(24)조

3) 수익의 인식⁷⁶⁾

사업 개시일 이전의 수입은 사업수익이 아니다. 개업은 사업 개시와는 다르며 개업에 따른 비용은 공제된다. 자산 처분익은 양도소득으로서 이익 및 차익이 아니다. 감가상각 자산 처분 시에는 처분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 중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 및 차익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이다. 2010/11과세연도부터 토지, 영업권과 금융상품을 제외한 자산 처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원가는 비용으로 공제한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것이며 납세자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익 및 차익은 관련성이 없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은 거래수익이다.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손실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수익이다.

4) 다양한 사업에서의 수익

중앙직접세위원회의 의견서(CBDT Circulars)에는 다양한 경우의 사업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있다.

- ① Chit Fund를 조직하고 받는 수수료는 이익 및 차익이다.
- ② 임대보증금이 아닌 거래보증금은 수익이다.
- ③ 특정 서비스로부터 생기는 상거래 및 직업 협회 소득에 대하여는 협회나 단체의 지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상호보험회사나 협동조합의 경우이고 두 번째 예외는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나 단체의 경우인데 이들이 구성원들에게 가입비 혹은 정기적인 통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구성원에게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 ④ 수출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현금보상이나 면세 등의 면허를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 ⑤ 유사파트너십(Firm)으로부터의 보상과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 급여, 상여, 수수료

76) 소득세법 제28조

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파트너가 받는 것은 과세한다. 그러나 파트너가 수령하는 본인 지분비율의 회사의 이익은 면세이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나 다른 보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한다. 만일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여 주주의 소득도 조정된다.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나 보상은 현금지급이나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한다.

- ⑥ 비경쟁수수료와 독점권 성격으로 받은 금액 중 독점적 계약을 맺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 ⑦ 종업원수익자보험(keyman insurance)이란 사용자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인데 수익자가 사용자라면 보험금은 사용자의 사업소득이고 수익자가 종업원이면 급여 또는 기타소득이다.
- ⑧ 투자거래(speculative business)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한 투자사업의 손실은 다른 투자사업의 이익에 한하여 통산한다. 보유주식을 단기매매주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투자주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단일한 원칙은 없다.

나. 사업소득의 계산⁷⁷⁾

법 제2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다양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제29조에서는, 제28조에 규정된 소득은 제30조부터 제43D조까지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30조부터 43D까지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따른 다양한 공제항목들을 규정한다. 제30조에서 제36조에서는 공제 가능한 비용들을 열거하고 있어 중복적일 수도 있다. 이익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적절한 개념인데 실제 이익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상업적 거래나 회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인도 법원에서는 법률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른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 횡령으로 인한 손실은 법률에 특별한 언급이 없

77) 소득세법 제28, 29, 43조

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기본원칙

이익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이나 손실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진다. 그러나 일단 납세자가 해명한 후에 그에 대한 반론은 과세당국 책임이다. 비용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과세당국(Assessing officer)은 납세자의 주장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공제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먼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감면이나 공제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손실과 사업상 비용은 다른 개념이다. 불법 사업의 손실도 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손실만 공제할 수 있으며 예상손실은 공제할 수 없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평가는 예외이다.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대한 가치감소는 공제되지 않는데 광산의 경우에 채굴량 감소에 따른 공제는 없다. 다만 공장, 건물 등은 별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2) 공제항목

① 건물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세금, 보험료⁷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자산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와 이 재산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개업 이전 사용한 자산에 대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개업비로 자본화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소유주에게 임차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적정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지 못한다. 납세자가 임차인 혹은 다른 지위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의 보험료는 공제된다.

78) 소득세법 제30조

② 기계, 공장, 가구에 대한 보험료 공제⁷⁹⁾

사업용 기계, 공장, 가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된다.

③ 건물, 기계, 공장 등에 대한 수선비⁸⁰⁾

- 건물: 임차인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비 중 자기 부담액이 공제된다. (소유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기 수선비(current repair))
- 기계 및 공장: 당기 수선비를 공제한다. 당기 수선비란 과거나 누적된 수선비가 아닌 당기에 사업적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수선비를 말한다. 수선비는 능률 유지 혹은 원상 회복의 목적을 가진 지출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동일한 기능을 갖는 자산 혹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대체(replacement)와는 다르다. 또한 새로운 자산이나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체(renewal)와도 다른 개념이다. 때로는 수선을 위해서 대체나 개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선비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수선비에는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는 것이며 기존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목적을 갖는 수선비와 다르다.

다. 감가상각비⁸¹⁾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 상각대상자산

건물, 차량운반구, 실험설비(plant), 기계, 비품 등 유형자산과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이 상각대상자산이다.

79) 소득세법 제31조

80) 소득세법 제31조

81) 소득세법 제32조

2) 감가상각 조건

1)의 자산이 사업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⁸²⁾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⁸³⁾

3) 감가상각비의 계산

법 제32조에 따르면 발전설비(generation or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의 경우는 취득원가에 대한 특정 비율을, 다른 자산군(block of asset)의 경우에는 상각 후 잔액(written down value)의 일정비율 만큼 감가상각한다.

〈사례 2-1-3〉 감가상각비의 계산

납세자는 2008년 4월 1일 M1, M2자산을 각각 25백만루피와 75백만루피에 구입하였으며 두 자산은 모두 공장설비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률은 15%를 적용하며 2009년 M3자산을 3백만루피에 구입하였고 2010년 3월에 M2자산을 8백만루피에 처분하였다.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82) 사용의 의미는 적극적인 사용을 의미하며 단순히 유지 보관만으로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결정이다. 연중 계속 사용은 아니며 일회 사용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분한다. 기계설비의 시험가동도 사용이다. 기중 취득하여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인정한다.

83) 완전 혹은 부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질적 사용을 의미하므로 법적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면 된다. 임차 후 매입계약의 경우,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는 매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매입의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임차료를 공제받든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보고 감가상각하든지 선택한다. 운용리스는 소유주가, 금융리스는 임차인이 감가상각한다. 비록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자산을 개량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단위: 백만루피)

1차 연도		2차 연도	
MI의 취득원가(a)	25	기초 상각 후 잔액(c)	85
M2의 취득원가(b)	75	M3의 취득원가(d)	3
총원가(a+b)	100	총원가(c+d)	88
(-)자산처분 등으로 수령한 대가	0	(-)자산처분 등으로 수령한 대가	8
상각기초	100	상각기초	80
감가상각(15%)	15	감가상각(15%)	12
기말 상각 후 잔액(c)	85	기말 상각 후 잔액	68

4) 상각대상 자산군(Block of Asset: BOA)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유형자산은 건물, 기계, 공장설비(plant), 비품(furniture)으로 구분하며 무형자산은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구분한다. 같은 BOA가 되려면 일단 유형이 같아야 하고 다음으로 상각률이 동일해야 한다.

〈사례 2-1-4〉 자산군의 구분

건물 및 공장설비는 감가상각률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BOA가 다르다. 예를 들어 임시건물의 상각률은 100%이며 환경설비 역시 상각률이 100%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산의 구분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BOA이다.

5) 취득원가⁸⁴⁾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대가 및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원가를 의미한다. 자산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84) 소득세법 제43(1)조

연구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경우 사업용으로 전환된다면 당초 취득원가에서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초 소유자의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자산은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도 변동한다. 취득가액 변동은 대금지급 시에 이루어진다. 자신이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후 재구매한 경우에는 구입원가와 처분시점의 WDV(Written-down value)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례 2-1-5〉 재구매

납세자가 공장설비 P를 사용하다가 2006/2007년에 처분하였는데 당시 WDV는 10백만루피였고 이를 다시 2009/10년에 12백만루피에 재구매하였다면 재구매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10백만루피로 한다.

〈사례 2-1-6〉 판매 후 리스

A회사가 B회사에 자산을 12백만루피에 처분하고 재리스하였는데 처분 당시 자산의 WDV는 10백만루피였다. 이 경우 B회사가 기록할 자산의 취득원가는 10백만루피이다.

6) 상각 후 가액(WDV(Written-down value))⁸⁵⁾

WDV=직전연도 동일한 자산군에 속한 자산들의 WDV+동일 자산군에서 당기에 구입한 자산들의 취득가액-동일 자산군에서 자산의 처분, 폐기 등의 대가-감가상각비(actually allowed)

처분은 교환 혹은 법률에 의한 강제취득 등을 의미하며 합병으로 인한 승계는 제외한다. 처분대가는 보험금을 비롯한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고 실제 허용되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납세자가 임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아닌 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산

85) 소득세법 제43(6)조

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7) 상각률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원가에 대한 일정비율로 하고 BOA에 대해서는 WDV에 대한 일정비율로 한다. 2005년 3월 31일 이후 기계나 공장설비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첫해 20% 추가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다만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이나 사무실 설비, 차량운반구, 즉시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8) 발전(generation) 혹은 발전 및 송전(generation and distribution)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감가상각하고 처분 시에는 처분이익 중 누적 감가상각비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취득원가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처리한다. 감가성 자산 처분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만일 취득 첫해 처분이 되면 자본이익 혹은 손실로 처리한다.

9) 선택 사항이 아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은 납세자의 이익계산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유전개발과 관련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1년 혹은 수년간 비용으로 공제하게 되며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WDV, BOA가 0인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사례 2-1-7〉 감가상각의 결정

P1, P2, P3의 세 자산이 있고 총 2천만루피의 상각기초가액을 가지며 당해연도 P4를 2백만루피에 구입하였고 P1을 25백만루피에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루피)

상각기초	20
P4 취득	2
P1 처분(3백만루피는 단기양도소득)	(22)
감가상각(15%)	0

〈사례 2-1-8〉 WDV의 계산

P1, P2가 20백만루피의 상각기초가액을 가지며 P3를 2백만루피에 구입하고 같은 해 전부를 16백만루피에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위: 백만루피)

상각기초	20
P4 취득	2
처분	(16)
감가상각(15%)	0
WDV(자본손실)	6

10) 부당행위계산부인(anti-avoidance measures)

만일 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 후 다시 구입하였는데 이 거래의 목적이 조세채무를 감소시킨 것이라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과세당국은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1) 감가상각비 이월⁸⁶⁾

당기순이익이 부족하거나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감가상각비를 전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제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86) 소득세법 제32(2)조

라. 기타의 특별공제

1) 차·커피·고무 개발 적립금

차·커피·고무 사업자가 국립농업은행에 예치한 기금은 이익의 40%까지를 공제한다. 동 적립금은 그 이후 사업상 비용과 상계한다.

2) 환경복구(site restoration) 기금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추출하거나 탐사하는 사업자가 국립은행에 기금을 예치한 경우 이익의 20%까지 공제한다.

3)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

과학연구란 자연과학이나 농업, 동물, 양식 등과 같은 응용과학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납세자가 과학연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출의 100%를 공제한다. 납세자가 타인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자체 연구설비에 대한 지출은 200%를 공제하고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공인된 기관에 대한 지출은 175%를 공제한다.

4) 적격 투자에 대한 지출

공기업이나 지방정부나 국가위원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적격 투자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승인된 투자안에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5)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나 기관을 통한 지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나 기관을 통해 지출하는 금액은 공제 가

능하다.

6) 개업비 상각액

사업개시 전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만 인도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사업시작 전 지출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한다.

7) 기타 공제

주식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료지출, 종업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종업원에 대한 상여나 수수료,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⁸⁷⁾ 증권거래세, 상품거래세(commodities transaction tax)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⁸⁸⁾은 공제한다. 사회간접자본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발행한 장기 무이자사채의 할인금액은 기간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사용자가 퇴직기금이나 퇴직정기금에 대하여 기여한 금액은 공제한다.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⁸⁹⁾은 특별적립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적립금은 장기융자사업에서 생긴 과세소득의 20% 이내이다.

마. 일반공제⁹⁰⁾

법 제30~36조까지는 개별 비용항목들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37조는 나머

87) 차입은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차입금을 유용하지 않는 한 무이자대출과 같은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도 공제는 가능하다. 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이용하면 허용하지 않는다. 자금은 타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 취득에 이용하면 허용하지 않는다.

88) 대손은 납세자가 증명한다. 대손이 신뢰성 없는 장부에 기초하거나 완전히 극단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계상한 대손을 인정한다. 대손충당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은 대손충당금 감산 전 이익의 7.5%, 외국은행은 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89) 인도 내의 간접자본설비 사업에 장기 융자를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 공기업인 금융기업, 신용조합, 인도 내 거주목적의 주택건설에 대해 장기금융을 제공하는 주택금융회사, 인도 내 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장기융자를 제공하는 상장기업

90) 소득세법 제37조

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공제에 대한 규정이다.

1) 공제 조건

지출은 법 제30~36조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이나 개인적 지출이 아니어야 한다. 지출은 전적으로(wholly) 그리고 배타적으로(exclusively) 사업목적에 가져야 한다.⁹¹⁾

지출이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업목적에 가지는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지출은 공제는 불가능하다. 법 제37조는 공제가능성의 예시규정이다.

2) 구체적 사례

〈표 2-1-8〉 지출의 공제

항목	방법
추정에 근거한 비용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추정된 비용은 공제한다. 예를 들어 통계적 방법에 기초하여 추정한 판매보증충당금은 공제한다.
우발채무	지출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데 상황 의존적인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 혹은 법정부채	논란이 있는 계약상 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법률규정에 의존하는 법정 채무는 부채로 본다. 예를 들어 소비세는 판매되기 전에 생산단계에서 부과되므로 생산단계에서 부채이다.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사업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 사업의 지출을 다른 사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중단사업	사업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된 이익이 면세	지출은 공제받지 못한다.
제3자에게 제공된 효익	사업목적상 제3자에게 제공된 효익(예를 들면 저작권료)은 비용으로 공제한다.

91) 전적이라는 의미는 금액적인 것이며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동기를 말한다. 사업목적의 의미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표 2-1-8〉의 계속

항목	방법
전기 지출	전기 지출은 당기에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부채로서 조건이 당기에 완성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부	사업목적 없는 자발적 기부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인 사업목적 을 가지고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비경쟁수수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독점적 소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다. 장기간의 독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대상이다.
자발적인 종업원 보상	자발적 보상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에 영향을 주는 실무상 방법으로 지급될 것 • 종업원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 • 지급은 상업적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납세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경비는 여행목적과 금액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제한다. 만일 사업 목적이 부수적인 것이고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제받지 못한다. 해외여행에 배우자가 동반한 경우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배우자 경비도 공제한다.
세무신고와 소송 비용	세무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공제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신고서 작성비용은 사업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는다.
클럽 비용	종업원을 위해서 클럽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입장료나 연간회비, 클럽서비스나 시설 이용료 등으로서 공제된다.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산손실	영업용 자산에 대한 환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영업손실이다. 대차대조표일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손실은 공제한다. 손실의 성격을 정함에 있어서 손실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손실이 사업상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에 활용하거나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한 외환의 평가손실은 영업손실이지만 고정자산에서 생긴 환율차이는 자본손실이다. 손실이 영업손실인지 여부는 최초 차입 당시의 정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평가일 현재의 정황에 따른다. 납세자의 장부상 처리는 환산손실 산출에서 중요하지 않다.
선물계약에서의 환산손실/이득	선물계약이 투자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환산 손실이나 이득은 투자손익이며 이는 동일한 투자손익 간에만 통산된다.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외화차입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가치감소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손실은 공제한다.
세금과 이자	영업거래에서의 간접세는 공제하지만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이자도 공제받지 못한다.

〈표 2-1-8〉의 계속

항목	방법
주식발행비용	주식발행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발행비용은 논란이 있지만 법원은 발행 당시 사채이므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차입비용	차입비용은 차입목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사채할인차금과 할증차금	사채할인차금은 차입 기간 중 비례적으로 공제하지만 사업확장 목적의 사채발행 시 할인차금은 일시에 비용으로 공제한다. 상환할증금도 동일하다.
정당 출판물 광고	정당 출판물에 대한 광고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타 사항	증권거래소 연간 상장비용은 공제된다. 공장이나 설비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공제한다. 기계와 공장설비 수입에 대한 이연지급에 대한 은행보중에 대한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바. 불공제 비용

몇몇 비용들은 세법에서 특별히 공제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 규정에 앞선 것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1)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용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자, 배당, 수수료, 로열티 등을 지급하고도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공제받지 못한다. 원천징수세금을 신고기간 이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한다.

2) 세금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공제한다.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부유세(wealth tax)는 공제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위한 퇴직기금 기여금은 적절하게 급여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한 공제받지 못한다.

사. 기타 특별규정

1) 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공제들

기업의 파트너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파트너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파트너십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 ③ 승인된 후에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한도 내 금액이어야 한다.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이자(interest)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파트너십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② 파트너십 규약 승인 이후에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③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파트너 보상의 한도는 이익이 30만루피 이하 혹은 손실인 경우에는 연 15만루피 혹은 이익의 90% 중 큰 금액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익의 60%이다.

2) 인적 조합(association of persons or body of individuals)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보상, 수수료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아. 특정 상황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나 지출

1) 공제받지 못하는 특정인에 대한 지출

- ① 관계된 자에 대한 과다 혹은 비합리적 지급: 과세당국에서 관련자에 지급된 금액이 과다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지출은 공제받지 못한다. 관련자 들이란 개인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나 임원의 친척들을 말한다. 상당한 이해관계란 2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것을 말한다.
- ②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 관계회사에 대한 지출은 상업적 목적(commercial expediency)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상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지 못한다.

2) 2만루피를 초과하는 지출

수표나 어음이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2만루피를 초과하는 지급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음의 항목은 예외로 한다.

- ① 은행이나 신용기관에 대한 지급
- ② 정부에 대한 지급
- ③ 은행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카드, 송금 등)
- ④ 은행 휴무일에 이루어진 지급
- ⑤ 채권에 대한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지급

위 규정은 예시이다. 따라서 지급목적과 수취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위 금액은 1일 기준 총액이다. 부채 상환이나 기계 등의 지급대금 지급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공로퇴직금에 대한 충당금

공로퇴직금은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간에 공제한다. 충당금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금에 대한 기여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처리방식에 의거하여 향후 종업원에 대한 퇴직공로금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4) 법정 외 기금

승인된 퇴직기금이나 연금 기여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의제 소득

이전에 공제받았던 비용의 환급과 무보증 채무의 경감 항목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의제한다. 반면 이자 부분이 아닌 원금의 경감, 추정된 비용의 환급의 항목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타 용도로 전환하지 않는 과학연구용 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 초과분과 누적 공제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사업용으로 전환한 연구용 자산은 BOA 가산 시 취득원가는 없는 것으로 하며 처분 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중단 손실은 타 이익과는 상계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상계한다.

차. 특례규정

1) 정유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기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탐사와 시추 비용에 대해 100% 공제하고 개발비와 생산비에 대

해서는 자본비용이나 수익적 지출로 보며 비용을 타 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손실을 8년간 이월 공제한다.

2) 실제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표 2-1-9〉 실제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1	세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있는 지출
2	종업원 복지를 위한 퇴직기금 등 기여금
3	종업원에 대한 상여
4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5	적격 은행(scheduled bank)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6	종업원에 대한 연월차수당

만일 위 지급이 실제 지급해야 할 시기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면 현금지출 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의하여 판매세(Sales Tax)의 이연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날에 공제받을 수 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기술용역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소득계산 규정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이익 개념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① 인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인도 내에 있는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 ②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도정부나 인도회사로부터 로열티 형태로 수령
- ③ 기술용역의 대가가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경우

고정사업장의 사업과 전적으로 배타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서 본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카. 회계처리방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현금주의 혹은 납세자가 정기적으로(regularly) 따르는 회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른 소득은 법령에 의한다. 법 제145조에서는 납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장부상 소득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데 장부의 완전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따르는 회계처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이다.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납세자는 이것이 자신이 정기적으로 따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세당국은 특정한 회계처리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발생주의를 적용한 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장부가 진실한 상태를 보여주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과거에 일단 수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인될 수 있다.

납세자는 장부상 회계처리방법과 과세상 회계처리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즉, 이는 정기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장부상 소득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당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을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과세당국에 이러한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납세자는 현금주의 혹은 발생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게는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될 시기를 과세시점을 보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인도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면 과세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가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음은 고려되지 않는다.

상품이나 재고의 구입이나 판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정기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되 평가시점에서 납세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세금은 조정한다.

타. 사업소득의 추계방법

이 규정들의 목적은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특정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 보험업(Insurance Business)⁹²⁾

①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을 운영하는 인에 대하여 법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한다. 생명보험업의 수익은 다른 산업의 수익과 별도로 계산된다.

세액은 다음의 생명보험 수익의 12.5%와 총소득에서 생명보험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합쳐 계산한다.

② 비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외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납세대상자들은 보험감독국에 제공하는 매년 보험계약 현황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③ 외국 보험회사의 인도 지점

인도에서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보험 지점에 관한 이익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총보험 수익액에서 인도 내 보험수익액의 비율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2) 추정계산방법에 의한 이익과 차익의 계산(profits and gains of any business on presumptive basis)⁹³⁾

이 규정이 적용되는 납세대상자(person)는 개인, HUF, 파트너십 기업(LLP 제외)이다. 해당 납세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운송업, 고용 또는 운송리스업은 제외)의 총수입금액이 1천만루피 이하인 경우 추정계산이 가능하다.

이때 총수입금액은 계약 시 고객이 제공한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을 의미한다. 이 추정계산규정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납세

92) 소득세법 제44조

93) 소득세법 제44AD조

자가 실제소득이 추정소득보다 낮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장부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한다.

3) 운송업(Business of Plying, Hiring or Leasing Goods Carriage)⁹⁴⁾

이 규정은 전년도에 10개 이하의 재화 운송기구를 소유한 납세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운송소득은 무거운 재화를 나르는 운송도구인 경우 2011/12사업연도부터는 5,000루피, 무거운 재화를 나르는 운송도구가 아닌 경우는 4,500루피로 계산한다.

여기서 운송도구란 재화의 운반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무거운 재화를 나르는 운송도구란 1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재화를 나르는 도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며 이러한 추정규정이 적용될 때는 추가로 다른 비용이 공제되지는 않는다.

4)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정과세 항목(Presumptive Taxation for Non-residents)

① 비거주자의 경우 선박업(Shipping business in the case of non-residents)⁹⁵⁾

② 광물 채취업(Business of Exploration, etc., of Mineral Oils)⁹⁶⁾

선박업의 경우에는 도내의 항구에서 승객, 가축, 우편이나 물건을 운송하고 수령하는 금액과 인도 외의 항구에서 위의 운송을 하면서 인도 내에서 수령하는 합계금액의 7.5%를 과세한다. 이 경우 수령자는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를 대신하는 모든 납세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광물채취업의 경우 사용중인 플랜트나 기계의 제공이나 시설과 용역의 제공, 석유의 생산과 추출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정하며 인도에서 비거주자나 비거

94) 소득세법 제44AE조

95) 소득세법 제44B조

96) 소득세법 제44BB조

주자를 대신하는 모든 납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인도 밖에서 위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도 내에서 수령하는 금액 합계의 10%를 과세한다.

여기서 플랜트는 위의 사업에서 사용되는 배, 항공기, 운송장비, 과학 장비 등을 의미하고 미네랄 오일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납세자가 추정률(10%)보다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할 경우 실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도 장부의 제출과 세무조사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추정규정에 예외도 존재한다.

③ 비거주자의 항공업(Business of Operation of an aircraft in the case of non-residents)⁹⁷⁾

항공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는 인도에 소재한 지역에서 승객, 기축, 우편 또는 재화의 운반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인도 밖의 장소에서 승객, 기축, 우편 또는 재화의 운반을 하고 인도 내에서 수령하는 금액의 합계의 5%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OECD 모델조약 제8조에 따르면 국제 항공운역은 오직 실질적 운영장소에서만 과세되고 인도는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을 따른다.

④ 특정한 완성 후 인도조건의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⁹⁸⁾

이 조항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완성 후 인도 조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계된 시험이나 검사나 민간 건설 등과 관련된 과세대상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10%가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97) 소득세법 제44BBA조

98) 소득세법 제44BBB조

6. 양도소득(Capital Gains)

가. 양도차익

1) 양도차익 과세의 요건

- ①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존재
- ② 과세연도에 자산의 이전
- ③ 동 거래로부터의 수익 발생
- ④ 면제되는 수익이 아닐 것

2) 자본자산의 의미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란 사업이나 전문 용역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보유자가 소유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때 다음 자산은 제외한다.⁹⁹⁾

- ① 사업용 재고자산(stock in trade, consumable stores and raw material): 사업활동을 위한 재고품의 매매나 원재료의 매매는 사업활동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아니다.
- ② 개인사용자산(personal effects): 동산으로서 가구나 의류 등의 것은 대상 자산이 아니다(이때 보석, 미술품, 조각품 등은 제외한다).
- ③ 인도 내 농업용지(agricultural land in India): 1만명 이상의 지역이나 수도 근처 구역의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용지는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99) 소득세법 제2(14)조

3) 단기 자본자산과 장기 자본자산의 구분(short-term and long-term capital assets)¹⁰⁰⁾

- ① 단기 자본자산: 36개월 미만 보유자산을 의미한다. 이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나 인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금융상품, 뮤추얼펀드, 무이자채권 등은 12개월 미만이면 단기 자본자산으로 본다.
- ② 장기 자본자산: 단기 자본자산이 아닌 것들은 장기 자본자산으로 본다.

4) 양도의 정의¹⁰¹⁾

자본자산의 양도란 다음을 의미한다.

- ① 자산의 판매, 교환 또는 이전
- ② 자산에 포함된 모든 권리 소멸
- ③ 법률에 따른 강제 수용
- ④ 자산의 소유자의 변화: 사업의 재고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
- ⑤ 무이자 채권의 만기 또는 중도 상환
- ⑥ 1882년의 자산거래법(Transfer of Property Act) 제53A조에 언급된 계약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무형자산의 소유허가와 관련된 거래
- ⑦ 부동산의 향유(enjoyment)를 가능하게 하거나 양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

부동산은 거래가 완료되어 등록될 때 매각된 것으로 본다. 유가증권의 거래는 중개인의 기록이 있는 날 발생한 것으로 보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대가 지불 시에 금액을 매수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자산의 양도에는 자산의 부분적 양도도 포함된다.

100) 소득세법 제2(29A)조, 2(42A)조

101) 소득세법 제2(47)조

양도에는 판매, 교환, 포기, 권리소멸이나 강제수용 등이 포함된다. 자산의 판매란 가격이 지불되는 대가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이고 교환이란 다른 자산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는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소멸은 멸실이나 권한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한 것을 의미하며 강제수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자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102) 103)}

1) 기업의 청산 시 자산의 분배

청산 사유로 인한 기업 자산의 분배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재고자산으로 자산의 전환

자본자산을 재고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품이 자본자산으로 전환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전환일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매매가격과 시장가치의 차이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두 번째 방법은 주식의 판매가격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취득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3) HUF로의 자산의 배분

HUF가 그 자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HUF가 현금

102) 소득세법 제46, 47조

103) 이 중 일부 거래는 소득세법 제47A조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철회될 수 있다.

으로 자산을 환가한 후 현금을 분배할 때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증여, 유언 또는 철회 불능 신탁방법의 자산의 이전

자본자산이 유언이나 고정신탁으로 증여의 방법으로 이전될 경우 거래로 보지 않는다. 위 면제방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ESO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자회사 모회사 간 자산의 이전

회사의 자본자산을 100% 인도 내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나 100% 인도 자회사가 인도 모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손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회사 간 합병이 일어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 ① 자본자산을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이전하는 것
- ② 외국기업에 의한 인도 회사의 주식 이전
- ③ 피합병법인 주식의 이전

7)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

회사의 분할이 일어나는 경우 다음의 거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 ① 분할 신설회사로의 자산의 이전
- ② 외국기업에 의한 인도 회사의 주식 이전
- ③ 분할 대상법인의 주식의 이전

8) 인도 외의 채권과 국제예탁증서 등의 이전

인도 밖에서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이나 국제예탁증서 등의 자산의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9) 동일회사의 금융상품 변경

회사의 채권(주식)을 동일 회사의 주식(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이때 우선주를 보통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특정 외화채권 등의 이전

정부 계획하에 발행된 외화채권 등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에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11) 유사파트너십 등의 승계로 인한 자산의 이전

소득세법 제47(xiii)조상의 법정 조건이 충족될 때 유사파트너십(firm)의 자본자산이 기업으로 승계될 때 해당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12) LLP로의 자산의 이전

법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본자산이 개인기업이나 비상장회사에 의해 LLP로 이전될 때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13) 역모기지의 사유로 인한 자산의 이전

역모기지 제도 이용 시 담보 대신 현금을 상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다.

14) 기타 자산의 이전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타 거래는 다음과 같다.

- ① 소득세법 제47(ix)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예술품의 이전
- ② 소득세법 제47(xi)조에 따른 인도증권거래소의 회원권
- ③ 소득세법 제47(xii)조에 따른 부실산업 기업의 토지의 양도
- ④ 소득세법 제47(xiia)조의 회원권의 양도 등

다.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Computation of Capital Gains)

1) 개요

총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¹⁰⁴⁾

자본자산의 양도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수취하는 총수입금액

- 자산의 취득가액
- 자산의 개선 가액(자본적 지출)
- 거래와 관계되는 비용
- = 총양도소득(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그러나 장기 양도소득¹⁰⁵⁾의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용이나 개선비용은 물가수준을 반영한¹⁰⁶⁾ 자산취득비용이나 개선비용을 칭한다.

104) 소득세법 제48조

105) 정부에서 발행된 capital indexed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 있는 장기 자산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106) indexed: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재계산 방법. 자본자산의 장기 양도차익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통제하고자 법에서 정한 대로 인플레이션 지수를 취득가액에 곱해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indexed되었다고 법문에서 표현하고 있다.

2) 총수입금액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총소득을 의미하며 가격의 적절성은 논하지 않는다. 만약 A라는 기업이 공정가치 20만루피의 자산을 10만루피로 양도하고 B기업이 C기업에 250만루피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면 A기업의 총양도가액은 10만루피이고, B기업은 취득하는 해에 저렴하게 구입된 10만(20만-10만)루피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C기업에 양도 시에 양도소득 5만루피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할부로 양도금액을 수령 시에도 전체 금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특정한 경우에 실제 수령된 금액이 아닌 추정된 가치(deemed full value of consideration)로 총수령액을 계산하기도 한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표 2-1-10〉 양도소득의 추정가치 계산방법

	양도방법	추정가치 계산방법
1	자본자산의 파괴나 손실 때문에 보험업자에게 수령한 현금이나 자산	수령한 날의 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현금
2	자본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전환	재고품으로 취급되거나 전환되는 날의 공정가치
3	firm, 인적 조합(AOP), BOI의 현물출자	장부에 계상되는 총금액
4	firm, AOP, BOI의 해산으로 인한 자산의 분배	분배일의 공정가치
5	회사의 청산 시 청산인으로부터 주주가 수령하는 자산	소득세법 제2(22)(C)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감소되는 날의 자산의 시장가치
6	ESOP에 따라 분배되는 증서, 주식이나 채권	증여일의 시장가치

3) 거래와 관계되는 비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예로는 매수자를 찾는 데 소요된 수수료, 인지세와 등록세, 변호사 수수료, 관련 여행 경비들이 포함된다.

4) 취득가액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이 아닌 이익이나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취득가액은 공제된다. 아래 표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정리한다.

〈표 2-1-11〉 자산별 취득원가의 산정

	자산의 종류	취득원가의 산정
1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등)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취득가격
2	스스로 창출한 1번의 무형자산	없음
3	추가적인 금융자산의 분배금(유상증자)	실제 지급한 금액
4	대가 지급 없이 분배된 금융자산(bonus share)	없음
5	신주 신청을 포기하는 권리	없음
6	보통 주식	실제 지급한 금액
7	포기된 주식을 구입하는 권리	실제 지급한 주식가격과 신주포기권에 지급된 금액
8	주식시장의 등록주주에게 할당된 지분	주식시장의 원등록회원의 취득 가격
9	1981년 4월 1일 이전에 납세자의 재산이 된 기타 자산	1981년 4월 1일의 공정 시작 가치, 더 높은 경우는 높은 가액 가능

인플레이션 효과가 아닌 실질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지수 반영(indexation)’이라는 개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1981년 4월 1일부터¹⁰⁷⁾ 매년 물가상승률 지수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한 취득가액(indexed cost of acquisition)을 계산한다.

협상으로 인해 미리 수령한 계약금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자산보유자가 수령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계약금만큼 낮아지게 된다. 만약 수령한 계약금이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의 한도는 실제 취득가액이다.

107) 1981년 4월 1일이 기준연도로서 인덱스가 100이다.

5) 자산의 개선가액(cost of improvement)

자본자산의 추가나 수정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각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2-1-12〉 자본적 지출

	자산의 종류	자본적 지출액
1	무형자산-영업권, 제조, 생산권	없음
2	198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소요된 자본 비용
3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소요된 자본비용

이때에도 장기 자본자산의 경우 인플레이션 지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6) 외화로 거래한 양도차익(capital gain accruing or arising in foreign currency)

비거주자의 외환 자본자산 매매 시에는 취득 시 사용한 외환을 기준으로 양도 시 외환도 맞추어 양도차익을 외환으로 계산한 이후 루피로 환가한다. 이는 취득, 양도 당시의 환율의 변동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7) 기타사항

정부에서 발행한 자본 물가지수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 물가지수 반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유언이나 비복구 신탁이나 유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ESOP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이때 ESOP는 이전일의 공정시장 가치를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자본자산을 계산하는 데에 증권거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라. 특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¹⁰⁸⁾

1) 자본자산의 파손

홍수, 태풍,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 폭동이나 민간 소요, 화재나 폭발, 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적 행동 등으로 자본자산이 파괴, 손실을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자본자산의 항목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2) 재고품으로의 전환

자본자산이 재고품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자산의 이전은 과세된다. 그러나 자산을 전환하는 시기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판매되는 시기에 손익을 인식한다.

3)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통해서 인(Person)이 회사나 인적 조합(AOP 또는 BOI)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거래가 발생한 때에 과세된다. 반대로 회사 등이 해산 시에 분배하는 자본자산의 이전도 과세대상이다. 발생일의 시장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4) 강제수용

법에 따른 강제수용에서 발생하는 자산 취득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자산의 경우 물가지수 고려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108) 소득세법 제45, 47, 48조

5) 청산 시 자산 분배

청산 시 자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산인이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분배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6)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자본이득

주식의 대가로 기업에서부터 주주가 수령하는 모든 금전은 자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 수령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다.

7) 계좌의 재구입

계좌의 재구입의 경우 자본의 가치와 재구입 가격의 차이는 재구입이 발생하는 해에 과세된다.

8) 일괄 매각(slump sale)

일괄 매각이란 소득세법 제2조 42C항 개별적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없이 전체적으로 자산을 묶어 지급하는 방법의 판매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인지세나 등록세나 다른 유사 세목이나 공과금을 위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산의 부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일괄 매각(slump sale)으로 인한 모든 이익이나 수익도 자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자산이 36개월 이상 보유되었다면 장기 자본자산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기 자본자산으로 취급된다.

소득세법 제50B조(slump sale에 따른 자산이전 특례규정)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차익 = 판매 총액 -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sale consideration - net worth¹⁰⁹⁾ of the undertaking)

사업이 36개월 이상 운영되거나 소유된 경우 장기 자본자산 차익으로 과세하고 36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 자본자산 차익으로 과세한다. 자산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과 비감가상각자산의 차이가 없고 다양한 면제규정을 이용하여 자산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세법 제80IA(조세감면기간)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B조 규정으로 자산 차익을 계산한다면 납세자의 소득계산 시 공인회계사의 보고서가 필요하다.

마. 양도차익의 면제(Exemption from Capital Gains)¹¹⁰⁾

〈표 2-1-13〉 양도차익의 면제

감면 종류 (관련조문)	적용 대상	요건	전액감면	부분감면
개인의 거주용 부동산 양도차익 (54)	개인 HU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자산이 건물이나 구축물(거주용 건물)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 - 36개월 이상을 보유한 장기 자본자산일 것 - 거주용 부동산소득 (income from House property)의 항목으로 과세될 것 - 1년 이전 혹은 양도 후 2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것 	예전 집값 < 새 매수 (건설) 집값	예전 집값이 새 집값을 초과할 때 새 집값 한도
농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54B)	개인, HU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 - 양도일 직전 2년 동안 농업용으로 사용했을 것 - 양도 후 2년 내에 농업용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구입할 것 	양도차익의 전액을 새 농업용 토지 구입에 사용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새 농업용 토지 구입에 사용할 경우

109) net worth = aggregate value of the total asset (자산 - 부채): 자산재평가 금액은 무시한다.

110) 소득세법 제54조

〈표 2-1-13〉의 계속

감면 종류 (관련조문)	적용 대상	요건	전액감면	부분감면
토지와 건물의 강제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54D)	모든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른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에 의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일 것 - 양도일 직전 2년 동안 해당 자산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했을 것 - 양도 후 3년 이내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것 	양도차익의 전액을 신규 구입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신규 구입에 활용할 경우 ¹⁾
특정채권 투자이익 (54EC)	모든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양도자산이어야 함 - 6개월 이내에 다른 장기 자산에 투자하여야 함 - 매 회계연도 당 한 납세자에게 500만루피를 한도로 감면이 적용됨 	상동	상동
거주용 부동산 투자의 경우 특정자산의 양도 (54F)	개인과 HU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용 주택이 아닌 장기 자본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 장기 자산의 매각 이후 2년 이후나 1년 이전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자산의 판매 후 3년 이내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는 납세자 - 한 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동	상동
도시에서 도시 외 지역의 산업 착수를 위한 자산의 양도 (54G)	모든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에서 기계, 플랜트, 건물, 땅을 양도한 경우 - 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한 양도이어야 한다. - 양도일 이전 1년 전 혹은 이후 3년 내에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 기계, 건물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상동	상동
도시지역에서 SEZ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자산의 양도 (54GA)		도시지역에서 특별경제구역(SEZ)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자산의 양도		

주: 1) 나머지 금액을 소득세 신고 전에 법정 기관에 공탁할 경우 세금이 면제

바. 기타 사항

1) 감정평가사의 조력 요청¹¹¹⁾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valuation officer)¹¹²⁾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등록된 평가자의 보고서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평가액을 과세관청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과세관청의 의견과 시장가치가 15%와 25,000루피 중 큰 값의 차이를 보일 경우
- ③ 납세자가 평가액으로 1981년 4월 1일의 시장공정가치를 선택하고 납세자가 수령한 가액이 1981년 4월 1일의 공정가치보다 높은 경우
- ④ 상황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등록청에 의해 적용된 가액이 시장가치를 초과한다고 납세자가 이견을 제기한 경우

2) 공탁기관의 주식 거래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소는 등록된 소유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관소에 의한 주식의 거래가 있을 때는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3) 세금의 예납

1만루피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일부 세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111) 소득세법 제50C, 55A조

112) 부유세법(Wealth Tax Act) 제2(r)조에 따름

4) 소득의 상계

소득세법 제70조는 소득 구분 내에서 소득과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 간에 소득과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74조에서는 양도소득(capital gain) 내에서 이월결손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기 양도손실은 장기 양도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양도손실은 장기 양도소득과만 상계된다(intra-head set-off of losses). 양도소득 범주 내의 손실은 다른 소득 구분 항목과 상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항목의 손실은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inter-head set-off of losses).

8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단기 손실은 장기 이익과 상계되거나 장기 손실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장기 이익에 대해서만 상계된다.

사. 세율

1) 세율의 적용

장기 양도소득이 단기 양도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 ① 단기 양도차익(short-term capital gains):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보통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30%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주식 매매로 인한 단기 양도차익은 15%(교육세와 부가세 가산 전)의 세율로 과세된다.
- ② 장기 양도차익(long-term capital gains): 20%(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10%)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주식으로부터의 이익이 제10(38)조¹¹³⁾가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도 회계상 이익으로는 계상하여야 한다.

113) 이는 주식처분으로 인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는 조항임.

소득세법 제10(38)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장, 구좌형, 제로쿠폰 채권의 경우는 인
텍세이션 혜택을 받는 경우 20%에 교육세, 부가세가 적용되고 물가지수 반영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는 10%에 교육세, 부가세가 적용된다.

2) 기본공제

개인이나 HUF의 경우 16만루피, 여자의 경우 19만루피, 노인의 경우 24만루피가
면제된다.

7.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소득세법 제56조부터 제59조에서는 5가지 소득의 범주 중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의 네 가지 규정(급여, 거주용 부동산, 사업, 양
도차익)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 다루는 규정이다. 다른 소득에 해당되면
일단 그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가.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에는 다음 종류의 소득이 있다.

1) 배당소득

배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나 배당분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배당
을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0(34)조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 집중 회사(closely held company)가 지급하는 돈·자산·전도금 또는 의
결권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대출금, 또는 그러
한 주주가 상당한 이자를 수령하는 수익자(member/partner)라면 이는 의제배당으
로 보고 소득세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과세가 된다. 이런 의제배당은 배당분배세

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배당은 인도 밖의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의제배당이다. 선급금(trade advance)는 법 제2(22)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이나 전도금에 대한 사내유보 준비금(inter-corporate deposits)은 명확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011년 4월 1일부터 외국회사가 주식을 26% 이상 보유한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15%의 세율로 특별과세된다. 이때 경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투자목적이라도 배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조세회피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배당받는 자에게 과세된다. 배당에 관한 세액은 해마다 신고·납부한다. 중간배당은 무조건적으로 해마다 과세된다. 그러나 만약 사실적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의 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그 나라 관련법에 의해 원천과세 대상이다. 이럴 경우 인도에서 배당으로 보는 금액이 총배당액인지 원천세를 차감한 순배당액인지에 대한 판결에 논란이 있다.

2) 이자소득

만약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이자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담보(업무 또는 사업목적 포함), 대출, 예금,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 시작 전의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해산 과정에서의 예금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계약자로부터 프로젝트를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받은 전도금(advance)의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3) 보상금에 대한 이자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상금 대한 이자는 받은 해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자의 50%가 공제되지만 다른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4) 복권, 도박, 경마로부터의 소득

아래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30%의 세율로 과세된다.

- ① 복권당첨금
- ② 단어 퍼즐 상금
- ③ 경주, 경마로 인한 소득
- ④ 카드게임 등으로부터의 소득
- ⑤ 도박 등과 그 비슷한 활동으로 인한 소득

5) 적절한 대가 없이 받은 돈이나 자산(동산·부동산)

개인적인 선물은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적절한 대가 없이 받은 다음의 항목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① 개인이나 HUF(Hindu Undivided Family)로부터 5만루피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¹¹⁴⁾
- ② 개인이나 HUF로부터 받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외의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런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보석, 골동품, 그림, 조각, 금괴 등이 있다.

위 규정은 개인이나 HUF로부터 받은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일정 친족¹¹⁵⁾이나 특수한 상황¹¹⁶⁾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114) 개인이나 HUF로부터 받은 부동산, 5만루피를 초과하는 부동산의 인지세는 자산을 받은 자에게 과세된다.

115) 일정 친족에는 (a) 배우자, (b)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c)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 (d) 부모님의 형제·자매 (e) 위에서 설명한 (b)(c)(d)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116) 특수한 상황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개인이 결혼할 때, 유언이나 상속에 의할 때,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주는 선물(in anticipation of the death of the person giving the gift),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일정 기금, 재단, 대학, 교육기관, 병원, 의료기관, 신탁, 법 제10(23c)조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법12AA조에 등록된 신탁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적절한 대가 없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원칙적으로 인도회사의 주식(share)을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세법개정에 따르면 2010년 6월 1일 이후 적절한 이유 없이 소유집중회사로부터 또 다른 소유집중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치와 그 주식의 consideration의 차이가 5만루피를 초과할 경우).

다음 이유로 주식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 ① 외국회사가 또 다른 외국회사와 합병, 분할하였을 경우
- ② 협동은행의 재조직(business re-organization of a co-operative bank)
- ③ 합병, 분할할 때 분할 ·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 · 존속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7)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 여러 가지 소득(other miscellaneous income not chargeable under any other head of income)

- ① 건물, 기계 · 장비를 빌려주고 받은 소득(hire charges from buildings, machinery or equipments):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가구를 빌려주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주거용 건물을 전대함에 따른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② 의회의 의원에 지급한 보수 또는 임원의 보수(Remuneration paid to Members of Parliament or Director's fees): 고용관계 없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고용 관계없이 이사회에 참여한 임원에게 주는 돈이나 의회의 의원이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③ 정기금과 가족연금(annuities and family pension):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보험계약에 따른 정기금과 직원의 가족에게 주는 연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 ④ 종업원 보험에서 받은 금액(Sum received under a Keyman Insurance Policy): 보너스를 포함하여 종업원 보험에 의해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된다. 사업소득과 급여로 과세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 ⑤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한 환급(Refund in respect of loss or expenditure): 손실 또는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전년도에 감면 또는 중단의 방법을 통해 납세의무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전년도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나.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¹¹⁷⁾

다음의 비용은 기타소득 항목에서 공제한다.

1) 배당이나 이자 관련 수수료 또는 보수

배당이나 이자를 실현시키기 위해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회사의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해 과세된다면 이미 이 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기계·설비 임대와 관련된 비용과 감가상각비

건물/기계·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나 보험프리미엄 또는 수리비용은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3) 가족연금(family pension)에 대한 표준공제

가족연금이란 해당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원의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기적인 연금을 말한다. 이 소득의 33.33%를 표준공제로 공제하며 그 한도는 15,000

117) 소득세법 제57조

루피이다.

4) 소득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

- ① 그 소득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였을 것
- ② 그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닐 것
- ③ 개인적 비용이 아닐 것
- ④ 관련 회계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일 것
- ⑤ 소득과 확실한 연관이 있을 것

다. 불공제 비용¹¹⁸⁾

다음 비용은 기타소득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① 개인적인 비용: 예를 들어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 등이 있는데 이는 공제되지 않는다.
- ② 인도 밖에서 지급한 이자 또는 급여
- ③ 부유세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
- ④ 소득세법 제40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비용
- ⑤ 복권당첨, 도박·경주·게임승리를 위한 비용(다만, 주인이 말을 관리하기 위해 쓴 비용은 공제가 인정된다).

8. 손실의 상계와 이월(Set-off and Carry Forward of Losses)

소득세는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이다. 이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8) 소득세법 제58조

가. 같은 소득항목하에서 한 원천의 손실과 다른 원천소득과의 상계¹¹⁹⁾

양도소득(capital gains)을 제외한 소득항목(head of income)에서 같은 소득항목 내에 있는 소득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소득 범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의 범주에서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한 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하나의 소득 범주의 손실과 다른 소득 범주의 이익과의 상계¹²⁰⁾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제외하고, 하나의 소득항목의 손실은 그 회계연도의 다른 소득항목의 이익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손실(business loss)은 근로소득(salary income)과 상계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상계 순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 손실의 이월 공제와 상계(Carry Forward and Set-off of Losses)

1) 거주용 부동산(House Property)소득으로부터의 손실의 이월과 상계¹²¹⁾

다른 소득항목과 상계를 하고 남은 거주용 부동산 소득(house property)의 손실은 다음 8년 동안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119) 소득세법 제70조

120) 소득세법 제71조

121) 소득세법 제71B조

2) 사업(Business) 손실의 이월과 상계¹²²⁾

사업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미상각한 감가상각비는 연도의 제한 없이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상계한다.

- ① 그 해의 사업상 손실
- ② 이전연도에서 넘어온 사업상 손실
- ③ 현재와 이전 연도의 미상각잔액
- ④ 아직 상각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학연구비

손실의 이월 또는 상계는 소득세법상의 납세대상자(person)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손실의 이월을 주장할 수 없다.

3) 분할 또는 합병 시의 누적된 손실과 미상각잔액의 이월과 상계

손실의 이월과 상계는 납세대상자(person)별로 이루어지지만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① 합병

산업회사 또는 항해회사 또는 호텔의 합병, 은행 간의 합병, 항공기를 운행하는 공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누적된 사업소득의 손실과 미상각잔액은 합병회사가 승계받아 8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합병회사의 사업상 손실과 미상각잔액이 3년 이상 존재하였어야 한다.
- 피합병회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최소한 4분의 3 이상이 합병일 전 2년 전부터 존재하여야 한다.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4분의 3 이상을 최소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22) 소득세법 제72조

- 합병회사는 최소 5년 동안 피합병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계속성(revival) 조건을 만족하거나 사업목적상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분할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분할회사의 이전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누적사업소득의 손실과 미상각잔액은 존속회사가 승계받아 이월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만약 손실이나 미상각잔액이 특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손실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의 비율에 따라 승계받을 수 있다. 분할은 진정한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기업(company)에 의한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proprietary concern)의 승계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이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여 기업(company)에 승계되었을 경우 그 회사의 사업소득의 손실은 승계받은 기업이 8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

-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 직전에 기업의 자산·부채가 되어야 한다.
- 승계 직전에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
-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개인소유주는 주식의 할당 외의 방법을 통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개인소유주가 받은 주식의 총계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보다 적어야 하고, 그 주식을 승계일부터 5년 동안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LLP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비상장공개기업의 승계(Succession of private company or unlisted public company by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¹²³⁾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유한회사 또는 비상장공개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의 사업상 손실을 LLP의 사업상 손실로 승계받

123) 소득세법 제72A(6A)조

아 8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

4) 특정 조건의 은행 간 합병(Amalgamation of a banking company in Certain Cases)¹²⁴⁾

이러한 경우는 은행회사의 손실과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은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5) 협동조합은행의 재조직(Reorganisation of Co-operative Banks)

협동조합은행 간의 합병에서 피합병은행의 누적사업손실과 미상각잔액은 합병은행이 이전받아 이월·상계할 수 있다. 이때 전임 협동조합은행이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최소한 4분의 3 이상을 합병 전 2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후임 협동조합은행은 최소한 5년 동안 이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4분의 3 이상을 5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성(revival)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행의 분할이 있었을 경우에 그 일과 관련된 누적손실과 미상각잔액은 존속은행에 상계가 허락된다.

6) 투자산업에서의 손실(Losses from a Speculation Business)¹²⁵⁾

투자사업¹²⁶⁾에서 발생한 손실은 오직 또 다른 투자사업에서만 상계가 된다. 상계되지 않은 손실은 4년 동안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124) 소득세법 제72AA조

125) 소득세법 제73조

126) 회사의 사업이 주식의 판매와 구매로 구성되어 있다면 투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 소득이 이자나 house property 소득이나 자본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주된 사업이 은행업, 대출업인 회사는 Speculation Business로 보지 않는다.

7) 특정 사업에서의 손실의 이월·상계

저온유통시설이나 창고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오직 그 사업에서의 이익에서만 상계된다. 상계되지 못한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가능한 연도의 제한은 없다.

8) 자본자산(capital gains)의 손실(양도차손)¹²⁷⁾

단기 양도차손(capital loss)은 장기 양도차익(capital gain)과 상계할 수 있지만 장기 양도차손(capital loss)은 장기 양도차익(capital gain)과만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8년간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9) 유사파트너십(firm)의 손실에 대한 이월·상계

유사파트너십(firm)의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해 이익의 비율을 초과하여 은퇴한 파트너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손실의 상계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소유권 집중 회사(closely held companies)의 손실에 대한 이월·상계

주식보유량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소유권 집중 회사의 손실은 이월·상계할 수 없다. 이월·상계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한 51%를 납세대상자(person)가 영향력 있게¹²⁸⁾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영향력 있는 비율이 최소 51%를 넘어야 한다.

다음의 상황에 의한 주식보유량의 변화는 변화로 보지 않는다.

- ① 주주의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친척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였을 경우

127) 소득세법 제74조

128) 여기서 영향력 있음은 주주로 등록된 자로 해석된다.

- ② 외국회사의 합병·분할에 의해 만들어진 인도의 자회사의 경우, 피합병회사·분할회사 주주의 51%가 합병회사·존속회사의 주주가 됨에 따른 변화

라. 결손 신고서의 제출(Return of Loss)

손실을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소득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날짜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1-14> 결손금의 이월

다음해로 이월되는 소득유형	다음해에 손실과 상계되는 소득유형	이월가능 연도수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서의 손실	거주용 부동산 소득	8년
투자사업손실	투자사업소득	4년
특정 사업과 관련된 손실	특정사업과 관련된 소득	제한 없음
감가상각의 미상각잔액	근로소득(salary)을 제외한 소득	제한 없음
사업손실	사업소득	8년
단기 양도손실	양도소득	8년
장기 양도손실	오직 장기 양도소득	8년

9. 개인에 적용되는 공제(Deductions Available to Individuals)

종합소득공제는 개인의 총소득(장단기 자본이익 제외) 범위 내에서만 공제된다. 총 소득이란 이전에 검토했던 모든 명목의 소득 합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소득공제는 반드시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절에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만을 다룬다.

가. 지출에 따른 소득 공제

총공제의 합계는 10만루피를 초과할 수 없는데 연금기금에 대한 사용자 기여금은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1) 생명보험료, 이연 정기금, 퇴직기금 기여금,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구입대금¹²⁹⁾

다음의 항목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여 준다.

- ①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한 생명보험료. 보험료는 보장된 보험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환급금이나 가입자에 대한 반환금은 제외한다.
- ②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한 이연정기금 불입료. 단, 일시금 선택 가능한 옵션을 가진 상품은 제외한다.
- ③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한 이연정기금 불입료는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 ④ 퇴직기금법에 따른 적격 퇴직기금에 대한 불입료
- ⑤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납부한 공적 퇴직기금 불입료
- ⑥ 승인된 정기금에 대한 종업원 납입료
- ⑦ 중앙정부 보장금이나 공식적인 적금에 대한 불입료
- ⑧ 정부저축증서법에 따른 국립저축증서에 대한 불입료로서 이 증서에 이자로 재투자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 ⑨ 변액생명보험(unit linked insurance)법에 따른 변액보험 불입료
- ⑩ 중앙정부가 지정한 승된 받은 정기금 기여금
- ⑪ 중앙정부 혹은 CBDT에서 지정한 투자신탁에 대한 불입금
- ⑫ 공식적인 연기금에 대한 기여금
- ⑬ 중앙정부가 승인한 국립주택은행의 연금이나 저축에 대한 기여금
- ⑭ 공식적인 저축 불입금

129) 소득세법 제80C, 80CA, 80CCB조

- 인도 내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장기금융을 제공한 상장기업
- 인도 개발이나 도시 개선을 위한 기구
- ⑮ 두 명 이내 자녀를 위한 전일제 학생에 대한 수업료
- ⑯ 주거용 건물의 건축 혹은 매입을 위한 지출. 오직 주택에만 해당하며 토지나 기존 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그리고 주택대출 할부금의 원금부분만 해당된다.
- ⑰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상장기업이나 상장금융기관의 주식이나 채권 납입료
- ⑱ 투자신탁 납입금
- ⑲ 중앙정부가 승인한 시중은행(scheduled bank)의 5년 이상 저축 불입금
- ⑳ 중앙정부가 승인했거나 국립농업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불입금
- ㉑ 노령저축법에 따른 계좌 불입금
- ㉒ 우체국에 대한 5년간 정기예금

다음 경우에는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① 생명보험료의 경우에는 2년 이내 불입을 중단하는 경우
- ②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납입자가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중단된 경우
- ③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④ 우체국예금이나 노령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이전에 환급받는 경우

2) 특정 연금에 대한 기여금¹³⁰⁾

소득으로 과세하는 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 가능하지만 개인계좌에 대한 이자나 상여는 제외하며 환급 시에는 그 시점에서 과세한다.

130) 소득세법 제80CCC조

3) 중앙정부 연금 기여금¹³¹⁾

공식적인 연금에 대한 종업원이나 사용자의 기여금은 공제한다. 종업원의 경우에는 급여의 10%까지, 기타 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10%까지이다. 사용자 기여금도 급여의 10% 한도이다.

4) 주식 저축¹³²⁾

25,000루피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된 주식저축 투자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 개인의 총소득이 100만루피를 초과하지 않고 3년 동안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의료보험료와 중앙정부 건강제도 기여금¹³³⁾

다음의 각 경우에 공제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와 부모를 위한 의료보험료로서 총 4만루피까지 공제한다.

중앙정부 건강제도에 대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를 위한 기여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15,000루피, 부모를 위한 경우에는 15,000루피까지, 노인을 위한 경우에는 20,000루피, 중앙정부 기여금의 경우에는 각자 15,000루피를 한도로 한다.

131) 소득세법 제80CCD조

132) 소득세법 제80CCG조

133) 소득세법 제80D조

〈표 2-1-15〉 의료보험료

(단위: 루피)

	보험료		공제		공제 합계
	본인	부모	본인	부모	
납세자 본인과 부모가 노인이 아닌 경우	21,000	21,000	15,000	15,000	30,000
납세자가 노인이 아니지만 부모가 노인인 경우	21,000	21,000	15,000	20,000	35,000
모두 노인인 경우	21,000	21,000	20,000	20,000	40,000

6)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치료비¹³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지출에 대해 실제 지출금액과 무관하게 5만루피를 공제하며 중증장애인은 10만루피를 공제한다.

7) 특정 질병 치료비¹³⁵⁾

정부의료기관 의사의 진찰 결과, 부양가족 중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공제한다. 실제 지출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4만루피인데 환자가 노인이라면 한도는 6만루피이다.

8) 고등교육을 위한 대출이자¹³⁶⁾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과 관계자를 위한 대출이자 공제한다. 관계자란 배우자, 자녀 및 법적 후원자를 말한다. 대학입학자격시험(senior secondary examination)을 통과한 후 교육을 위한 대출이어야 하고 승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34) 소득세법 제80DD조

135) 소득세법 제80E조

136) 소득세법 제80E조

대출이어야 하며 최대 8년간 공제된다.

9) 특정 기금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¹³⁷⁾

기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공공기금에 대한 기부금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에 대한 기부금은 100%, 기타 기부금은 50% 인정한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은 총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0) 거주를 위한 임차료¹³⁸⁾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임차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임차료 부담분에 대해서 공제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상업용 건물이나 임대용 건물 등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별도 건물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실제 임차료에서 총소득(VI-A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제외하고 이번장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제외되지 않은 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과 총소득의 25%, 월 2,000루피의 세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1) 과학연구와 농업개발을 위한 기부¹³⁹⁾

승인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과학연구나 농업개발을 위한 기부금은 공제한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승인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공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37) 소득세법 제80G조

138) 소득세법 제80GG조

139) 소득세법 제80GGA조

12) 정당이거나 선거신탁(electoral trust)에 대한 기여금¹⁴⁰⁾

개인이 인도 내의 선거신탁이나 승인된 정당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제된다.

〈사례 2-1-9〉 총소득의 계산

자영업자로서 총소득은 150만루피인데 여기에는 3만루피의 장기자본이익과 4만루피의 복권당첨금이 있다. 본인, 배우자, 딸을 위한 생명보험료 5만 5천루피를 지급하였는데 보장보험금은 100만루피이다. 공적 퇴직기금에 2만 5천루피를 납부하였고 정기금으로 1만루피를 납부하였다. 딸을 위한 수업료로 2만루피를 지출하였고 이 중 2,500루피는 통학버스, 2,500루피는 급식료이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구입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고 대출이자로 10만루피, 원금상환으로 1만 5천루피를 지급하였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임차료로 6만루피를 지급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채권에 2만루피를 지출하였으며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료로 4,000루피를 지급하였고 라지브 간디재단에 5,000루피, 아동구호재단에 2,000루피를 기부하였는데 두 단체는 모두 세법에서 기부금단체로 승인받았다. 이때 총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위: 루피)

총수입금액		1,500,000
차감: 장기자본이익	30,000	
복권당첨금	40,000	70,000
수정후 총소득		1,430,000
법 제80C조에 따른 공제:		
생명보험료	55,000	
퇴직기금기여금	25,000	
수업료	15,000	
주택대출원금상환	15,000	

140) 소득세법 80GGC

제80C조에 의거한 공제합계	110,000	
제80CCC조에 의거한 정기금 공제	10,000	
제80C, 80CCC조에 의거한 공제합계(한도 100,000루피)	120,000	100,000
제80CCF조에 따른 공제	20,000	
의료보험료	4,000	
제80G, 80GG조에 따른 공제 후 소득		1,306,000
제80G조에 따른 공제		
지정기부금(50%)	1,000	
간디재단기부금(100%)	5,000	
총소득		1,300,000

나. 소득에 따른 공제

1) 교과서 외 도서 저자의 인세¹⁴¹⁾

예술, 과학, 문학 도서의 저자로서 받는 인세는 공제한다. 다만 교과서, 브로셔, 잡지, 신문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판물은 제외한다. 인세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 일시불로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일시불이 아닌 경우, 공제받는 금액은 도서판매로 인한 수입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는 30만루피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받은 인세는 수입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 인도로 송금되어야 한다.

2) 특허권 로열티¹⁴²⁾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자로 등

141) 소득세법 제80QQB조

142) 소득세법 제80RRB조

록되어야 하고 공제한도는 30만루피이다.

일시불로 받는 금액도 포함하지만 장기 자본이익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특허를 이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외에서 받는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연도 말 기준 6개월 이내 인도 내로 송금되어야 한다.

3) 저축계좌 예치금에 대한 이자¹⁴³⁾

개인의 은행, 협동조합, 우체국에 있는 저축계좌의 예치금의 이자는 1만루피까지 공제한다.

다. 기타공제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7만 5천루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0만루피를 공제한다.

10. 특수한 세액 계산방법

가. 총액 과세방법(Gross Income Taxation)

1) 외국기업의 배당, 수수료 수익,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¹⁴⁴⁾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수익 총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소득들에 대한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1~3번의 소득밖에 없는 경우 비거주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적합한 세금이 이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된 경우(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세

143) 소득세법 제80TTA조

144) 소득세법 제115A조

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표 2-1-16〉 소득의 종류별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종류	적용 세율
1	일반 배당	20%
2	인도 정부 발행 채권 이자	20%
3	사회간접자본 펀드에서 수령하는 이자	5%
4	MF에서 외화로 구입한 채권에서 수령하는 이자	20%
5	로열티나 기술자문료 수익	10% (2014년 4월 1일 이후 25%)

2) 외화 취득펀드 계좌 소득과 관련 양도소득¹⁴⁵⁾

본 규정은 역외펀드가 수령하는 다음의 소득에 적용된다. 이 때 ①과 ② 소득에 대하여 비용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 시의 물가지수 반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① 외화로 구입한 계좌(unit)¹⁴⁶⁾에서 수령하는 소득 또는
- ② 이러한 계좌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장기 양도차익

역외펀드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①의 10%, ②의 장기 자본이익의 10%, ①과 ②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총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액의 합으로 계산한다.¹⁴⁷⁾

145) 소득세법 제115AB조

146) Mutual Fund의 좌수나 인도의 Unit Trust의 좌수를 의미한다.

147) 그러나 많은 면제규정들이 있어 법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35), 10(38)조)

3) 외화로 취득하는 외화예금(Global Depository Receipts: GDR) 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및 이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¹⁴⁸⁾

본 규정은 비거주자인 납세자의 다음 소득에 적용된다. 비용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 시의 물가지수 반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①과 ②의 소득밖에 없는 경우 비거주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적합한 세금이 이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된 경우(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합병이나 분할 시에도 이 혜택은 유지된다.

- 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도 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정부에 의해 매각된 공기업의 채권에 대해 비거주자가 외화로 수령하는 이자소득
- ② GDR¹⁴⁹⁾에 대한 배당: 인도 기업의 최초 주식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가 발행한 GDR 또는 정부에 의해 판매된 공기업의 주식에 대한 GDR, 승인된 중개인을 통해 외화로 비거주자에 의해 구입된 인도회사의 주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 발행된 GDR에 대한 배당¹⁵⁰⁾
- ③ 위의 채권들이나 GDR에 대한 장기 양도차익

이때 비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채권 또는 GDR의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10%, 장기 자산양도차익의 10%,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4) 특정 산업의 거주자가 취득한 GDR에서 발생하는 소득¹⁵¹⁾

특정 지식기반 산업이나 서비스업의 인도 기업의 거주자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148) 소득세법 제115AC조

149) GDR: 인도 외 국제예탁은행이 발행한 증권 또는 예탁 증서의 형태 또는 비거주자 투자를 위한 발행 기업의 FCCB(Foreign Currency Convertible Bond) 또는 보통주 등의 금융상품

150) GDR 또는 상기 채권의 거래가 인도 밖에서 두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51) 소득세법 제115CA조

이때 ESOP로 발행되는 GDR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10%, 이러한 GDR의 장기 양도소득의 10%, 거주자의 다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비용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 시의 인덱세이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5) 외국 기관투자자의 특정 소득¹⁵²⁾

본 조문은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외국 기관투자자의 납부세액은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의 20%(역외펀드 및 뮤추얼펀드 소득은 제외,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6월 1일 사이에 인도회사의 루피화 회사채 및 인도 국채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로 과세), 이러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단기 양도차익은 30%(주식이나 주식형펀드의 경우는 15%),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은 장기 양도차익의 10%, 기타 납부세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보통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물가지수 반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6) 복권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¹⁵³⁾

복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총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7) 비거주자 운동선수 또는 운동단체의 세금¹⁵⁴⁾

인도에서 운동대회에 참석하거나 광고를 찍고 신문 등에 기고를 하는 비거주자 운동선수에 대한 규정이다. 이러한 자가 받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20% 과세한다. 동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 세무신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152) 소득세법 제115AD조

153) 소득세법 제115BB조

154) 소득세법 제115BBA조

8) 비거주자의 전문 인적용역

인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기술적 용역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소득계산 시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과세되지만 인도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나.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을 방지하고자 1998년 4월 1일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득세액이 회계이익(Book profit)의 18.50%(부가세, 교육세 제외)에 미치지 않을 경우 최저한세(MAT)를 적용한다.

〈사례 2-1-10〉 MAT(최저한세) 적용예시

(단위: 루피)

총소득	50,000
총소득에 대한 세금(세율:30%) (A)	15,000
회계이익	300,000
회계이익의 18.50% (B)	55,500
최저한세(A 또는 B 중의 큰 것)	55,500

1) 회계이익(Book profit)

회계이익(Book profit)이라 함은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과세연도(assessment year)의 순이익에 조정을 가한 것을 말한다.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에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 항목은 순이익을 증가시키는(순이익에 가산하는) 항목들이다.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

- ② 이월된 준비금(35AC에 규정된 사항 제외)
- ③ 확정된 채무 이외의 채무에 관한 규정
- ④ 자회사의 손실에 관한 규정
- ⑤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배당
- ⑥ 면제소득과 관련된 비용
- ⑦ 감가상각비
- ⑧ 이연세금
- ⑨ 장부상 자산의 가치 감소에 대한 규정

다음은 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① 준비금의 인출
- ② 확실한 면제소득
- ③ 자산 재평가에 의한 상각을 제외한 감가상각
- ④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손익계정의 재평가충당금 차감액
- ⑤ 이월결손금 또는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
- ⑥ 부실 산업회사의 이익
- ⑦ 차변에 계상된 이연세금
- ⑧ 법 제80HHC, 80HHE, 80HHF조에 규정된 공제

2) 세금의 포함 여부

2008년 재정법(Finance Act)에 추가된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다음 사항이 소득세제에 포함된다.

- ① 배당분배세, 소득분배세(income distribution tax)
- ② 이자
- ③ 부가금(surcharge)
- ④ 소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education cess)
- ⑤ 소득세에 부가되는 중등·고등 교육세

다음의 세금은 순이익을 회계상 이익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 ① 부유세
- ② 증권거래세
- ③ 간접세
- ④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2009/10회계연도까지 적용

3) 외국회사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인도 내에서 설립되고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 라면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인도 내에 현존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의 경우 은행규제법(Banking Regulation Act)에 의한 장부를 준비해야 하고, 인도기업법(Indian Companies Act)에 따른 장부의 구비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을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4)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

납세자가 외국에서 번 소득은 장부상 이익에 포함이 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5) 미상각 손실의 상계와 이월결손금의 공제 권리

사업손실, 손금 부인된(unabsorbed) 감가상각 등 적용받지 못한 공제의 이월에 대한 기업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장부상 회계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적용받지 못한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세액 공제

총소득에 대한 세금과 최저한세의 차이에 대해 공제가 된다. 2009년 개정에 의해

2010년 4월 1일부터는 최저한세가 지불된 해로부터 10년 동안 상계가 가능하다. 결국 2010/11년에 최저한세가 발생하여 지불되었다면 2020/21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7년간 가능했다.

〈사례 2-1-11〉 최저한세 적용 후 세액의 계산

	year 1	year 2
최저한세	400	200
총소득에 대한 세금	150	300
세액공제	250	
상계		100
납부세액		200

year 1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어 year 2부터 상계 적용이 가능하다.

2010년 법률 개정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는 비상장기업이나 개인기업이 LLP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환된 LLP에는 세액공제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모든 기업은 소득세법 제115JB조 규정에 따라 회계상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였다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05년 4월 1일 이후 unit 또는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발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2/13년부터는 이러한 기업 등에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11.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가. 비거주 인도인(NRI)의 정의

비거주 인도인(NRI)이란 인도 시민권자 또는 인도계 사람 중에서 인도 거주자가 아닌 자로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인도 태생인 경우 인도계 사람으로 본다.

〈표 2-1-17〉 비거주자 인도인의 판단

조건	거주자 여부
1) 직전연도 인도에 182일 미만으로 거주	Yes인 경우 아래 조건2)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임
2) 직전연도 인도에 6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직전 4개연도 동안 인도에 365일 이상 거주	Yes인 경우 거주자임 No인 경우 비거주자임

주: 상기 1) 또는 2)의 자가 인도 배의 선원 또는 인도 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위하여 인도를 떠난 경우 2)번의 60일 기준이 182일로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인도 시민권자 또는 인도계 사람이 상기 두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 요건을 만족한다면 NRI로 본다. 이러한 비거주자의 정의는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과 차이가 있다. 외환관리법에서는 인도 거주기간 및 거주 목적을 고려하여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한다.

〈사례 2-1-12〉 NRI의 판단

X는 인도 시민권자이며, 2012/13년도 중 2012년 6월 3일에 인도를 떠났다(고용관계 없음). X는 2013/14년에 NRI가 아님(직전연도 4월 1일~6월 3일 63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떠났으면 NRI에 해당된다.

Y는 인도계 사람으로서 미국에 거주한다. 2012/13 사업연도 중 2012년 9월 10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인도 방문. Y는 총 203일을 인도에 머물렀으므로 NRI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2년 10월 2일 이후에 방문했다면 NRI에 해당한다.

나. NRI 과세제도

NRI 과세제도는 인도 내 특정 자산에 대하여 NRI에 의한 외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다. 전반적으로, NRI가 투자를 통하여 얻는 소득 및 투자과정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특정한 경우 NRI의 소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1) 관련 항목의 정의

- ①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배당분배세가 적용되는 배당을 제외한, 외환자산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② 외환자산(Foreign exchange asset): 납세자가 취득하거나 구입한 외환자산
- ③ 특정 자산(Specified asset)
 - a) 인도 회사 주식
 - b) 인도 회사가 발행한 채권(개인 기업 제외)
 - c) 인도 회사에 대한 예금(개인 기업 제외)
 - d) 중앙정부 증권
 - e) 중앙정부가 고시한 기타 자산
- ④ 통용되는 외환(Convertible foreign exchange): 외환관리법 목적상의 통용되는 외환으로서, 인도 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에서 취급하는 외환
- ⑤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외환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으로서 단기 양도소득이 아닌 것. 따라서 비거주 인도인이 외환자산을 최소 36개월(인도 상장주식, 뮤추얼펀드, 무이자채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얻는 이득은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됨

2) 경감세율

경감세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소득의 경우 20%(교육세 2%, 이차(secondary) 교육세 1% 추가)이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10%(교육세 2%, 이차 교육세 1% 추가)이다. 장기 양도소득은 법 규정의 정의를 따라야 하며, 물가반영 비용(cost indexation)의 이익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기 규정된 특정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20%(교육세 2%, 이차 교육세 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 10월 1일 이후 증권거래세가 과세된 특정 회사 또는 펀드 주식의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3) 특정 상황에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기존 자산의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정 자산 또는 저축증서(이하 신규 자산(new assets))에 대한 투자 시, 신규 자산의 취득비용이 기존 자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본이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신규 자산의 취득비용이 기존 자산보다 작은 경우, 전체 자본이득 중에서 신규 자산의 기존 자산 대비 취득비용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이 과세 면제된다. 즉, 신규 자산 취득비율만큼 과세가 면제된다.

과세 면제 신청을 위한 투자 유지기한은 3년이며, 3년 이내에 신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4) 요약

〈표 2-1-18〉 NRI의 소득에 따른 세율 적용

구분	적용세율
투자소득	20%
장기 양도소득 (특정자산 양도 제외)	20%
장기 양도소득 (외화 자산양도)	10%
기존자산 양도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	과세 없음
기타 소득	일반 세율

주: 교육세 2% 및 이차교육세 1% 추가

〈사례 2-1-13〉 NRI의 과세소득과 세액

NRI가 2010년 1월 1일에 주당 10루피의 외환 인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00주를 구입하였다. (2010년 1월 1일 현재 환율은 40루피/달러)

- 2012년 6월 1일에 주당 16루피에 주식 매도. 해당일의 매매에 대한 환율은 44.44루피/달러
- 2012년 6월 1일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환율은 45루피/달러
- 2012/13 사업연도에 NRI는 인도 국립은행에 외환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5만루피
- 기타소득: 21만루피의 거주용 부동산(house property) 소득

이때 장기 양도소득은 주식 보유기간이 17개월이므로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구분	금액(루피)	금액(달러)
매도가액	160,000(10,000×16)	3,600(160,000/44.44)
차감: 취득금액	100,000(10,000×10)	2,500(100,000/40)
장기 양도소득		1,100

따라서 NRI의 당기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루피)
1. 장기 양도소득($1,100 \times 45$)	49,500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세금($49,500 \times 10\%$)	4,950
2. 투자소득-이자소득	50,000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50,000 \times 20\%$)	10,000
3. 기타소득-house property 소득	210,000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일반세율 적용)	1,000
4. 세액 합계($4,950+10,000+1,000$)	15,950

다. 절차 규정

1) 신고 간소화

NRI는 총소득이 투자소득, 장기 양도소득 또는 투자소득과 장기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 NRI 지위의 선택권

NRI는 각 사업연도별로 NRI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NRI는 해당 연도의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NRI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NRI가 거주자가 되더라도 투자소득에 대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특정한 경우, NRI가 거주자가 되더라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NRI는 인도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받

을 권리가 있으며 NRI는 처음으로 거주자 지위를 갖게 된 때의 소득신고 시 NRI 유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된 NRI가 신고한 경우, 대상 자산이 이전되거나 금전으로 환가되는 시점까지 해당 자산에 대하여 NRI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CIT v Borhat Tea Co. Ltd (1993) 203 ITR 987 (Cal)]에서는 NRI가 만기 3년의 외화 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다시 1년 후 외화 예금 만기 도래 시, 예금을 자동 갱신한 경우 NRI로서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예금 만기 시 환가 가능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갱신된 예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중개인은 NRI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NRI 귀속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자가 된다.

라. 비거주자 체육인, 연예인 및 체육협회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 체육인, 연예인 및 체육협회 등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성격 및 과세 판단을 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인도와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비거주자 체육인, 연예인에게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1) 과세 혜택

호혜주의 및 합리성 원칙에 따라 세법 규정상 비거주자 체육인 및 체육협회의 특정 총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혜택을 적용한다. 즉, 국외의 스포츠 협회/단체/기관 및 개인운동선수(인도 시민권자 아님)에게 인도에서 수행한 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 세율은 비거주자 체육인이 인도 내에서 운동 경기에 참가 또는 광고, 신문 및 잡지 기고 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2년 4월 1일부터 이러한 혜택이 비거주자 연예인(인도 시민권자 아님)에게까지 확대되어, 인도 내에서 수행한 공연 수익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해당 세율 적용 시 어떠한 지출이나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2) 지급자의 원천징수

상기의 경우에서 비거주자 체육인, 예능인 및 협회에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 194E조 규정¹⁵⁵⁾에 따라 세무상 원천징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신고 간소화

비거주자는 총소득이 법 제115BBA조(체육인, 체육협회 등)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4) 혜택의 제한

이러한 혜택은 복권 또는 퍼즐의 상금, 경마, 카드게임, 도박 수익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인, 연예인에 대한 보다 유리한 조세조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지급시점 또는 비용 계상시점 중 빠른 때 10%를 적용한다.

12. 특수한 납세대상자(Person)의 납세 의무

가. 납세대리인(Representative Assessee)의 납세의무

납세대리인이란 다른 사람(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납세대리인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 자신의 명의로 과세되며 마치 자기가 직접 소득을 번 것처럼 과세된다.

납세대리인은 오직 납세대리인으로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납세대리인 과세는 마치 도관과 같이 작용하여 납세대리인과 본인의 소득은 항상 동일한 소득유형이 된다.

납세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방법과 범위를 가지고 과세되며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는다. 만일 본인이 특정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납세대리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장기 양도소득이라면 납세대리인에게도 장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납세대리인에게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1) 납세대리인의 지정¹⁵⁶⁾

〈표 2-I-19〉의 내용을 보면 납세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없거나, 소득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소득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거주자 소득과 관련해서 법 제9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은 소득이 인도 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만일 소득이 인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 제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56) 소득세법 제160(1)조

〈표 2-1-19〉 납세대리인

소득구분	납세대리인
특정한 비거주자 소득	법 제163조에 의한 대리인을 포함하는 비거주자의 대리인
미성년자(minor), 정신병자, 백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소득을 수령하는 보호자 및 관리인
누군가를 위해서 다음의 자가 대신 수령하는 소득: 법정 후견인(court of ward) 일반 관리인(administer general) 공식 수탁자(official trustee) 법원명령에 의해 지정된 수령인 및 관리인	법정 후견인(court of ward) 일반 관리인(administer general) 공식 수탁자(official trustee) 법원명령에 의해 지정된 수령인 및 관리인
서면으로 정당하게 실행된 계약에 의해 지정된 수탁인이 수령한 소득	수탁자
구두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인이 수령한 소득	수탁자

2) 납세대리인의 복수대리

한 납세대리인이 동시에 여러 명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유사하게 한 명의 본인이 여러 납세대리인을 둘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대리인이 별도로 신고한다.

납세대리인은 본인의 다른 소득을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 과세당국이 혹시 본인의 다른 소득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3) 최고한계세율(Maximum Marginal Rate)

MMR이란 개인 혹은 조합에 과세되는 최고세율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표 2-1-20〉 최고한계세율

소득구간	세율
20만루피까지	0
20만 초과 50만루피까지	10%
50만 초과 100만루피까지	20%
100만루피 초과	30%

주: 이때 노인에게는 25만루피, 고령 노인에게는 50만루피를 적용한다.

최고세율은 3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추가된다.¹⁵⁷⁾

4) 납세대리인의 특성

대학, 교육기관, 병원을 위하여 익명의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총액의 5% 혹은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의 30%와 익명기부금으로 감소한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순수하게 종교나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방법과 범위로 과세되지만 서면계약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는 소득 전부를 최고세율로 과세한다. 수혜자의 지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세율로 과세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위탁계약은 구두 위탁으로 보아서 최고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 과세당국에 수탁자, 수혜자 그리고 수탁재산이 명기된 서류에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으로 본다.

납세대리인은 대리인으로서 납부한 세금을 본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대리인 혹은 본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둘 모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157) 개인, HUF, AOP, BOI에는 부가금(surcharge)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비거주자의 대리인

법 제163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대리인은 비거주자가 지정하거나 과세당국이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 ① 비거주자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
- ② 비거주자와 사업상 관계(business connection)가 있는 사람
- ③ 비거주자로부터 혹은 비거주자를 통해서 소득을 받은 사람
- ④ 비거주자의 수탁자
- ⑤ 인도 내에서 자본자산을 취득한 사람

위 규정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열거된 자들도 자동적으로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대리인으로 제안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된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인도 내의 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되지 않는다.

- ① 중개인이 직접 비거주자와 거래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해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 ② 중개인이 비거주자인 중개인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인도 중개인에 의해서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과정(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으로 수행된 경우
- ④ 비거주자 중개인이 거래의 본인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과정으로 행동하는 경우

비거주자 대리인은 여러 의무가 있으므로 대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대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리인이 지정된 사람은 왜 자기가 대리할 수 없는지를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과세당국에서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면 지정받은 사람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 비거주자가 다양한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해 인도 내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법 제149조에서는 수정신고 통지서는 관련된 납세기간 말로부터 4년에서 6년까지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대리인에게는 2년 내 통지되어야 한다.

나. 조합(Association of Persons)에 대한 과세

조합은 영리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법에서 조합에 대한 정의는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조합은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적 혹은 공동행동을 위한 사람들의 결합을 말하며 과세와 관련하여 조합은 소득이나 이익을 산출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법원 판단에 기초하여 조합 개념을 설명하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 혹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여하여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 결성에 있어서 구성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1) 조합의 거주자 지위와 조합의 관리자(principal officer)

조합은 조합의 통제나 관리가 전적으로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본다. 또한 통제나 관리가 부분적으로 인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도 거주자로 본다.

관리자의 존재는 조합의 거주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조합 관리자는 비서, 자금 담당자, 관리자 혹은 조합의 대리인 및 조합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과세당국에서 조합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2) 재산의 공동소유와 조합

재산의 공동소유와 조합은 다른 개념으로 2명 이상이 건물이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간의 지분이 명확하다면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3) 조합에 대한 과세

조합은 독립된 실체로 과세되며 (1)최고세율 미만 (2) 최고세율 (3) 최고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수 있다.

① 구성원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만일 구성원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한다. 만일 조합의 일부 구성원이 최고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서 그 세율로 과세한다. <표 2-I-21>은 교육세와 고등교육세(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SHEC)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지분 불명 시의 세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I-21> 구성원의 지분 불명 시 세율

조합구성원	적용 세율	비고
개인 혹은 인도회사	MMR-32.45%	회사에 대한 세율은 32.45%로서 최고세율 30.9%보다 높기 때문에 조합의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 적용
개인, 인도회사 및 하나의 외국회사	42.02%	외국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42.02%이므로 가장 높은 세율 적용

② 구성원 지분이 명확한 경우

<표 2-I-22>는 교육세와 SHEC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지분이 명확한 경우의 세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I-22> 구성원의 지분 명확 시 세율

조합구성원	추가정보	적용 세율
개인	다른 소득이 없음	MMR이 아닌 일반세율
개인	한 명의 소득이 20만루피를 초과	MMR-30.9%
개인, 인도회사 및 하나의 외국회사	외국회사는 25%, 다른 구성원은 75%	외국회사 지분에 대해서 42.02%, 인도회사에 대해서는 32.45%, 개인에 대해서는 30.9%

4) 감소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장기 양도소득과 같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도 조합에는 MMR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 법원에서는 법 제112조가 제167B조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조합도 개인처럼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구성원 지분을 정하기 위한 일자와 기간

법 제167B조에서는 설립 당시에 구성원들 간의 지분을 정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6)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공제

법 제40조에 의하면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급여, 상여, 수수료 등의 보상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이 조합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자를 받고 있다면 구성원이 조합에게 지불하는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지 않는다. 단,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7) 구성원 지분의 계산

구성원의 지분은 다음 예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사례 2-1-19〉 조합의 소득 계산

조합이 사업소득 300만루피, 배당소득 270만루피 그리고 양도소득 150만루피가 있고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루피)

구성원	지분	조합이 구성원에게 지급한 금액		
		급여	이자	수수료
A	30%	200,000	-	-
B	30%	-	-	400,000
C	40%	-	300,000	-

이때 각 구성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루피)

내역	조합	A	B	C
조합소득	7,200,000			
조합원 보상	(900,000)			
잔액	6,300,000			
분배		1,890,000	1,890,000	2,520,000
조합원 보상		200,000	400,000	300,000
구성원 지분		2,090,000	2,290,000	2,820,000

8)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소득 유형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유형은 조합을 그대로 승계한다. 앞서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2-1-20〉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소득

(단위: 루피)

내역	조합	A	B	C
사업소득	3,000,000(42%)	870,833	954,167	1,175,000
배당소득	2,700,000(38%)	783,750	858,750	1,057,500
양도소득	1,500,000(20%)	435,416	477,083	587,500
합계	7,200,000	2,090,000	2,290,000	2,820,000

9) 조합원이 지급하는 이자의 공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한다. 만일 앞선 예에서 모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10,000루피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들의 사업소득은 각각 A 860,833, B 944,167, C 1,165,000루피가 된다. 여기에서 지급의 의미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조합이 따르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인식된 금액을 말한다.

10)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익에 대한 과세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합이 과세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면제조항이 조합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11) 세율 적용 목적에서의 조합소득의 산입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소득에 대해서 MMR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하여 세율

을 적용한 다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외한다.

〈사례 2-1 -21〉 조합소득의 산입 방법

A는 조합으로부터 75,000루피, 급여 120,000루피, 임대수익 60,000루피가 있는데 조합은 MMR로 과세되지 않았다.

(단위: 루피)

A의 총소득	$120,000+60,000+75,000=255,000$
세금	5,665(교육세 3%포함)
평균 세율	$5,665/255,000=2.22\%$
평균 세율을 적용한 조합소득에 대한 세금	$75,000*2.22\%=1,666$
산출세액	5,665
법 제110조에 따른 조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1,666)
A의 납부세액	3,999

12) 구체적 행사나 목적에서 설립된 조합

과세당국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특수한 행사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조합이 과세연도에 청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13) 청산에 대한 조합원 의무

조합이 청산되면 조합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14) 조합원 과세 시에 조합손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

조합원이 조합의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신 그 손실은 이월되어 차기 이후의 조합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다. 파트너십 과세(LLP 포함)

파트너십법(Partnership Act) 제4조는 파트너십이란 개인들이 모여서 이익을 모두 나누고 그들 중 어느 누가 전부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LLP가 포함된다.

2009년 9월 1일부터 LLP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이 발효되었다. LLP는 유사파트너십(firm)과 파트너십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LLP에 대한 과세는 2009년 재정법(Finance Act, 2009)에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면 LLP와 일반 파트너십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고 30% 세율(교육세 및 이차 교육세 별도)로 과세된다.

1) 유사파트너십(Firm)으로서 납세의 조건

법 제184에 따르면 유사파트너십(firm)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파트너십 규약이 있어야 하고 규약에서 파트너의 지분이 정해져야 한다. 파트너십 규약의 사본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파트너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한 번 제출된 규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만일 파트너 지분이 변동한다면 하는 실체의 변동이 있게 되면 관련 기간에 대한 과세신고기간에 다시 규약을 제출해야 한다.

2) 파트너에 대한 특정한 지출에 대한 공제의 제한

① 법 제40(b)조에 의한 불공제

유사파트너십(firm)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급여, 상여, 수수료와 같은 어떤 보상도 파트너십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적극적 파트너(working partner)에 대한 보상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상은 파트너십 규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규약에서는 보상의 형태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동 조항에 의하면 파트너십 규약에 따른 파트너에 대한 이자지급은 공제하지만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 파트너십 규약에 따른 보상은 비록 규약에서 그렇게 할 것을 정하고 있다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즉, 규약이 제정된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② 파트너를 통한 파트너가 아닌 자에 대한 이자 지급

만일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에 대한 이자지급은 공제된다.

③ 파트너 보상에 대한 제한

〈표 2-1-23〉 파트너 보상에 대한 제한

이익 규모	공제가 허용되는 보상의 한도
손실이거나 30만루피 이하	15만루피와 이익의 90% 중 큰 금액
장부상 이익	60%

장부상 이익이란 Chapter IV-D(법 제28조부터 44DA조)에 의해 계산된 것을 말하며 파트너에 대한 보상전 금액이다.

④ 법 제184조에 의한 불공제

법 제144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 등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최선의 판단을 통한 과세(best judgment assessment)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유사파트너십(firm)이 지급한 파트너에 대한 각종 보상은 모두 부인된다.

⑤ 법 제185조에 의한 불공제

법 제184조에 따르지 않으면 파트너에 대한 보상은 부인된다.

3) 손실의 이월 및 상계

유사파트너십(firm)은 개인과 분리된 것이므로 유사파트너십(firm)의 손실은 이월

되어 공제되며 파트너는 유사파트너십(firm)의 손실을 승계받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파트너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은퇴하거나 사망한 파트너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은 이월될 수 없다.

4) LLP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Finance Act 2011에서는 LLP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e Minimum Tax: AMT)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사파트너십(firm)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를 수정한 규정이다. LLP에 대해서는 수정된 총소득의 18.5%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최저한세로 적용한다.

최저한세율은 LLP와 유사파트너십(firm)이 동일하지만 계산방법은 다르다. 우선 수정된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총소득} + \text{chapter VI-A에 따른 공제} + \text{10AA에 따른 공제} = \text{수정 총소득}$$

〈사례 2-1-22〉 수정 총소득의 최저한세 계산

수정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	최저한세
LLP 총소득	150	150
차감: 양도소득/배당면제소득	(50)	(50)
차감: 공제	(70)	(70)
총과세소득	30	30
통상세금 30.9%	9.27	9.27
수정소득		100
AMT 19.06%		19.06
최종납부세액	9.27	19.06
이월공제		9.79

5) 파트너에 대한 과세

① 이익에 대한 지분

파트너십은 별개 실체이므로 파트너십 이익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파트너 지분 = 유사파트너십(firm) 총소득 × 파트너십 규약에 따른 이익에 대한 분배비율

② 유사파트너십(firm)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급여, 상여 등과 같은 보상

유사파트너십(firm)이 파트너에 대한 보상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보상은 파트너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③ 파트너의 무한책임

파트너는 유사파트너십(firm)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6) 유사파트너십(firm)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유사파트너십(firm)이 납세대상자(person)이고 DTAA에 서명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DTAA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납세대상자로서의 유사파트너십(firm)

OECD, UN모델에서는 인격체라는 것을 개인, 유사파트너십(firm), 기타 인적 조직으로 정의한다. 인도에서는 DTAA 협정에서 별도로 인격체를 정의하고 있다.

② 거주자 조건

거주자 조건은 해당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인도의 파트너십은 인도에서 과세되므로 인도와의 DTAA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취급 간의 불일치

일부 국가에서는 파트너십을 단순한 도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고 이 때문에 이들 조직을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충돌이 있게 된다.

인도법원은 독일의 파트너십이 비록 독일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에서 DTAA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2013/14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1) 개인들/HUF/인적 조합(AOP/BOI)에 적용되는 세율

① 개인(이전연도에 60세 미만), NRI/HUF/AOP/BOI/AJP

<표 2-1-24> 개인(이전연도에 60세 미만), NRI/HUF/AOP/BOI/AJP

번호	과세 소득 범위	세율	납부해야 할 세금
1	최대 20만루피까지	0	0
2	20만루피 초과~50만루피 미만	10%	20만루피 초과 소득의 10%
3	50만루피 초과~100만루피 미만	20%	3만루피+ 50만루피 초과 소득의 20%
4	100만루피 이상	30%	13만루피+ 100만루피 초과 소득의 30%

② 노인 거주자(직전 연도에 6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

〈표 2-1-25〉 노인 거주자의 세율

번호	과세 소득 범위	세율	납부해야 할 세금
1	25만루피 이하	0	0
2	25만루피 초과~50만루피 미만	10%	25만루피 초과 소득의 10%
3	50만루피 초과~100만루피 미만	20%	2만 5천루피+ 50만루피 초과 소득의 20%
4	100만루피 이상	30%	12만 5천루피+ 100만루피 초과 소득의 30%

③ 최고령 노인 거주자(직전연도에 80세 이상 연령)

〈표 2-1-26〉 고령 노인 거주자의 세율

번호	과세 소득 범위	세율	납부해야 할 세금
1	50만루피 이하	0	0
2	50만루피 초과~100만루피 미만	20%	50만루피 초과 소득의 20%
3	100만루피 이상	30%	10만루피+ 100만루피 초과 소득의 30%

상기 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은 교육세(총납부세액의 2%) 및 SHEC(총납부세액의 1%)으로 인해 증가된다.

2) 기타 납세자에 대한 세율

<표 2-1-27> 기타 납세자에 대한 세율

(단위: %)

번호	납세자	기본세율	부가세	교육세	중등 및 고등교육세	유효세율
1	Firm	30	0	2	1	30.90
2	국내기업					
	a. 보통세 조항	30	5, 10	2	1	32.445
	b. MAT 조항	18.5	5, 10	2	1	20
3	해외기업					
	a. 보통세 조항	40	2, 5	2	1	42.02
	b. MAT 조항	18.5	2, 5	2	1	19.44
4	협동조합					
	1만루피 이하-10%	과세소득에 따라	0	2	1	
	1만루피 초과 2만루피 미만-20%					
Rs.20만루피 이상-30%						

주: 부가세의 경우 1천만루피 초과시 내국법인은 5%, 외국법인은 2%, 1억루피 초과시 내국법인은 10%, 외국법인은 5%가 부가됨

14. 소득세 행정

가. 소득의 신고

1) 소득의 신고¹⁵⁸⁾

기업이나 유사파트너십(firm) 외의 모든 납세대상자는 회계연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을 초과할 경우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이나 유사파트너십

158) 소득세법 제139(1)조

(firm)은 회계연도의 총소득(총손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이를 ‘과세연도(Assessment Year)’라 부른다.

〈표 2-1-28〉 신고기한

서식	납세의무자	기한
ITR-1	급여/연금/가족 연금과 이자로부터 소득이 있는 개인	7월 31일
ITR-2	사업이나 인적용역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개인이나 HUF	7월 31일
ITR-3	모든 proprietorship의 사업과 인적 용역으로부터가 아닌 기업의 파트너인 개인과 HUF	
	a)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firm의 경우	7월 31일
	b) 감사가 필요한 firm의 경우	9월 30일
ITR-4	사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는 개인과 HUF	
	a)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firm의 경우	7월 31일
	b) 감사가 필요한 firm의 경우	9월 30일
ITR-5	Firm, AOP, BOI의 경우	
	a)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firm의 경우	7월 31일
	b) 감사가 필요한 firm의 경우	9월 30일
ITR-6	기업	9월 30일
ITR-7	139(4A~4D)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을 포함한 인	9월 30일
ITR-8	fringe benefit의 소득신고	
	a)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firm의 경우	7월 31일
	b) 감사가 필요한 firm의 경우	9월 30일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과세관청의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본조에 따라 신고기한 이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늦은 경우 정확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때까지 부족분이나 오류분에 대해 매월 1%의 이자를 부담한다.

과세연도 이내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0루피의 벌금이 추가된다.

2) 납세대상자별 고유번호(PAN, permanent account number)¹⁵⁹⁾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인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면 각 소득자(person)에게 고유번호가 할당되고 이를 Permanent Account Number(이하 'PAN')이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 PAN의 적용은 의무적이다.

- ① 과세대상 소득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모든 납세대상자
- ② 총매출액, 총수입금액이 과세대상연도(previous year)에 50만루피를 초과한 사업 또는 인적용역을 운영한 모든 납세대상자
- ③ 법 제139(4A)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선이나 종교 신탁
- ④ fringe benefit을 신고하여야 하는 모든 사업자
- ⑤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된 기타 납세대상자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과세관청에 PAN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PAN의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5월 31일, ②와 ③의 경우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잘못된 PAN을 적용하거나 법 제139A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0루피의 벌금을 납부한다.¹⁶⁰⁾

3) 결손의 신고¹⁶¹⁾

결손금을 이월시키기 위해 사업이나 인적용역으로부터의 소득과 자본소득의 손실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나 감가상각 부인액(unabsorbed deprecia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9) 소득세법 제139A조

160) 소득세법 제272B조

161) 소득세법 제139(3)조

4) 기한 후 신고¹⁶²⁾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다. 관련된 과세연도의 말부터 1년 이내나 과세가 완료되기 전 신고할 수 있다.

5) 수정신고¹⁶³⁾

법 제139(1)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오류를 발견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된 과세연도의 말부터 1년 이내나 과세가 완료되기 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6) 조사 후 신고¹⁶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7) 신고서의 서명¹⁶⁵⁾

각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62) 소득세법 제139(4)조

163) 소득세법 제139(5)조

164) 소득세법 제139(9)조

165) 소득세법 제140조

〈표 2-1-29〉 납세자별 서명 의무

납세자	신고에 서명해야 하는 자
개인	본인
HUF	The Karta
기업	Managing director
Firm	Managing partner
LLP	지명된 partner
Local authority	Principal officer
political party	이 정당의 CEO
기타 association	협회의 Principal officer나 모든 구성원 아무라도 가능
기타 person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

8) 자기부과(자기확정)(self-assessment)¹⁶⁶⁾

선급세액이나 세액 공제 후에도 세금 납부액이 있는 납세자는 추가납부세액과 소득세법 제234A, 234B, 234C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부과액의 진행

1) 부과 전 질의¹⁶⁷⁾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조사하거나 이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시 납세자에게 법 제142(1)조에 따라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과세연도 말까지 신고내역이 없을 경우 법정 서식의 제출

166) 소득세법 제140A조

167) 소득세법 제142조

- ②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회계자료와 장부의 준비
- ③ 필요한 정보의 제출

그러나 Joint Commissioner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장부상에 없는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과세대상 연도 이전 3년이 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2) 특별 조사¹⁶⁸⁾

과세관청은 Chief Commissioner나 Commissioner에 의해 지명된 회계사에게 감사받은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감사비용은 중앙정부가 지급한다.

이러한 통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144조에 따라 최적의 금액으로 과세하고 (best judgment assessment) 각 건당 1만루피의 벌과금을 납부하며 벌금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질의 없이 부과 가능¹⁶⁹⁾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부과절차 없이 부과를 완결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자료에 따라 완결하지만 신고의 수리적인 오류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 제143(1)조에 따른 통지는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고지되고 신고기한의 1년까지 이러한 고지를 할 수 있다.

4) 정기 부과¹⁷⁰⁾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과세당국(Assessing Officer)은 과소신고되지 않았다

168) 소득세법 제142(2A)조~142(2D)조

169) 소득세법 제143(1)조

170) 소득세법 제143(2)조, 제143(3)조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43(2)조에 따라 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43(2)조에 따른 공지는 소득신고가 제출되는 회계연도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통지는 법 제282A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관청장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는 서류로 보며 이 통지는 CBDT에서 인정된 송달방법, 법정의 전자 송달방법을 이용한다.

증거가 제출된 이후 과세당국은 조사에 근거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납세자의 총소득 또는 총손실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과는 다음 기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 ①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담당관(Transfer Pricing Officer, TPO)에게 사건을 의뢰한 경우 대상 사업연도 말부터 33개월 이내
- ② ①외의 경우에는 21개월 이내

과세관청의 유효한 사전통지는 필수조건인데 만약 납세자가 유효하지 않은 통지에 따라 과세관청에 협조했을 경우는 유효한 통지로 본다.

5) 대체 해결 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R)¹⁷¹⁾

ADR은 빠르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ADR은 TP 문제와 관련된 납세자와 외국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총수익금액에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결과의 초안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의 변동 내역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Distribute Resolution Panel(DRP)나 과세관청에 통지한다. 30일 내에 납세자의 대응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30일이 지나면 자동 인정되거나 거절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통지한다.

171) 소득세법 제144C조

6) 최적 추정과세(best judgment assessment)¹⁷²⁾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42(1)조나 제143(2)조의 통지를 따르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최대한 적절하게 소득과 세액을 결정한다.

7) 부과/재부과를 회피한 소득¹⁷³⁾

신고하지 않거나 공제를 크게 한 경우 과세소득이 낮게 신고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세당국은 해당 과세연도의 손실이나 공제금액 또는 소득을 재계산할 권한이 있다. 과세당국이 과세소득이 과세에서 회피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회피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혹은 각종 충당금 등 손실을 재계산하기 위해 법 제148조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본다.

- ① 면세점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②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납부를 하였지만 과소신고한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경우, 과다 감면을 받은 경우, 손실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부과나 재부과 전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관련된 소득신고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 제148조에 따른 통지는 소득이 포탈된 각 연도별로 통지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법 제139조나 제142(1)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된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통지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연도의 과세를 회피한 소득이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연도 말부터 6년
- ② 그 외의 경우 4년

172) 소득세법 제144조

173) 소득세법 제147~153조

법 제148조에 따른 통지는 법 제149(1)조에 규정된 법정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한 내에 통지되었으나 그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유효한 통지로 본다. 법 제147조의 단서조항은 관련된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4년의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 ① 부과나 재부과가 이미 수행된 경우
- ② 납세자가 소득의 신고를 위한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경우 통지 기한은 과세연도의 6년으로 하는 특례가 있다.¹⁷⁴⁾

법 제148조에 따른 통지는 다음 기관이나 관계자의 결정에 따른 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¹⁷⁵⁾

- ① 법 제250조에 따른 소득세(appeals)의 commissioner
- ② 법 제263조와 제264조에 따른 소득세의 commissioner
- ③ 법 제254조에 따른 소득세 Appellate Tribunal
- ④ 법 제260조에 따른 고등법원
- ⑤ 법 제262조에 따른 대법원
- ⑥ 다른 법률에 따른 법원

법 제148조에 따른 통지에 대한 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4) 소득세법 제149(3)조

175) 소득세법 제150조

〈표 2-I-30〉 통지의 기한

	과세연도 말부터 4년까지	과세연도 말부터 6년까지
법 제143조나 법 제147조에 근거한 부과의 경우	Assistant commissioner/Deputy Commissioner나 Joint Commissioner 이상의 AO(Assessment Officer)에 의한 통지가 4년이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ssistant commissioner/Deputy Commissioner나 Commissioner 또는 Chief Commissioner 이상의 AO에 의한 통지가 4년이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AO에 의한 통지	Joint Commissioner의 경우 AO의 통지

법 제147조에 따른 부과의 법정 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Transfer Pricing Officer에게 사건을 의뢰한 경우 대상 사업연도 말부터 21개월 이내
- ② ① 외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

8) 오류 수정¹⁷⁶⁾

과세관청은 스스로 혹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오류의 수정은 원명령이 있는 후 4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그 오류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승인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9) 기한의 연장¹⁷⁷⁾

원칙적으로 각 통지가 있는 이후 30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21조에 따른 가산세와 매월 1%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76) 소득세법 제154조, 제254조

177) 소득세법 제220(6)조

다. 세금납부 및 징수

인도에는 신고납세 제도(self-assessment regime of tax payment)가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산정하여 인도 조세당국에 이를 납부하도록 한다. 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① 원천징수세(인도에서는, 원천과세(TDS: Tax Deducted at Source)라고도 함)
- ② 선급세금(Advance tax)
- ③ 신고납세(Self-assessment tax)

1) 원천징수세 또는 원천과세의 범위

소득은 일정 기간에 걸쳐 벌게 되고, 이러한 소득을 평가하여 세액을 판단하는 것은 그 이후에 수행된다. 현금흐름 불일치를 방지하고 정부 세수의 일정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징수방법 중 하나가 원천징수세이다.

법 제190조는 소득의 정기적 부과는 그 직후 연도에 수행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는 법 제XVII장의 조항들에 따라 원천과세(deduction at source) 또는 선급과세(advance tax)의 형식으로 해당 소득의 발생 연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특정 소득이 입금되거나 지급될 때 원천징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일 수 있지만, 원천징수 조항들은 인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소득세 납부자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납세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책임은 해당 납세자에게 있다. 원천징수세는 각각의 조항들(예: 법 제194C조, 제194-I조, 제194J조 등)에 명시된 세율 또는 매년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정해지는 유효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납부자가 이렇게 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수혜자(소득 수령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령자는 법 조항들에 따라 산정된 총소득에 기초하여 세액을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초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조세당국에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 납세자가 조세를 원천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세(WHT)가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

조세 납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 제XVII장에 명시되어 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대표적 예와 해당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① 급여 지급(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해당): 제192조
- ② 유가증권이자: 제193조
- ③ 배당금 지급: 제194조
- ④ 유가증권 이자를 제외한 이자: 제194A조
- ⑤ 인프라 채권 펀드(IDF)에 대한 이자: 제194LB조
- ⑥ 복권이나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 수령금: 제194B조
- ⑦ 도급업자(하도급업자 포함)에 지급하는 금액: 제194C조
- ⑧ 수수료 또는 중개료: 제194H조
- ⑨ 임대료: 제194-I조
- ⑩ 전문적 또는 기술 서비스 수수료: 제194J조
- ⑪ 비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타 (과세대상) 총액: 제195조

법에 따라 원천과세되어야 하는 지급 카테고리가 이 외에도 더 있다(예: 경매 상금, 보험 수수료 등). 이하에서는 각 소득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적용 여부와 원천징수 제외한도 및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 논의한다.

① 급여 지급¹⁷⁸⁾

〈표 2-1-31〉 급여의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급여 명목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납세대상자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해당
원천징수 적용여부	급여 항목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모든 납세대상자(person)에게 지급하는 경우 본 조항들이 적용 원천과세 공제를 목적으로 급여외수입(perquisites)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휴 firm이 파트너에 지급한 보수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음
원천징수 제외한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따름
원천징수율	해당 지급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대해 수령자에게 유효한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소득세율

② 유가증권 이자의 지급¹⁷⁹⁾

〈표 2-1-32〉 유가증권 이자의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이자 명목으로 소득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모든 인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인은 거주자이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조세는 법 제195조에 따라 공제
원천징수 적용 여부	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모든 증권과 사채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 제외한도	거주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상장 사채에 대한 이자에 연도별 5,000루피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178) 소득세법 제192조

179) 소득세법 제193조

③ 배당금 지급¹⁸⁰⁾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가 적용되는 배당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이러한 배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과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 법 제2(22)(e)조에 따라 배당금으로 간주되는 관련 회사(associated concerns) 대출은 원천징수 조항들이 적용된다.

〈표 2-1-33〉 배당금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인도 회사나 인도 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포함한 배당금의 신고 및 지급을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회사의 주사무소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자는 거주자이어야 함 비거주 수령자의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될 필요가 있음
원천징수 적용여부	금액이 법 제2(22)(e)조에 따른 배당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원천징수 제외한도	2,500루피: 계좌수령자 수표(Account Payee Cheque)로 개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에만 적용됨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180) 소득세법 제194조

④ 유가증권 이자 이외의 이자 지급¹⁸¹⁾

〈표 2-1-34〉 유가증권 이자 이외의 이자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이나 HUF가 아닌 자로서 유가증권 이자를 통한 소득이 아닌 이자로 소득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모든 납세대상자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자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비거주 수령자의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조세가 공제될 필요가 있음
원천징수 적용 여부	유가증권 이자 이외의 이자로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한도	1949년 은행규제법이 적용되는 은행에 의해 또는 은행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의해 또는 중앙정부가 통지하는 제도에 따라 저축업을 하는 우체국에 의해 지급되는 예금이자에의 경우 10,000루피. 이 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5,000루피. 은행이나 다른 정해진 주체에 정기예금을 넣는 경우, 그 한도는 각 지점이 지불하는 소득을 참조하여 산정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⑤ 복권이나 십자말풀이 당첨금 지급¹⁸²⁾

〈표 2-1-35〉 복권이나 십자말풀이 당첨금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법에서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는 모든 납세대상자(person)
수령인거주상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가능
원천징수 적용 여부	복권, 십자말풀이, 카드게임 및 여하한 종류의 게임을 통해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적용
원천징수 제외한도	한도는 10,000루피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181) 소득세법 제194A조

182) 소득세법 제194B조

⑥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¹⁸³⁾

〈표 2-1-36〉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법에서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일부로서 작업을 수행한 데 따른 대금을 지불할 책임을 가진 모든 납세대상자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자는 거주자여야 한다. 비거주 수령자인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징수될 필요가 있음
원천징수 적용 여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또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의 공급에 대해 지급
원천징수 제외한도	계약당 30,000루피 한도 또는 한 회계연도 동안 모든 계약에 대해 75,000루피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⑦ 커미션/중개수수료 지급¹⁸⁴⁾

〈표 2-1-37〉 커미션/중개수수료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커미션이나 중개수수료로 소득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는 (개인이나 HUF를 제외한) 모든 납세대상자.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 총수령액 또는 매상고가 해당 커미션이나 중개수수료가 지급 또는 입금된 과세연도 바로 직전 재무 연도 동안 법 제44AB(a) 또는 (b)에 정해진 금전적 한도(각각 600만루피, 150만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HUF 또한 커미션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함
수령인거주상태	수령인은 거주자이어야 한다. 비거주 수령인인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공제
원천징수 적용 여부	유가증권에 대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나 커미션 이외의 커미션(보험 커미션 제외)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해 적용
원천징수 제외한도	커미션이나 중개수수료가 5,000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율	법정 세액공제율

183) 소득세법 제194C조

184) 소득세법 제194H조

⑧ 임대료 지급¹⁸⁵⁾

〈표 2-1-38〉 임대료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	임대료로 소득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는 개인이나 HUF를 제외한 모든 납세대상자.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 총 수령액 또는 매상고가 해당 커미션이나 중개수수료가 지급 또는 입금된 과세연도 바로 직전 재무연도 동안 법 제44AB(a) 또는 (b)에 정해진 금전적 한도(각각 600만루피, 150만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HUF 또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음.
수령인 거주상태	수령인은 거주자이어야 한다. 비거주 수령인인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됨.
적용 여부	재무연도에 수령자에 지불되는 임대료가 18만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 적용 한도	법정 세액공제율

주: CBDT는 2008년 4월 28일자 회람 제4/2008호에서 임대료는 서비스세 요소를 제외한 순임대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185) 소득세법 제194I조

⑨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지급¹⁸⁶⁾

〈표 2-1-39〉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	개인이나 HUF가 아닌 자로서, 전문적 서비스 수수료 또는 기술적 서비스 수수료 또는 로열티 또는 비경쟁수수료(non-compete fees) 속성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가지는 모든 납세대상자(person). 개인이나 HUF인 경우 이들의 사업 또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 총수령액 또는 총매상고가 해당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총액이 입금 또는 지급된 과세연도의 바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 제44AB에 명시된 금전적 한도(각각 600만루피, 150만루피)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음.
수령인 거주상태	수령인은 거주자이어야 한다. 비거주 수령인인 경우, 법 제195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됨
적용 여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여하한 금액 전문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로열티, 비경쟁 수수료 또는 지적재산권을 공유하지 않기 위한 수수료(법 제28(va)조에서 다루는 지불 금액)
원천징수 적용 한도	수령자에게 입금 또는 지급된 금액이 30,000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액공제율	법정 세액공제율

⑩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¹⁸⁷⁾

〈표 2-1-40〉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	비거주자에 급여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지불할 책임을 가진 모든 인
수령인 거주상태	수령자는 비거주자 또는 해외 기업이어야 함
적용 여부	다음은 비거주자나 해외 기업에 지불하는 경우 이자 또는 급여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여타 금액
세액공제율	법정 세액공제율

186) 소득세법 제194J조

187) 소득세법 제195조

원천징수세율은 법 또는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DTAA) 중에서 수령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진다. 이 세율은 일반적으로 조약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수혜자의 조세 거주 국가, 해당 지불 금액의 속성 및 인도에 수령자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은 입금이나 지급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공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세금이 원천과세되는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되지만, 원천징수 납기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비거주 수령자에게 입금하기 전에 예치되어야 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정부 공인 달러(일반적으로 고객을 위한 외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원들임)에게 해당 금액이 인도 밖으로 송금되기 전에 세금이 올바르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힘든 책무를 맡겼다. 이러한 세금은 원천징수세로 납부되거나, 어떤 이유로든(예: 해외 기관 투자자가 벌어들인 소득) 징수될 수 없다면 선급세금이나 자진신고세로 납부되어야 한다.

소득을 인도 밖으로 송금하려면, 원천징수세율이 표시되고 지불자가 세무당국에 원천과세 미달 또는 미납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이 담긴 공인회계사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CBDT는 해외기업 또는 비거주자에 지불할 때, 법 제288조에 대한 설명에 정의된 대로, 보증서는 양식 15CA호를, 회계사 인증서는 양식 15CB호를 지정했다. 대신, 비거주자에 지불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총액이 수혜자 편에 과세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는 법 제195(2)조에 따라 과세당국에 공제세액 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의 인도 원천징수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세액을 평가하도록 사전심사를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어떤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천과세율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DTAA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제시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⑪ 기타 지급에 대한 원천세(관련조문)

원천과세가 되어야 하는 다양한 기타 경비나 지출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경마상금(법 제194BB조)
- 보험수수료(법 제194D조)
- NSS(National Savings Scheme)에 따른 예금(법 제194EE조)
- 복권판매수수료(법 제194G조)
- 고정자산의 강제 취득에 대한 보상(법 제194LA조)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타 금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TDS 조항들도 있다.

- 비거주 스포츠 선수 또는 스포츠 협회에 대한 지급(법 제194E조)
-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법 제196B조)
- 인도회사의 외화 채권 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법 제196C조)
-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해외기관투자자의 소득(법 제196D조)

3) 원천징수세 또는 원천과세 준수 및 절차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의 주요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세금공제 및 징수번호(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TAN)¹⁸⁸⁾ 신청
- ② 법에 정해진 세율로 조세 공제¹⁸⁹⁾

188) TAN은 모든 세금 공제 대상자가 취득해야 하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10자리 번호이다. TAN을 할당받으려면 조세당국에 양식 제49B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자정부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NSDL(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 Limited)가 신청서 접수 및 TAN 발급을 담당하도록 지정했다. NSDL은 이에 따라 TIN(Tax Information Network) 시설본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정했다. TAN 할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0,000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모든 원천과세 대상자는 TDS를 지불하기 위한 모든 공식 문서, 수령자에게 발급되는 TDS 증명서, 수익을 위해 정해진 거래와 관련된 명세서, 신고서 및 여타 문서에 이렇게 할당된 TAN을 기재해야 한다.

189) 원천과세율은 공제세율이 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 도급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 임대료)를 제외하고 매년 재무법의 첫 번째 별표에 제시된다.

- ③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 국고(Government Treasury)에 TDS 입금
- ④ 원천징수 증명서 발급
- ⑤ 원천징수 준수 진술서 및 분기별 세금공제 내역서 제출
- ⑥ 피공제자는 공제자(deductor)에게 PAN을 제출하고 양자간에 교환되는 모든 우편, 청구서, 전표 및 여타 문서들에는 원천징수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조항들을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이 부과되며 때때로 기소 및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고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비는 지불자의 총소득 계산 시 손비 부인된다. 이러한 금액의 공제는 원천징수세가 납부되는 해로 연기된다.

피공제자가 제출한 PAN이 무효인 경우 해당 PAN이 공제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세금이 더 높은 세율로 공제된다.

4) 조세납부 중간예납(Advance tax) 및 자진신고납세(Self-assessment taxes)

① 중간예납

모든 납부 유형이 앞의 원천징수 조항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거래활동(제품 구입 및 판매)이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는 만큼 납부’라는 기준에 따라 세금이 납부되도록 하기 위해 중간예납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동안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10,000루피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동안 납부하는 방법이다.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TDS 지불 금액을 차감한 후)은 추정된 총소득에 기초하여 선납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중간예납금액은 총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중간예납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되도록 한다.

〈표 2-1-41〉 세금의 분납

할부납기일	비법인납세자의경우	법인납세자의경우
6월 15일까지	해당 없음	총세액의 15%
9월 15일까지	총세액의 30%	총세액의 45%
12월 15일까지	총세액의 60%	총세액의 75%
3월 15일까지	총세액의 100%	총세액의 100%

해당 과세연도의 3월 15일 이후에서 3월 31일 이전까지 지불되는 금액 또한 중간예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간예납을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자진신고납세

중간예납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세액의 부족 또는 여타 사유로 인해 납세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납세’를 통해 납부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을 통해 납세 의무(TDS 순금액)의 최소 9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는 매달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말 이후 4월 1일부터 과세 또는 납부일자까지 해당 달의 일부에 납부해야 할 총세액과 비교할 때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 매달 1%의 세율로 부과된다.¹⁹⁰⁾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는 소득신고서가 제출되는 달까지 이 이자를 계산한다.

190) 소득세법 제234B조

〈사례 2-1-23〉 납부 세액의 계산

X Ltd는 2013년 9월 30일에 2013/14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 의무와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 납부에 관한 여타 세부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납세 의무: 1,900만루피, TDS: 250만루피, 납부된 중간예납: 1,100만루피
납부세액 잔액: [(1,900만 - 250만(TDS)) - 1,100만(중간예납)]: 550만루피
중간예납 납부 부족액: 550만루피

이때 법 제234B조에 따라 이자가 납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총세액의 90%(TDS 차감한 이후)가 중간예납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1,650만루피의 90% [1,900만(총납부세액) - 250만(TDS)]는 1,485만루피인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X Ltd는 중간예납으로 1,100만루피만 납부하였으므로, 법 제234B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계산

$$\begin{aligned} \text{이자} &= \text{부족액} \times \text{매월 } 1\% \times \text{불이행 기간} \\ &= 550\text{만루피} \times 2013\text{년 } 4\text{월 } 1\text{일부터 매월 } 1\% \times 6\text{개월}(2013\text{년 } 9\text{월까지}) \\ &= 33\text{만루피} \end{aligned}$$

(세금 및 이자 채무는 소득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인 2013년 9월에 자진납세의 형식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기 예에서 X Ltd가 중간예납으로 1,500만루피를 납부했다면, 150만루피까지 중간예납의 지급에 부족액이 있더라도 법 제234B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납부된 총중간예납금액이 납부세액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5) 원천징수세 명세서의 처리

TDS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법 제XVII-B장에 따라 공제 가능한 총액은 명세서의 산술적 오류 또는 명세서

에 기재된 정보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올바르지 못한 청구조정을 거친 후 계산한다.

- ② 이자는 명세서에서 ① 단계에 따라 계산되는 공제 가능한 총액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 ③ 공제자가 납부해야 할, 또는 환급되는 금액은 법 제200조 및 제201조에 따라 납부되는 금액 및 세금이나 이자로 납부되는 금액에 대해 앞서 계산된 총액을 조정 후 결정된다.
- ④ 공제자에 납부 또는 환급해야 할 금액이 명시된 통지를 공제자에 발송한다.
- ⑤ 명세서가 제출된 과세연도 말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통지를 보내지 않는다.
- ⑥ CBDT는 공제자가 납부하거나 공제자로 인해 환급되는 세금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 TDS 명세서의 증양 처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6) 세액의 결정(Tax demand)¹⁹¹⁾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과 같이 조세 납부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은 납세자가 자진신고납세를 하도록 규정했다. 자진신고납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 제출일이나 그 이전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신고서 제출 후(해당 이자를 지불하고) 납부된다.

그러나 조세당국은 납세자가 신고납세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소득금액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당국은 납부해야 할 추가적인 조세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정해진 양식으로 요구 통지서를 발행함으로써 30일 이내 또는 이러한 추가적인 세금의 납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0일보다 더 짧은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30일 또는 그 미만의 기간은 납세자에 요구 통지서를 보낸 일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된 세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채무불이행 납세자로 간주

191) 소득세법 제222~228A조

되며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납세자는 또한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한 달에 또는 한 달의 일부 동안 1% 단리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법은 조세당국에 세금 납부를 적절한 할부 계획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 요구된 조세가 납세자가 신청한 신청서에서 납부되어야 하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조세당국이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거나 할부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조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위와 같은 요구가 유예 또는 중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도 법원에서는 유예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 ① 과세당국은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사례를 간단히 제시한다.
- ② 결정된 소득이 신고된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가 무조건적 유예가 가능함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일부가 납부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간략한 사유는 유관 당국이 명령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납세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유관 당국은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가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해당 금액을 입금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유관 당국은 또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은 강제적 조치가 없다. 그러나 해당 당국이 납세자가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명령에 그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고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유관 당국이 유예명령을 전달하는 동안 상기 요소들을 준수했다면 행정적 업무를 다루는 유관 당국이 다시 한 번 사유가 명시된 명령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

요구 유예를 위해 채택되는 일반적인 과정에는 요청하는 사유를 자세히 적은 요구

유예신청서를 소득세 관련 행정 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일이 포함된다. 해당 행정담당관은 신청서를 받고 나면 상기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명령을 전달한다. 납세자는 관련 행정담당관에 의해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득세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 조항들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채무불이행 납세자가 될 수 있다. 2008년 재정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만약 TDS의 전부/일부를 공제하지 않고 이 금액을 국고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는 채무불이행 납세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납세자가 채무불이행 납세자로 간주되는 경우 법은 세금 회수 담당관(TRO)이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 특별 담당관은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TRO는 국세청장이 서면 명령을 통해 TRO의 권한을 승인한 소득세 담당관으로서 법에 의해 부여되거나 할당되는 권한 및 기능 또한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TRO는 납세자가 지불해야 할 미수세금 금액을 명시한 양식 제57호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다음 회수방식에 따라 해당 미수세금을 회수한다.

- ① 재산압류 및 납세자의 동산 매각
- ② 재산압류 및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
- ③ 납세자 체포 및 구류
- ④ 납세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 지정

위와 같은 회수 절차는 여타 다른 방식으로 미납세금 회수가 실행되었더라도 수행될 수 있다.

납세자 재산을 판단할 때 TRO는 납세자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또는 아들의 법적 배우자 또는 아들의 미성년 자녀에 부적절한 보상으로 양도된 재산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TRO가 작성한 상기 명세서¹⁹²⁾의 효과는 어떠한 근거로든 해당 명세서의 정확성을

192) 서식 제57호

납세자가 문제삼을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TR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성상 또는 산술적 오류가 해당 명세서에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

상기 회수방식¹⁹³⁾ 이외에도 법은 세금 회수를 위한 아래의 방식들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히 나와 있다.

- ① 미납세금은 채무불이행 납세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고용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② 서면 통지를 통해 TRO는 납세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자에게 세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서면 통지를 통해 TRO는 납세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서면 통지를 통해 TRO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납세자의 돈을 보관하거나 이후에 보관할 수 있는 자에게 세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TRO는 그 관할하에 납세자의 돈이 있는 법원에 해당 미납세금 전액의 회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금액이 미납세액보다 큰 경우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만 신청한다.
- ⑥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산을 통제하고 매각함으로써 세금 회수가 가능하다.
- ⑦ 헌법 제258(1)조에 의해 주정부가 세금 회수를 담당하는 경우 세금은 지방시세나 현지 세율이 회수되는 방식대로 회수된다.

상기의 여러 회수방식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조세당국과 정부는 미납세금이 상기 방식으로 납세자에게서 회수되고 있는 중이라도 해당 법이나 소송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은 중앙정부가 세금 회수를 돕기 위해 다른 국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93) 명세서가 TRO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다른 국가 정부와의 이러한 협약에 따라 CBDT가 인도에 재산을 가진 모든 인(person)로부터 해당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세금의 회수를 위한 증명서 또는 명세서를 받는 경우, CBDT는 이러한 증명서 또는 명세서를 해당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TRO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후 TRO는 법 제222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조세는 회수 절차로 인해 발생한 경비를 공제한 후 해외 조세당국에 송금된다.

마찬가지로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인도 이외의 국가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해당 국가가 인도 중앙정부와 회수 절차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TRO는 CBDT에 양식 제57호로 작성된 명세서를 전달할 수 있다. CBDT는 협약 조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과세 합의(Settlement of Cases)¹⁹⁴⁾

납세자는 불복의 모든 단계에서 소득세 중재위원회에 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 ① 소득적출액에 대한 추가 세금이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② 신청일 전에 동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사유를 소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이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을 거절하거나 인정하여야 한다. 아무런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신청은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위원장의 보고서를 요청한다.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 없이 진행된다.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요청하며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이

194) 소득세법 제245C, 제245D, 제245H, 제245HA조

나 조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0일 내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계속 진행된다.

신청명령 수령 후 35일 이내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매월 1.25%의 이자를 납부한다. 원 명령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오류가 세액을 증가시키는 오류일 경우 납세자는 다시 소명 기회를 얻게 된다.

중재명령은 사실의 사기나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소득의 완전한 공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벌이나 벌금에서 면책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특정일에 중지된다.

〈표 2-1-42〉 위원회의 활동중지

진행이 멈추는 상황	중지되는 특정 일
2007.6.1 이후에 신청이 법 제245D(a)조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되는 날
법 제245(2C)조에 따라 유효한 적용	유효한 선언이 적용되는 날의 마지막 날
법 제245D(4A)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되지 않는 합의 명령	법 제245D(4A)조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위원장은 신청자에게 소득세법과 부유세법하의 벌과금과 형벌의 면책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납세대상자(person)별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위원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으며 차후에 또 다시 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법원소송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

마. 불복(Appeal Procedures)¹⁹⁵⁾

1) 불복의 권리

인도 헌법은 인도의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 권리 내에 불복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복은 각 단계별 적격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다.

2) 소득세 심의위원장(commissioner of income tax(Appeals))에 대한 불복(일차 불복기관)

과세관청의 명령에 불복하는 모든 납세자는 소득세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불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쟁송조정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 DRP) 결정과 관련한 명령을 제외한 부과 명령
- ② 벌과금을 부과하는 명령
- ③ 기타 명령: 거주자를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명령 혹은 회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명령, 세금의 공제 사항 결정에 관한 명령

이러한 명령은 다음의 기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조세 부과나 벌금에 대한 통지가 있는 날
- ②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날
- ③ 불복사항에 대한 명령이 있던 날

불복신청은 35번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때 신청비용이 발생하는데 부과 소득이 10만루피 이하일 경우 250루피, 10만루피와 20만루피 사이일 경우 500루피, 2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 1천루피, 기타 사항에 관계된 청구일 경우 250루피를 납부

195) 이전가액세제에 관한 불복 사항은 'Ⅲ. 국제조세 4. 이전가액세제'에서 다시 논한다.

해야 한다.

조세불복 신청 이전에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 전에 납세자와 과세당국(Assessment Officer, 이하 AO)의 구두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¹⁹⁶⁾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인은 추가적인 불복항목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⁹⁷⁾ 충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 ① AO가 추가적인 증거를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 ② AO가 불복의 모든 근거를 제공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③ AO에 의해 요청된 추가적인 증거를 납세자가 제공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AO의 권한과 불복(Appeal) 단계의 위원장의 권한은 거의 유사하다. 이 불복의 처리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모든 불복에서 불복이 신청된 회계연도 말로 1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권고된다. 동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납세자나 AO 모두 동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수정결정권한

과세관청의 오류나 납세자의 불이익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정확히 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정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장은 AO의 명령을 회계연도 말 2년 내에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원(ITAT: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고등법원, 대법원의 명령에 따른 사항을 수정하는 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

동 수정에 따라 AO가 부과를 완료하는 기한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①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이전가격담당자(Transfer Pricing Officer,

196) 소득세법 제250조

197) 소득세법 제250(5)조

이하 ‘TPO’)에게 사건을 의뢰한 경우 대상 사업연도 말부터 21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② ①외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64조는 위원장에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하위 기관에서 결정된 명령을 수정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수정은 위원장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의 명령은 수정할 수 없다.

- ① ITAT나 위원장 결정 이전에 불복의 대상이 된 명령
- ② 동 불복기한이 지나지 않고 위원장이나 조세법원에게 제소할 수 있는 불복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회계연도 말로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ITAT,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항에 영향을 받은 사항을 수정하는 데에는 기한이 없다.

4) 조세법원에 불복

다음의 자가 결정한 사항을 납세자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ITAT에 불복할 수 있다.

- ① 심의위원회
- ② 위원장(법 제263조의 결정)
- ③ 법 제115VZC, 143(3)조, DRP 결정에 따른 법 제147조에 의한 AO의 결정
- ④ 과세관청의 장(Chief Commissioner)나 지방과세관청의 장(Director General) 또는 세무서장(Director)가 법 제272A조에 따라 결정한 명령

국세청장(Commissioner)은 또한 법 제154조 또는 법250조에 따른 심의위원장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AO가 이러한 명령에 거절해서 불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 명령의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경과 후에 신청한 불복을 인정할 수 있다.

불복의 이유를 포함하여 36번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DRP의 의견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불복인 경우 36B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불복을 청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AO가 계산한 총소득이 10만루피 이하일 경우 500루피, 10만루피와 20만루피 사이일 경우 1,500루피, 2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 소득의 1%(1만루피 한도)이고 기타 사항에 관한 불복 비용은 500루피이다.

국세청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되었다는 것을 통지받은 AO나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6A 서식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반대의견 제출 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해당 불복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불복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로 4년 이내의 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납세자나 AO는 Tribunal의 결정을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는 3부 제출하며 50루피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고등법원(High Court)에 대한 불복¹⁹⁸⁾

조세법원의 결정이 법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법에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복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의 2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상고하면 된다.

6) 대법원(supreme court)에 대한 불복¹⁹⁹⁾

고등법원의 결정 사항이 대법원 판결 대상이 될 경우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억울한 당사자는 인도 헌법 제13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바로 탄원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법률은 인도 헌법 제141조에 따라 모든 법원과

198) 소득세법 제260A조

199) 소득세법 제261조

Tribunal의 판결을 구속하고 소급적으로 발효된다. 즉, 연속된 결정에서 앞의 결정이 수정되는 경우 그 결정은 새로운 법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고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즉, 이전의 결정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라도 이후에 고쳐진 결정은 이전의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바. 벌과금

소득이나 부가혜택을 은폐하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 세금을 체납 또는 미납할 경우 벌과금(penalty)에 대한 규정이 있다. 체납의 경우에는 기간이나 발생빈도에 따라 적용되는 벌과금의 금액이 다르고, 은폐는 과세가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 규정 요약

〈표 2-1-43〉 벌과금

관련 조문	체납유형	벌과금 (Penalty)
140A(3)	자진신고납부세금/부가급여세금(FBT)나 이에 대한 이자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과세당국(AO)이 결정
221	체납(default)	상동
271(1)(b)	FBT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fringe benefits를 적게 지급하였거나 FBT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정기 부과 전 질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감사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사유당 10,000루피
271(1)(c)	소득을 은폐하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	탈세액의 100~300%
271(1)(d)	fringe benefits(부가급여)를 은폐하였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	탈세액의 100~300%
271A	특정 사업이나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가 장부 등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25,000루피
271AA	국제거래에 관한 서류와 정보를 보관·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국제거래 가치의 2%

〈표 2-1-43〉의 계속

관련 조문	채납유형	벌과금(Penalty)
271B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매출 또는 총수입액이 600만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전문직 중 150만루피를 초과하는 자)	총매출액 또는 총수입액의 0.5%와 15만루피 중 적은 금액
271BA	92E조에 의해 요구될 때 국제거래를 하는 인(person)이 회계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만루피
271C	법 XVII-B장에 의해 요구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당분배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권·십자말 퍼즐 등에서 승리하였을 때 원천징수(tax deduction)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271C	법 XVII-BB장에 의해 필요한 세금징수(tax collection)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 세액
271D	20,000루피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예금(deposit)의 승인	승인된 대출/예금의 금액
271E	20,000루피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예금의 상환	대출/예금의 상환 금액
271F	139(1)에서 정한 소득세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000루피
271FA	285BA(1)조에서 요구되는 특정거래의 연간정보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 기간 동안 매일 100루피
271FB	115WD(1)조에서 요구되는 fringe benefits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주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 기간 동안 매일 100루피
271G	국제거래를 하는 자가 소송중에 92D(3)조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을 관계당국이나 소송담당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국제거래의 가치의 2%
272A	(a) 인(person)의 과세에 대해 묻는 소득세 authority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b) ACT하에서의 조세쟁송 과정에서 성명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c) 소환(summon)에서 요구되는 회계장부·서류를 만들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각 10,000루피

〈표 2-1-43〉의 계속

관련 조문	채납유형	벌과금 (Penalty)
272A(2)	(a) 소유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94(6)조에서 요구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을 security AO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b) 사업이나 전문직의 폐업을 15일 이내에 과세당국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c) 133, 206, 206C, 285B조에서 언급하는 신고서나 진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d) 134조에서 요구되는 등록증의 점검 또는 등록증의 복사를 하지 않은 자 (e) 139(4A)조 또는 139(4C)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f) 신고서의 복사본의 지연제출 (g) 203조(tax deduction의 자격 증명) 또는 206C조(tax collection의 자격 증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h) 226(2)조에 따른 공제나 세금을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i) 급여 대신에 특정한 임시수입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성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급여의 지급자(192(2C)조에서 요구) (j) 206C(1A)조에 규정된 신고서의 사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delivery)하지 않았을 경우 (k) 200(3)조 또는 206C(3)조에 규정된 성명서의 사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l) 206A(1)조에 규정된 분기 신고서(tax deduction 없이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나 특정회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 제출한 날부터 매일 100루피
272AA	133B조(원천징수를 하는 자와 관련된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루피
272B	소득세 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39A, 139A(5A), 139A(5C)조 또는 139A(5)(c)조	10,000루피
272BB	(1) 공제계좌번호(deduction account number), 징수계좌번호(collection account number)에 관한 203A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203A(2)조에 관련된 공제계좌번호나 징수계좌번호의 증명서 등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였을 경우	10,000루피

벌과금의 부과는 납세자가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O 이외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벌과금(penalty) 부과서류가 AO에 전달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joint commissioner(공동위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① 소득세 officer에 의해 이루어진 벌과금이 1만루피를 초과할 때
- ② assistant commissioner(징세국) 또는 deputy commissioner(차장)에 의해 이루어진 벌과금(penalty)이 2만루피를 초과할 때

2) 벌과금의 시효(Limitation Period)

법 제275조 규정에 따른 벌과금(penalty)의 시효는 다음과 같다.

〈표 2-1-44〉 벌과금의 시효

관련사항	시효
관련과세/다른 결정이 다음 기관의 상고물일 경우 • 246조 또는 246A조에 따른 소득세 심의위원회 • 253조에 따른 조세법원	다음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 벌과금 부과 과정이 완성된 회계연도의 말 • 국세청장 또는 관할청장으로부터 심의위원장 또는 조세법원의 결정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관련과세/다른 결정이 심의위원장 [246조 또는 246A조]의 상고물일 경우와 심의위원장이 그 소송의 처리를 2003년 6월 1일 이후에 통과시켰을 경우	다음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 벌과금 부과 과정이 완성된 회계연도의 말 • 국세청장 또는 관할청장으로부터 심의 위원회 또는 조세법원의 결정을 받은 달로부터 1년
과세 또는 다른 결정이 263조 또는 수정 264조의 주된 대상일 경우	개정이 통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타 경우	다음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 벌과금 부과 과정이 완성된 회계연도의 말 • 벌과금의 부과를 소송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3) 벌과금의 특례

법 제273B조에 따라 만약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증명되면 벌과금(penalty)이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합리적인 사유란 평범한 사람의 행동을 가정하고 도출한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과도하고 지나침 없이 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유라 함은 평범한 지식을 가지고 평범하게 신중을 기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통의 상황에서 부주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3A(1)조에 의해 국세청장은 납세대상자(person)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벌과금(penalty)의 양을 감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① 소득의 은폐 또는 특정한 제출의 잘못에 대해 AO가 발견하기 전에 과세대상자(person)가 자진해서 사실을 자백할 경우²⁰⁰⁾
- ② 납세대상자가 그의 소득 과세에 관해 조사에 협력할 경우
- ③ 납세대상자가 납부할 세금 또는 가산금에 대해 납부하거나 충분한 조치가 있었을 경우

사.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s)

조세 소송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자들의 과세금액 예측을 미리 할 수 있게 한다. 납세의무자는 수행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될 세법 해석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답변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세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 납세자의 자백한 소득의 합계가 50만루피를 초과하고, 하나 이상의 회계연도와 관련이 있을 경우 chief commissioner 또는 director general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벌과금을 감소·철회해줄 수 없다.

1) 사전답변의 정의²⁰¹⁾

- ① 비거주자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상 답변
- ②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²⁰²⁾
- ③ 소송 진행을 앞둔 세무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

2) 사전답변 신청대상자 및 이슈사항

사전답변은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① 비거주자
- ② 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
- ③ 지정된 거주자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지정된 거주자(Notified resident applicant)

사전답변을 위한 질문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론적 또는 가설적 시나리오에 대한 사항은 신청대상이 아니다. [Application No.p-8 0 f1995, In re (1997) 223 ITR 416 (AAR)]에서는 AAR(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은 해당 소득이 신청자의 인도 내 PE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사전답변하였다. 그러나 AAR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얼마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계산은 신청자의 실제 거래행위에 달려 있으며, 가설적 방법에 의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다음에 대해서는 AAR을 신청할 수 없다.

- ① 과세당국, 심판청구 또는 조세소송에 계류중인 사안

201) 소득세법 제245N(a)조

202) 이러한 답변에는 사전답변 신청내용에 포함된 법률의 해석이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② 자산의 시가평가와 관계된 사안
- ③ 조세 회피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형태

3)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관련 사례

〈사례 2-1-23〉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사례

X는 Y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해당 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X가 해당 원천징수 의무 여부 및 적용세율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질의하였다. X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Y가 이 건에 대하여 AAR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X건에 대한 답변 미결이 Y의 AAR 신청을 막지는 못한다.

이때 답변 미결 여부는 AAR 신청날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을 후 신청자는 소득신고 이후에 AAR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4) 시가평가와 관계된 사안

[Instrumentarium Corpn., In re (2005) 272 ITR 499 (AAR)]에서는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법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나 용역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은 답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Morgan Stanley & Co Inc., In re (2006) 284 ITR 260 (AAR)]에서는 거래순이익률법(TNMM) 방법이 회사의 용역거래에 가장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인지 답변하지 않았다. 회사는 AAR 답변 제한은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의 시가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한할 규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AAR은 이러한 주장은 세법상 국제거래의 의미를 간과한 해석으로 보았다.

5)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계된 거래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계된 거래에 대해서는 AAR이 답변하지 않았다.

[Advance Ruling P No,P-9 of 1995, In re (1996) 220 ITR 377 (AAR)]에서는 모리셔스에 위치한 영국은행의 100% 자회사가 인도 투자건에 대해서 인도-모리셔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해당 거래는 영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AAR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DLJMB Mauritius Investment Co., In re(1997) 228 ITR 268(AAR)]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은 모리셔스에서 인도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모리셔스에서 투자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6) 답변의 구속력

답변의 구속력은 해당 질의를 신청한 신청자 및 관련 과세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AAR의 답변은 조세심판 및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union of India(2003)], [Cyril Eugene Pereira(1999)]에서는 AAR의 답변이 법 조문 또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소송사건에서 참고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답변의 구속력이 미치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거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AAR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7) AAR의 구성

AAR은 다음과 같이 퇴직한 대법관, CBDT 위원 자격이 있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 인도 법무부서 소속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AAR은 원칙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며 관련 제출대상 문서는 영어 또는 인도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8) AAR의 신청

AAR의 신청은 규정된 서식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약 2,500루피(약 65달러)의 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 및 질문과 질문과 관련한 사실관계(사업내용, 거래 성격 및 거래일자 등), 법률 및 사실관계에 있어서 신청자의 입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반려되며, 보정하는 경우 해당 보정이 이루어진 때 신청한 것으로 보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9) AAR의 진행절차

사전답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부서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담당자는 신청자가 접수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AAR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답변을 통보하여야 한다. AAR 답변 이후 법률의 개정이나 해당 건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답변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아. 형벌(Prosecution)

위법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나 누락을 말하고, 반면 기소는 그런 위법행동에 관해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도 헌법 제20(1)조 규정에 따르면

- ①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당시에 시행중인 법이 없으면 납세대상자(person)는 벌을 받을 수 없다.
- ②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당시에 시행중인 법에 명시된 사항보다 더 큰 벌과금

(penalty)을 받을 수 없다.

법 제279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대상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또는 심의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 또는 director general은 소득세 과세당국에게 기소하라는 명령·지시를 내릴 수 있다.

1) 누가 기소되는가?

법률에서 기업(법인, 회사, 조합, 개인 포함)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에 기업의 사업을 지휘하고 책임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행동이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납세대상자가 그 범죄는 자신의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은 그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기업이 범한 범죄행위가 그 회사의 디렉터, 관리자, 총무 또는 사무장 등의 동의·묵인·방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유죄로 간주되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수 없고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사람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2) 기소 규정 요약

법 제276B, 276C(1), 276CC, 277, 278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7년의 구금과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 제276A조 또는 276B조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자가 이 범행이 합리적인 원인이라고 증명을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표 2-1-45〉 기소규정의 요약

관련조문	범죄행위	결과	비고
275A	132(3)조 또는 132(1)조의 명령 위반	최대 2년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5B	권한 있는 당국이 회계장부 점검을 위해 시설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서류를 전자기록 형식으로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6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과 이자를 부당하게 은닉·이전하는 경우	최대 2년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6A	178(1)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최대 2년의 구금 (법원의 판단에 맞설 수 있는 특별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구금이 6개월 이하가 될 수 없다.)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6AB	269UC(고정자산의 이전 제한), 269UE(중앙정부에 재산귀속), 269UL(재산 또는 부동산의 폐지 또는 대체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의 구금과 벌금 (법원의 판단에 맞설 수 있는 특별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구금이 6개월 이하가 될 수 없다.)	-
276B	중앙정부에 다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세액 공제, 배당분배세, 복권 또는 십자말뚝에서 승리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6BB	중앙정부에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상 7년의 이하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표 2-1-45〉의 계속

관련조문	범죄행위	결과	비고
276C	고의적으로 본세·가산세·가산금을 회피할 경우	회피 금액이 1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7년 미만의 구금과 벌금. 이외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고의적으로 본세·가산세·가산금의 납부를 회피할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고의적으로 다음 소득신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급여의 신고, 소득의 신고	발견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액이 1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이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6CCC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276D	장부와 서류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 (해당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계산)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7	법이나 영에 따른 증명서의 위조 또는 위조된 장부와 증명서의 전달	증명서와 장부가 진실하였을 경우 회피하고자 했던 세액이 1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이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277A	본세, 가산세 가산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인(person)을 사주하여 회계장부와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이 규정의 목적상 다른 인(person)에 의해 세금 등을 회피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음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표 2-1-45〉의 계속

관련조문	범죄행위	결과	비고
278	부정신고의 사주	증명서와 장부가 진실하였을 경우 회피하고자 했던 세액이 1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이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 구금과 벌금	commissioner 또는 commissioner (appeals)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5. 기타 사항

가. 세법규정의 실행과 관리

1) 서류 식별번호/Documents Identification Number)

법 제282B조에서는 각종 통지서, 서신, 공고문 등에는 컴퓨터가 부여한 식별번호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수령하는 각종 서신이나 통지서 등에도 컴퓨터가 부여한 식별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식별번호가 없는 문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이러한 규정은 2011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2) 정보의 제출이나 공개

① 인도 내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는 비거주자가 제출할 정보

법 제285조에서는 인도 내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연도의 활동에 대한 사전에 규정된 형식의 보고서를 연말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제출할 정보

법 제285B조에서는 영화제작(cinematograph)에 참여하는 납세대상자들은 5만루

피 이상의 지출에 대한 규정된 형식의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회계연도 말이나 영화제작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③ 연간정보 보고서(annual information report: AIR)

법 제258BA조에서는 정부당국이나 공무원들과 같이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자들로서 주식거래나 예금 등을 등록하거나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AIR)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들은 재화, 재산, 권리나 재산에 대한 지분을 구입하거나 처분 혹은 교환하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도급계약(works contract) 하에서의 거래, 투자나 예산지출에 따른 거래, 부채나 예금 거래이다. CBDT에서 규정하는 제출의무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2-1-46〉 보고의무자

	보고의무자	거래
1	은행	백만루피 이상의 현금예금
2	은행, 신용카드회사	연 0.2백만루피 이상의 카드지출
3	뮤추얼펀드의 수탁자	연 0.2백만루피 이상의 위탁
4	채권 발행자	0.5백만루피 이상의 채권 인수
5	주식 발행자	0.1백만루피 이상의 지분 인수
6	등기나 등록자	3백만루피 이상의 부동산 매입이나 처분
7	RBI로부터 승인받은 담당자	0.5백만루피 이상의 RBI 발행 채권의 인수

AIR은 거래가 일어난 해의 다음 해 9월 1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중앙정보지국(central information branch) 혹은 CBDT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AIR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제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1개월의 기간이 있고 이는 연장 가능하다. 만일 이 조치에 불응하면 AIR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AIR 제출의무자가 AIR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이 사실을 알

리고 60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④ 정부의 정보 공개

법 제87조에서는 정부는 공익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성명이나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데 관련된 불복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할 수 없다.

3) 세무대리인

법 제288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당국이나 법원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287A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자산평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정법과 예산에 따른 납부세액 결정

법 제4(1)조에서는 소득세율은 매년마다 재정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산안 확정 이전에는 세율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4월 1일까지 세율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세율이나 현재 상정중인 세율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5) 시행령 제정과 명령의 권한

법 제295조에 따르면 CBDT에서는 세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권한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중앙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시행령은 수정될 수 있는데 단, 기존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준법률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시행령이 미치는 효력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납세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법 제295(2)조에서는 CBDT에서는 세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298조에서는 중앙정부는 법률의 시행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 혹은 특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6) 폐지와 구제절차(savings)

법 제297조에서는 1961년 법에 의해 폐지된 1922년 구 소득세법하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한다.

II. 구조조정세제

1. 합병(Merger)/기업합병(Amalgamation)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는 법적 용어로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인도의 회사법(Companies Act)에서는 합병(merger)이 기업합병(amalgamation)을 지칭한다.²⁰³⁾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있는 그대로’ 양수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합병(Merger)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양수법인의 지분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발행됨
- ② 1956년 회사법(‘회사법’) 제391~394조에 제시된 절차를 따름. 이 절차에는 기업 합병 계획, 주주 승인, 관할 고등법원 및 기타 규제 당국 등이 포함됨.
- ③ 관계회사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면제
- ④ 피합병법인의 해산 절차 없이 해산

인도 소득세법에서는 기업합병을 하나 이상의 회사(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합병회사)와 합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²⁰⁴⁾

- ① 피합병회사의 모든 재산과 부채는 합병회사의 재산과 부채가 된다.
 - ② 피합병회사가 가진 주식가치(이미 합병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제외)의 7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회사의 주주가 된다.
- 위 조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조건이 도출된다.

203) 회사법(Companies Act) 제391~394조

204) 소득세법 제2(1B)조

- ① 위 정의는 회사의 기업합병에만 적용되며 제휴회사, 신탁회사 등 다른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자원 공유화(pooling of resources) 원칙은 모든 재산과 부채가 합병회사에 이전된다는 조건하에 인정된다.
- ③ 피합병회사의 지분 가치의 7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조건은 피합병회사 지분 가치의 최대 25%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회사 지분 이외의 형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합병회사 지분 형식의 보상을 받지 않는 주주는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④ 주주에는 우선주주가 포함된다.

기업합병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루게 될 법 대부분의 조항들은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따른다.

가. 합병 세무 처리

1) 기업합병일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합병에서는 기업합병이 효력을 발생하는 양도일 즉, 약정일(appointed date)을 정한다. 또한 이 기업합병에서는 기업합병이 실제로 일어난 발효일(effective date)을 규정한다. 발효일은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법령의 승인을 받고 회사법에 의거한 요건을 준수한 후의 날짜이다. 그러므로 발효일은 약속기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부분의 경우 약속기일은 발효일 이전의 소급 일자이다.

2)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세 면제²⁰⁵⁾

기업합병 규정에 따라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에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합병

205) 소득세법 제47(vi)조

회사가 인도 회사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²⁰⁶⁾

피합병회사의 지분인 고정자산을 기업합병 규정에 따라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양도에 대한 보상으로 피합병회사 주주가 인도 회사인 합병회사의 지분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동 지분에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포함한다.

4) 해외기업이 인도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외의 피합병회사가 인도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인도 회사의 지분 할당에 대한 보상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5) 의제배당의 문제²⁰⁷⁾

청산중인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된 금액은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것인 한 의제배당으로 간주된다. 즉, 동 배당금은 자본화 여부에 관계없이 청산 직전의 회사 이익 잉여금에서 나와야 한다. 이 조항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기업합병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6) 소득세법 제47(vii)조

207) 소득세법 제2(22)(C)조

나. 합병 관련 세액의 계산

1) 신주 취득 비용 및 보유 기간

주주가 기업합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 피합병회사 지분의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자본이익 또는 손실의 장기 또는 단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 매각 시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피합병회사의 지분 보유기간은 합병회사의 지분 보유기간에 통합된다.

기업합병 규정에 따르면 피합병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합병회사에 양도된다. 법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동일 감가상각률 자산군(block of assets)의 상각 후 잔존가액(WDV) 비율에 따라서 허용된다.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감가상각이 서로간에 어떻게 정해지든지 총감가상각은 해당 기업합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기업합병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사용된 일수 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2)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취득 비용²⁰⁸⁾

피합병회사가 투자, 토지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회사로 이전되는 이러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과 같다.

3) 경비 공제²⁰⁹⁾

이행해야 할 준수 기준이 많기 때문에 기업합병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8) 소득세법 제9(1)(e)조

209) 소득세법 제35DD조

특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합병 계획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주요 항목에는 인지세, 법원 신청비, 전문가 감정료 등이 포함된다. 합병회사가 기업합병이 일어나는 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전적으로 기업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을 매년 5분의 1씩 공제한다.

4) 초기 비용 및 기타 이연비용 공제 허용²¹⁰⁾

특정 초기 비용은 5년간(매년 5분의 1), 공제받을 수 있다. 인도 회사의 운영이 기업합병 계획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인도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기업합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합병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5) 피합병회사와 관련된 지출 공제

기업합병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합병회사 소유일 때에는 총당금 또는 부채의 일부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합병회사 소유일 때 지출로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이다. 전형적인 예는 대손충당금인데 합병 이후 일어난 대손은 합병회사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대출에 대한 발생이자를 대손에 산입했다가 양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손금에서 소급해서 취소한다.

6) 채무의 감면²¹¹⁾

특정 지출이 과거에 공제되었고 납세자가 이러한 지출에 대해 감면이나 거래책임의 중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은 해에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210) 소득세법 제35D(5)조

211) 소득세법 제41(1)조

기업 승계 시 이와 유사한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승계로 인해 소멸된 기업은 공제가 허용되고 혜택은 그 승계인이 얻도록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승계인은 얻은 혜택에 대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에 공제가 허용되고 합병회사가 감면 또는 거래 채무의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혜택을 얻은 경우 공제가 허용되는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합병회사는 해당 혜택 금액에 대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7)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적용

최저한세(MAT)와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의 차액(이하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은 이후 10년간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정상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기업합병 계획에서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해당 계획을 허가하는 순서에 따라 합병회사에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지불된 선급세금에 대한 공제와 피합병회사에 적용되는 원천과세에 대한 공제가 합병회사에 허용된다. 그러나 법에는 피합병회사의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이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데 이는 판결을 통해 합병회사에 대해 동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¹²⁾

8) 피합병회사의 납세의무

기업합병 후에 피합병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납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피합병회사가 아닌 합병회사가 수행해야 한다.

212) SKOL Breweries Ltd. v ACIT (2008) 115 ITD 84 (Mum)

다. 해외 기업들의 합병

1) 피합병회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해외 기업이 인도 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의 조항들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인도 회사의 기업합병 규정에 따른 자산 양도는 조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두 해외 회사의 기업합병 계획에 의해 인도 회사가 보유한 지분 형식의 자산이 양도 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① 피합병회사 주주의 최소 25%가 합병회사의 주주로 계속 남는다.
- ② 피합병회사가 통합된 국가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해외 지주회사가 100% 자회사와 합병 시의 세무 처리

100% 자회사가 그 지주회사에 합병되면(두 회사 모두 인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기업임), 25% 주주에게 지분을 발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충족될 수 없다.

이 조건은 100% 자회사인 상황에서는 무용해지기 때문에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 제2(1B)조는 세금 중립적인 합병을 위한 75% 보상의 충족을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현재 보유한 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 제417(via)조에는 이러한 제외 규정이 없어 무용화 주장이 옹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P-3 of 1994 (1999) 240 ITR 518 (AAR)에서 AAR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법에 따른 수직적 약식 합병이 있었고(지주회사와 100% 자회사의 기업합병), 캐나다에서 조세가 면제되었다.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인도 회사 지분이 합병회사에 양도되는 경우는 보상금액의 흐름이 없고 기업합병에 양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hoechst GmbH, in re* (2007) 289 ITR 312 (AAR) 사건에서 AAR도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관계당국은 피합병법인이 보상 없이 자산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추어 관계 당국은 피합병회사(100% 자회사)가

합병회사에 인도 회사 지분을 거래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25% 주주에 대한 지분 발행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피합병회사(100% 자회사)가 합병 회사에 인도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답변은 고려중인 사안의 사실 관계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안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장은 국내 세법과 관련해서는 유효하지만 만약 피합병회사가 인도와 DTAA를 체결한 관할권에 위치해 있다면, DTAA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은 피합병회사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되고 인도에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DTAA의 수혜적 조항이 적용된다.

〈사례 2-11-1〉 합병

피합병회사 X Co.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회사로서, (또 다른 네덜란드 회사인) U Co.의 100% 자회사이다. X Co.는 X Co.가 기업합병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인도 회사인 I Ltd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X Co.는 I Ltd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합병을 하면 이를 U Co.에 양도해야 한다.

주식의 발행이 없을 것이므로 법 제47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합병이 될 것이다. 법 제9조의 간주조항에 따라 인도에서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도와 네덜란드 간의 DTAA 제13조에 따라 기업합병의 결과로서 해당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네덜란드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므로 DTAA의 수혜적 조항에 기초하여 해당 양도는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두 해외 회사의 기업합병에 대해 인도 회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인도 회사가 해외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해외 회사(제1 해외 회사)는 다른 해외 회사(제2 해외 회사)에 합병되었다. 상기 합병의 결과로

제2 해외 회사는 제1 해외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 지분 대신 인도 회사를 포함한 제1 해외 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이러한 기업합병은 인도에서는 세금 중립적 거래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세금 발생 여부는 인도와 제1 해외 회사가 위치한 국가 간의 DTAA 조항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인도 회사가 영국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영국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2. 기업분할

기업분할이라는 용어는 법인의 한 단위 또는 부문이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인 분리 구조변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할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사업 부문이 이전된다.
- ② 그 대가는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분 또는 증권을 할당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회사 양도가 주주에게 지분 이외의 형식으로 보상되는 경우는 기업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9AA)조는 기업분할을 회사법 제391조부터 제39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회사의 사업 또는 기업 활동의 사업이나 단위 또는 부문을 다른 회사(신설회사)에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① 기업분할 직전에 분할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가치(재평가 가격은 고려하지 않음)를 적용하여 신설회사에 이전된다.
- ② 기업분할 직전에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회계장부에 기록된 재평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가치를 적용하여 신설 회사에 이전된다.
- ③ 신설회사의 지분은 비율에 따라 기업분할 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된다.
- ④ 기업분할 대상 회사 지분 가치의 75% 이상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⑤ 기업분할 대상 회사는 계속기업 기준으로 단위, 부문, 기업활동을 이전한다.
- ⑥ 기업분할은 중앙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따른다.

상기 조건이 모두 준수되지 않으면 동 구조조정은 기업분할로 간주되지 않아 기업 분할에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 분할 세무 처리

1) 기업분할일

모든 기업분할 규정은 기업분할이 발효되는 이전일, 즉 약정기일을 규정한다. 기업 분할 관련 규정에서는 또한 기업분할이 실제로 발생하는 발효일도 제시한다. 이 날짜는 일반적으로 모든 관련 법적 승인을 받고 회사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 이후의 일자이다.

그러므로 발효일은 약정기일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약정기일은 발효일 이전에 해당되는 소급일자이다.

2) 분할회사의 양도소득세 면제²¹³⁾

분할회사가 신설 회사에 분할에 의해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²¹⁴⁾

신설회사가 사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보상으로 분할회사 주주에게 신설회사 지분을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분할회사 주주 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13) 소득세법 제47(vib)조

214) 소득세법 제47(vii)조

4) 의제배당

법 제2(22)(v)조는 신설회사가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에 따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즉, 분할회사가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를 납부할 부담이 없다.²¹⁵⁾

나. 분할 관련 세액의 계산

1) 신주 취득비용 및 보유기간

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지분을 받는다. 따라서, 분할회사의 주주가 부담하는 이러한 신설회사 지분의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설회사의 지분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법 제49(2C)조는 분할로 취득한 신설회사 주식의 가액은 분할회사의 본래 지분 취득가액에 분할에 따라 양도되는 자산의 순장부가치²¹⁶⁾에 대한 분할 직전의 분할회사의 순자산가치²¹⁷⁾의 비율을 곱한 값(분할회사의 본래 취득 비용×순장부가치/순자산가치)²¹⁸⁾으로 계산된다.

분할회사의 보유기간은 분할회사 주주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신설회사 지분의 보유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회사 주주가 분할회사의 주식의 보유기간을 고려한다.²¹⁹⁾

그러나 분할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해부터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해당 주주가 지분에 대한 공정 시장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

215) 소득세법 제2(22)(v)조

216) 자산과 부채의 차액

217) 납입 주식자본과 분할 직후 분할회사의 회계장부에 표시되는 별도 적립금의 총합

218) 자산의 순장부가치 또는 순가치가 음수인 경우, 해당 공식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 조항을 법률에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전되는 사업의 순장부가치가 음수인 경우, 신설회사 지분 취득 비용은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219) 소득세법 제49(2C), 49(2D)조

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기업합병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혜택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2) 비감가상각 고정자산의 취득 비용

기업합병과 달리 법 제49(1)조에는 분할에 따라 양도되는 비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²²⁰⁾

3) 경비에 대한 공제

분할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5분의 1씩 발효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간 매해 허용된다. 이러한 공제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중에서 해당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허용된다.²²¹⁾

4) 창업비 및 기타 이연비용의 공제 가능성

합병과 동일하다.

5) 분할회사와 관련된 지출/채무의 공제

합병과 동일하다.

220) 소득세법 제2(19AA)조

221) 소득세법 제35DD조

6) 채무의 감면

과거에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영업 채무 등의 감면이나 중단 등을 통해 혜택이나 금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러한 혜택을 얻은 연도에 과세대상이 된다. 신설 회사가 공제 허용되는 지출 관련 혜택을 받은 분할의 경우, 해당 혜택 금액에 대해 신설 회사에 과세된다.²²²⁾

7)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적용

최저한세와 정상소득으로 인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은 10년간 공제가 허용된다. 분할 시에 분할회사의 사업이 가진 모든 자산과 채무는 분할 계획을 허용한 명령에 따라 신설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위의 공제는 사업이 아닌 법적 주체(전체로서의 법인 주체)에 대해 허용되므로 이를 사업에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동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분할회사가 계속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

다. 해외 회사의 분할

1) 분할회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²²³⁾

분할 대상인 해외 회사가 신설 해외 회사에 고정자산(인도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양도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이 부과될 수 없다.

- ① 분할 대상 해외 회사 주주의 지분가치 기준으로 최소 75%가 신설 해외 회사의 주주로 계속 남는다.

222) 소득세법 제41(1)조

223) 소득세법 제47(vic)조

- ② 해당 양도로 인해 분할 대상 해외 회사가 속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법 법 제391~394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해외 회사의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외 모회사의 분할로 인해 인도 자회사에 발생하는 손실²²⁴⁾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과 이월되어 수익에 대해 상계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소유권 집중 회사(closely held company)의 의결권의 최소 51%를 보유한 주주가 동일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자회사인 인도 회사는 분할 회사의 주주의 51%가 신설 해외 회사의 주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분할의 결과로 해외 회사의 지분 구성에 49% 이상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되지 못한다.

3. 기타의 구조조정

가. 일괄 매각(Slump Sale)

일괄 매각이란 개별 자산 및 부채가 아닌 전체를 합하여 하나 이상의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이다.²²⁵⁾

일괄 매각 상황에서 사업이라는 용어는 단위 일부, 사업 부문 또는 기업 활동을 포함하며, 기업 활동을 구성하지 않는 개별 자산/부채 또는 그 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괄 매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시금(lump-sum price)으로 매각

224) 소득세법 제79조

225) 소득세법 제2(42C)조

② 별도의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전체 기업 또는 부문 또는 단위의 매각

인도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양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agreement)이 필요하고 기업과 함께 취득하는 상표권 등록 등을 위해 인지세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상표권 등록을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자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인지세, 등록수수료 등 세금이나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 결정은 자산이나 채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괄 매각방식으로 취득한 기업의 일부로서 취득한 상표권 등록을 위한 양도증서(conveyance deed)를 작성하기 위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원래의 일괄 매각 거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나. 자산 매각(Asset Sale)

자산 매각에는 매각자가 각각 별도의 가치가 할당되는 개별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있다. 따라서, 자산 각각의 매각에 대한 조세 효과는 매각된 자산이 고정자산인지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양도소득

매각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은 아래와 같다.

- ① 양도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2(14)조에 정의된 고정자산인 경우, 양도인은 각각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양도소득은 법 제48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계산된다. 매각자는 양도자산이 자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인덱세이션(물가상승 반영)할 수 있다.
- ② 매각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보상은 동법 제50조에 따라 각각의 자산 단위에서 차감된다.
- ③ 양도되는 자산이 토지 및(또는) 건물인 경우, 동법 제50C조가 적용된다. 인지세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가치는 보상금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의미가 있다.

2) 사업소득

매각자가 양도하는 자산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양도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율로 매각 수익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고 또는 완제품 매각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매입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가액

지불된 금액은 매입자의 취득 비용이므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지주회사와 그 100% 소유 자회사 간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 경우 지불된 보상 이외에 매각자 소유 감가상각 자산의 WDV(Written-down value)가 계속해서 매입자의 감가상각 기준가액이 된다.

4) 이월 손실에 대한 효과

개별 자산이 양도되면 양도 기업에 발생하는 손실은 양수인 부담으로 이월되거나 상계될 수 없다.

5) 면세기간에 대한 혜택

면세기간은 사업 자격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므로 유자격 사업이 아닌 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세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청산

1) 청산회사에 대한 과세 가능성

소득세법 제46조는 청산 시 회사가 수행하는 자산 배분에 대한 과세체계를 규정한다. 회사가 그 주주에 대해 청산 시 수행하는 이러한 배분은 회사 소유의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산회사는 이러한 배분이 동법 제2(22)(c)조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배당금 배분 즉, 배당분배세를 제외한 청산자산의 배분에 대한 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가 회사의 청산에 따라 금전이나 자산을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는 주주에게 부과된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가능성

주주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본화 여부에 관계없이 청산 직전 회사에 누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배분은 법 제2(22)c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간주된다.
- ② 청산회사가 국내 회사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배당금액에 대해 배당분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제10(34)조 규정에 의해 배당소득이 면제된다.
- ③ 주식 취득비용을 제한 후 받은 잔액은 주식매매 차익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이나 주식매매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수령한 금액 또는 배당일에 받은 자산은 보상으로 간주된다.

3) 청산 시 주주가 받는 자산의 취득 비용

법 제55(2)(b)(iii)조는 청산 과정의 회사가 고정자산을 배분하여 주주의 재산이 됨으로써 해당 주주가 회사 청산자산의 배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주가 받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은 해당일 기준 자산의 공정 시장가격이다.

4) 자회사 청산 시 자산 인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지주회사와 그 100% 자회사 간의 자산 양도는 특정 조건에서 조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자회사가 그 인도 지주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47(v)조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조항이 100% 자회사 청산 시 지주회사에 배분되는 고정자산에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청산 시 과세에 대한 제46조의 특정 조항의 관점에서, 제47조에 따른 의제 간주가 적용될 수 없으며 청산 시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배분하는 고정자본은 제46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²²⁶⁾

5) 해외 회사의 청산

해외 회사의 청산 후, 만약 해당 기업이 자산으로 보유한 인도 회사 지분을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해외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법 제46조와 함께 참조되는 법 제9조에 따른 의제조항으로 인해 주주는 인도에서 과세된다. 또한 이익잉여금 범위 내의 배당은 주주 소유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청산회사가 해외 회사이므로 국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제한하는 법 제1150조에 의해 배당분배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에 따라 다른데, 인도와 주주의 거주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우대조항을 포함한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조약에 따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11-2〉 해외회사의 청산

모리셔스에 있는 한 회사가 인도 회사에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리셔스 회사에는 모리셔스에 거주하는 주주들이 있다. 모리셔스 회사가 청산되고 인도 회사의 지

226) CIT v Brahmi Investments Pvt. Ltd (2006) 286 ITR 66 (Guj)

분이 이 주주들에게 배분된다. 모리셔스 회사는 인도 회사 지분 가치의 절반 정도만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다. 주주에 대해 고려되어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배당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인도 회사 지분 가치의 일부는 주주 소유의 배당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으로서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가능성을 검토할 때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해당 배당금이 한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로 지불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의 제10조(배당금 관련) 조항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다.

② 자본소득

모리셔스 회사 지분 비용을 차감한 배당금 차감 후 지분 잔여가치는 주주의 자본소득으로 과세된다. 인도 국내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또는 장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인도-모리셔스 조세조약에 따르면 인도에서 해당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는 조세조약상의 우대조항이 적용된다.

라.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사업 및 파트너십의 재편성 또는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중립적 법인에 대한 조항이 법에 포함되었다.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은 회사에 의해 승계된다. 파트너십은 회사법에 따른 허용 조항에 의거하여 회사로 전환되거나 승계될 수 있다. 이러한 승계 또는 전환 시에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의 자산과 채무는 해당 회사로 양도된다.

1) 개인사업의 승계

소득세법 제47(xiv)조는 회사가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개인사업이 회사에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시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① 승계 직전에 해당 기업과 관련된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채무가 해당 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된다.
- ② 해당 회사의 개인사업자 지분 보유가 회사 내 총의결권의 50% 이상이며 해당 개인사업자의 지분 보유가 승계일로부터 5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 ③ 개인사업자는 회사 지분 할당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
- ④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양도나 승계에 대해 조세가 부과된다. 과세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제47A(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승계 회사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 파트너십 회사의 전환 또는 승계

법 제47(xiii)조는 한 회사가 파트너십 회사를 승계한 후 파트너십 회사가 해당 회사로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① 승계 직후 해당 기업과 관련된 파트너십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해당 회사의 자산과 채무가 된다.
- ② 승계 직전 파트너십 회사의 모든 파트너들은 승계일에 파트너십 회사 장부에 기록된 자본 계정과 동일한 비율로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③ 파트너십 회사의 파트너들은 해당 회사 지분 배분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 않는다.
- ④ 파트너십 회사 파트너가 해당 회사에 대해 가지는 총지분은 해당 회사 총의결권의 50% 이상이며 이러한 지분 보유율은 승계일 이후 5년간 계속 유지된다.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 또는 승계에 대해 조세가 부과된다.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제47A(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승계 회사는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3) 승계회사의 자산 비용

상기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 후의 고정자산 양도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법 제49(1)(iii)(a)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은 양도회사 즉,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 회사가 소유할 때와 동일하다.

4) 법 제47(xiii)조 및 제47(xiv)조에 명시된 조건의 미준수에 따른 승계회사 부담의 과세 가능성

법 제47A(3)조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의 승계회사에 대한 과세를 다룬다. 이전에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승계 회사 부담으로 과세된다. 전환일 기준으로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가 그 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해당 양도 소득은 법 제47(xiii)조 및 제47(xiv)조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연도에 과세대상이 된다.

5)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로부터 회사로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과세 가능성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십 회사가 다른 회사로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승계 또는 전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 회사에 과세되지 않는다. 법 제47A(3)조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 부담은 승계회사에 있다.

6)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회사 소유의 지분 취득가액

승계회사에 의해 지분이 분배될 때의 가치가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회사들의 지분 취득가액이 된다.

7) 법 제47(xiii)조 및 제47(xiv)조에 명시된 조건의 미준수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회사 부담의 비용

이러한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파트너십 회사의 파트너들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이 양도 직전 파트너십 회사에 존재하는 자본 대신 할당일에 지분의 공정 가치에 상응하는 값으로 수정되는지 여부이다. 승계회사가 자산을 양도할 때 이미 조세를 납부했으므로 양도 직전에 존재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 파트너 부담의 비용은 동일한 보상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 부담의 지분 가액은 증가된 가액 즉, 할당일 기준 지분의 공정 가치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8) 손실의 이월공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재편성 또는 법인화에 대한 면세조항을 두고 있으며 미상각잔액(unabsorbed depreciation)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한다. 법 제72A(6)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회사의 누적손실 및 미처리 감가상각은 상기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 시 승계회사에 이월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계된 손실 금액은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연도에 해당 회사의 소득인 것으로 간주된다.

9) 세제 혜택의 적용 가능성

이러한 면세기간은 이러한 사업의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

10) 법인의 유한책임회사(LLP)로의 전환

유한책임회사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은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재정법(Finance Act)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2010년 재무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추가된 제47(xiiib)조는 회사의 LLP 전환에 따른 자산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회사의 LLP 전환 과정 동안 회사 주주에 의한 지분 양도는 법 제47(xiiib)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의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① 전환 직전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LLP의 자산과 채무가 된다.
- ② 전환 직전 회사의 모든 주주는 LLP의 파트너가 되며 LLP에서 이들의 자본 기여 및 수익 배분 비율은 전환일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보유와 동일한 비율로 한다.
- ③ 회사 주주들은 LLP 수익 및 자본 기여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
- ④ LLP에서 회사 주주들의 총수익 배분 비율은 전환일로부터 5년 동안 언제든지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전환이 발생한 직전 연도 이전 3년간 회사 사업을 통한 총판매액, 매출 또는 총수취 금액이 600만루피를 넘지 않는다.
- ⑥ 전환일로부터 3년 동안 전환일 기준으로 회사 계정에 있던 이익잉여금 잔액에서 파트너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급된 금액이 없다.

회사의 사업손실 및 미처리 감가상각에 대한 이월과 상계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승계 LLP에 허용된다. 그러나 규정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적용되었던 혜택에 대해

승계 LLP 부담으로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직전 연도에 전환 회사 주주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승계 LLP 및 전환회사 주주 소유의 취득에 대한 실제 비용/비용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승계로) 소멸된 법인과 LLP에 적용되는 총감가상 각 금액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항들이 도입되었다.

소멸된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승계 LL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희망퇴직 제도에 따른 비상각 지출 관련 공제는 전환 연도부터 잔여 기간 동안 LLP에 허용된다.

마. 사업의 승계(Succession in Business)

1) 과세체계

법 제170조는 승계 시의 승계하는 자와 승계받는 자 간의 조세부담의 안분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승계하는 자는 승계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승계받는 자는 승계일 이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승계하는 자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승계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70조는 소득 내에 승계의 결과로 기업이 양도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이러한 승계 시의 과세방법은 일괄 매각, 파트너십이나 개인사업의 회사 전환 등 여러 구조조정 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양도의 무효화

법 제281조에 따르면, 모든 양도(증여/매각/담보/교환 등)나 자산에 대해 발생한 납부세액은 납세자에 대해 조세 청구가 미해결 상태이거나 조세 관련 절차가 양도 시점에 미결 상태인 경우 무효가 된다. 법 제281조는 재고품(stock-in-trade)을 제외

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이러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정한 예외조항이 있다.

- ① 양도와 조세 부과가 적절하게 수행되며, 미결 절차나 미해결 청구 통지가 없는 상태인 경우
- ② 양도가 과세당국의 특정 허가를 받고 수행된 경우
- ③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가 5,000루피를 넘고, 부과 또는 양도되는 자산이 10,000루피를 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은 모든 자산 양도 형식(개인 또는 집단)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하고 미지불 조세 채무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진행중인 절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산에 대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Ⅲ. 국제조세

1. 개요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충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가별로 거주자에 대한 세법상 정의가 상이하며 일부 국가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임에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간의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 회피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국가 간의 조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양국의 합의에 따라 조세조약 회피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인도 자체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해주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해외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동 배당에 포함된 과세분을 공제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구성된다.

한편 이전가격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 4월부터 특정 거래(비용 지출, 이자, 원가 배분, 수익 등)의 경우 반드시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인도와 다른 국가 간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인도와 다른 국가 간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에 추가하여 2010년 이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이디오피아, 조지아, 리투아니아, 멕시코와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인도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는 힌두어로 조세조약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분이 쉽지 않다.

〈표 2-Ⅲ-1〉 조세조약 체결현황

	국가	체결일		국가	체결일
1	아르메니아	2004년 12월 8일	2	오스트레일리아	1992년 1월 22일
3	오스트리아	2001년 9월 20일	4	알바니아(공포 전)	2009년 1월 29일
5	방글라데시	1992년 9월 8일	6	벨로루시	1998년 7월 17일
7	벨기에	1997년 10월 31일 2001년 1월 19일 개정	8	브라질	1992년 3월 31일
9	보츠와나	2008년 6월 18일	10	불가리아	1996년 5월 9일
11	캐나다	1998년 1월 15일	12	중국	1995년 4월 5일
13	사이프러스	1996년 12월 26일	14	체코	1999년 12월 8일
15	덴마크	1989년 9월 25일	16	핀란드	1984년 11월 20일 2008년 10월 1일 개정
17	프랑스	1994년 9월 7일 2009년 8월 12일 개정	18	독일	1996년 11월 29일
19	그리스	1967년 3월 17일	20	요르단	1999년 12월 8일
21	헝가리	2005년 3월 31일	22	아이슬란드	2008년 2월 5일
23	인도네시아	1988년 2월 4일	24	이스라엘	1996년 6월 26일
25	아일랜드	2002년 2월 20일	26	이탈리아	1996년 4월 25일
27	일본	1990년 3월 1일 2008년 10월 8일 개정	28	카자흐스탄	1997년 10월 31일
29	케냐	1985년 8월 20일	30	대한민국	1986년 9월 26일 1990년 12월 20일 개정
31	쿠웨이트	2007년 11월 27일	32	키르기스스탄	2001년 2월 7일

〈표 2-III-1〉의 계속

	국가	체결일		국가	체결일
33	라트비아(공포 전)	2008년 9월 18일	34	리비아	1982년 7월 1일
35	룩셈부르크	2009년 10월 12일	36	말레이시아	2004년 10월 12일
37	몰타	1995년 11월 22일	38	모리셔스	1983년 12월 6일
39	멕시코	2010년 11월 26일	40	몽골	1996년 9월 16일
41	미얀마	2009년 6월 18일	42	몬테네그로	2009년 12월 7일
43	모로코	2000년 3월 15일	44	나미비아	1999년 3월 8일
45	네팔	1988년 12월 5일	46	네덜란드	1989년 3월 27일 1999년 8월 30일 개정
47	뉴질랜드	1987년 3월 27일 2000년 1월 12일 개정	48	노르웨이	1987년 9월 9일 2006년 12월 15일 개정
49	오만	1997년 9월 23일	50	필리핀	1996년 2월 4일 2005년 2월 2일 개정
51	폴란드	1990년 12월 2일	52	포르투갈	2000년 6월 16일 2005년 9월 20일 개정
53	카타르	2000년 2월 8일	54	루마니아	1988년 2월 8일
55	러시아	1998년 8월 21일	56	싱가포르	1994년 8월 8일 2005년 7월 18일 개정
57	사우디아라비아	2006년 10월 17일	58	세네갈(공포 전)	2009년 1월 7일
59	세르비아	2005년 5월 31일	60	슬로베니아	2005년 5월 31일
61	남아프리카공화국	1998년 4월 21일	62	스페인	1995년 4월 21일
63	스리랑카	1983년 4월 19일	64	수단	2004년 11월 1일
65	스웨덴	1997년 12월 17일	66	스위스	1995년 4월 21일 2001년 2월 7일 개정
67	시리아	2009년 3월 30일	68	탄자니아	1981년 10월 16일
69	타지키스탄	2009년 7월 16일	70	태국	1986년 6월 27일
71	트리니다드토바고	1999년 10월 26일	72	터키	1997년 2월 3일
73	투르크메니스탄	1997년 9월 25일	74	아랍에미리트	1993년 11월 18일
75	이집트	1969년 9월 30일	76	우간다	2004년 10월 12일
77	영국	1994년 2월 11일	78	우크라이나	2002년 1월 11일

〈표 2-Ⅲ-1〉의 계속

	국가	체결일		국가	체결일
79	미국	1990년 12월 20일	80	우즈베키스탄	1996년 11월 13일
81	베트남	1995년 4월 28일 1995년 9월 12일 개정	82	잠비아	1984년 1월 18일

〈표 2-Ⅲ-2〉 일부 한정된 조세조약 체결현황

	국가	체결일		국가	체결일
1	아프가니스탄	1975년 9월 30일	2	불가리아	1977년 4월 15일
3	에디오피아	1978년 1월 4일	4	이란	1973년 5월 28일
5	쿠웨이트	1983년 3월 31일	6	레바논	1969년 6월 28일
7	오만	1985년 3월 27일	8	파키스탄	1989년 8월 29일
9	중국	1988년 8월 12일	10	루마니아	1968년 12월 20일
11	러시아	1976년 12월 23일 1992년 12월 30일 개정	12	사우디아라비아	1992년 12월 29일
13	스와질랜드	1958년 8월 29일	14	UAE	1989년 1월 8일
15	예멘	1987년 12월 1일			

〈표 2-Ⅲ-3〉 제한세율 요약표

(단위: %)

	국가	배당	이자	사용	기술료
1	아르메니아	10	10	10	10
2	오스트레일리아	15	15	15/10	15/10
3	오스트리아	10	10	10	10
4	방글라데시	15/10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5	벨로루시	15	10	15	15
6	벨기에	15	15/10	10	10
7	보츠와나	10/7.5	10	10	10

〈표 2-III-3〉의 계속

(단위: %)

	국가	배당	이자	사용	기술료
8	브라질	15	15	25/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9	불가리아	15	15	20/15	20
10	캐나다	25/15	15	15/10	15/10
11	중국	10	10	10	10
12	사이프러스	15/10	10	15	15/10
13	체코	10	10	10	10
14	덴마크	25/15	15/10	20	20
15	이집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16	핀란드	10	10	10	10
17	프랑스	10	10	10	10
18	독일	10	10	10	10
19	그리스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20	헝가리	10	10	10	10
21	아이슬란드	10	10	10	10
22	인도네시아	15/10	10	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23	이스라엘	10	10	10	10
24	아일랜드	10	10	10	10
25	이탈리아	25/15	15	20	20
26	일본	10	10	10	10
27	요르단	10	10	20	20
28	카자흐스탄	10	10	10	10
29	케냐	15	15	20	17.5
30	대한민국	20/15	15/10	15	15
31	쿠웨이트	10	10	10	10
32	키르기스스탄	10	10	15	15
33	리비아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34	룩셈부르크	10	10	10	10

〈표 2-Ⅲ-3〉의 계속

(단위: %)

	국가	배당	이자	사용	기술료
35	말레이시아	10	10	10	10
36	몰타	15/10	10	15	15/10
37	모리셔스	15/5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간주	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38	멕시코	10	10	10	10
39	몽골	15	15	15	15
40	몬테네그로	15/5	10	10	10
41	미얀마	5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42	모로코	10	10	10	10
43	나미비아	10	10	10	10
44	네팔	15/10	15/10	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45	네덜란드	10	10	10	10
46	뉴질랜드	15	10	10	10
47	노르웨이	25/15	15	10	10
48	오만	12.5/10	10	15	15
49	필리핀	20/15	15/10	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50	폴란드	15	15	22.5	22.5
51	포르투갈	15/10	10	10	10
52	카타르	10/5	10	10	10
53	루마니아	20/15	15	22.5	22.5
54	러시아	10	10	10	10
55	사우디아라비아	5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56	세르비아	15/5	10	10	10
57	싱가포르	15/10	15/10	10	10
58	슬로베니아	15/5	10	10	10
59	남아프리카공화국	10	10	10	10

〈표 2-III-3〉의 계속

(단위: %)

	국가	배당	이자	사용	기술료
60	스페인	15	15	10	10
61	스리랑카	15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62	수단	10	10	10	10
63	스웨덴	10	10	10	10
64	스위스	10	10	10	10
65	시리아	10/5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66	탄자니아	15/10	12.5	20	20
67	타지키스탄	10/5	10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68	태국	20/15	25/10	15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69	트리니다드토바고	10	10	10	10
70	터키	15	15/10	15	15
71	투르크메니스탄	10	10	10	10
72	우간다	10	10	10	10
73	우크라이나	15/10	10	10	10
74	UAE	10	12.5/5	10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간주
75	영국	15	15/10	15/10	15/10
76	미국	25/15	15/10	15/10	15/10
77	우즈베키스탄	15	15	15	15
78	베트남	10	10	10	10
79	잠비아	15/5	10	10	10

2. 인도 조세조약의 특정사항 검토

가.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국제거래에 있어서 PE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PE 판단이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PE는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적 장소이며, 따라서 지점 또는 사무실은 PE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전문화되는 사업 형태상 지점 또는 사무실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PE 개념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① 본래의 PE(Basic Rule PE)
- ② 대리인 PE(Agency PE)
- ③ 서비스 PE(Service PE)

1) 본래의 PE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하며, 여기서 고정(fixed)이라는 표현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리적 연관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인도 법원의 판례 중에서, 고정사업장의 판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표 2-III-4〉 고정사업장의 판단 판례

판례	내용
eFunds Corporation v ADIT (IT) (2010) 134 TTJ (Del)	후선지원업무(back-office operation)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만 하더라도 해당 지점은 고정사업장임
Pioneer Overseas Corporation v DDIT (2010) 37 SOT 404 (Del)	미국 법인의 인도 지점이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만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가가산 형태로 비용을 보상받음. 법원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순 보조적인 리서치 활동으로 보아 P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Seagate Singapore International Headquarters (p) Ltd, In re (2010) 230 CTR 110 (AAR)	물류서비스 회사의 보관창고가 PE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창고는 단순히 실물 재고의 보관 목적뿐만 아니라, 조사, 검사 및 재포장 기능을 하며, 적시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이므로 PE에 해당됨
Real Resourcing Ltd, In re (2010) 230 CTR (AAR) 120	글로벌 인력공급 회사에서 인도의 잠재적인 구직자들과의 연락을 위해서 인도 내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함. 이 경우 단순히 연락 역할만 하고, 가상의 사무실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 PE로 볼 수 없음

2) 대리인 PE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사람이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계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향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보조적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도가 체결한 일부 조세조약(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영국 등)에서는 계약을 관리하는 활동 수행도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대리인 PE와 관련한 인도 법원의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표 2-III-5〉 대리인 PE의 판단 판례

판례	내용
Pintsch Bamag, In re (2009) 318 ITR 190 (AAR)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가 독립대리인이라면, 하도급계약자의 사무실 존재 여부, 근무기간 등은 PE 여부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DDIT v Star Cruises India Travels Services (p) Ltd (2010) 39 SOT 18 (Mum)	인도 내에서의 매출량 조사에 대한 활동만을 위탁받아 행하며, 해당 조사활동이 외국법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PE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 서비스 PE

서비스 PE 규정은 상기의 PE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파견을 통하여 용역활동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고 사업소득을 획득한다면, PE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UN 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인, 기타 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용역의 제공(자문용역의 제공을 포함)으로서 이와 같은 활동이 단일공사 또는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계속되는 12개월 동안에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그 국내에 존속하는 경우 이를 PE로 본다. 인도가 체결한 일부 조세조약(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하루라도) 서비스 PE를 구성한다.

서비스 PE와 관련한 인도 법원의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표 2-III-6〉 서비스 PE의 판단 판례

판례	내용
Golf in Dubai, In re (2008) 306 ITR 374 (AAR)	인도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스폰서수익, 관리수수료, 광고수수료수익 등을 받는 UAE 회사의 경우, 1)인도 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고, 2)중속대리인과의 계약관계가 없으며, 3)수익 창출에 있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인도에 PE가 없음. 따라서 해당 소득은 인도-UAE 조세조약에 따라 인도에서 과세되지 않음
Worley Person Services Pty. Ltd In re (2009) 313 ITR 74 (AAR)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연관된 여러 건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AAR): 서비스 PE 판정.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음

4) PE와 소득의 귀속

OECD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기업이 다른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되며,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업의 소득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인도 과세당국 및 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PE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정상가격 규정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PE에 귀속할 소득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사용료 및 기술료

OECD모델상 사용료 수익은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며, UN모델상으로는 제한세율로 원천지국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 및 대부분 나라의 조세조약은 UN 모델을 따라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료의 정의는 각 나라 및 조세조약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을 포함한다.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에 더하여, 기술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료는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person)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사용료와 기술료의 정의는 각 나라 내국세법 및 해당 조세조약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인도 내에서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3.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가. 개요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GAAR)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통하여 세무 혜택을 누리려는 행위 또는 계약에 대하여,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규정 내용에 불구하고 인도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 소득세법상의 GAAR 개념은 2009년 직접세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GAAR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① 조세회피 및 탈세는 효율적, 효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세원을 확보하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고, 만일 조세회피의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주어지는 곳이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자원 및 부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며, 대부분의 세무 정책은 조세회피에 따라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납세자는 이를 저해하는 법적 실체나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과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조세회피 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인도 경제 개방의 확대에 인하여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고, 또한 조세 심판당국 및 법원은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③ 따라서 모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거래 형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추세도

이와 같다.

GAAR은 아직 시행이 보류되었으며, 2012년 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장(Chapter X-A)에 GAAR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GAAR은 2016/2017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1) 서론

2012년 재정법 개정 시 GAAR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 ① 세법 해석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
- ② 적용 세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세무정책과 거주자 판단, 투자 주체 등의 불투명한 세무 관할 결정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③ 대부분의 나라에서 GAAR의 일환으로 형식보다 실질 우선 조항을 채택하고 있음

2) GAAR의 광범위한 규정

납세자의 거래 목적이 부당한 조세 혜택의 향유라면 GAAR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조세 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별도의 적용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Act상 GAAR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구성 및 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GAAR 규정의 적용이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GAAR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GAAR 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조인, GAAR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면책(safe harbour)의 규정 등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GAAR 관련 조항은 어떠한 규정에도 우선한다. 즉 납세자의 어떠한 거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 행위(Impermissible Avoidance Arrangement, IAA)'인 경

우에는 법 규정에 우선하여 GAAR이 적용되며, IAA와 관련한 세무 효과는 GAAR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GAAR은 납세자의 거래단계, 거래의 일부 등 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

다.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행위

1) 의미

GAAR 규정에 따라 거래행위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IAA로 보고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A. 주된 기준: 거래 행위의 주요 목적이 세금 혜택을 얻으려는 것인가? 전체 거래 행위의 목적이 세금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의 과정 또는 거래 일부에서 세금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세금 혜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B. 특정 추가 기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① 거래가 시장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② 인도 세법 규정을 오용 또는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③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 또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④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2012년 개정초안에서는 납세자가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정 거래 행위로 인하여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실질과 상관없이 동 거래는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한 거래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개정 시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혜택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2) 주된 기준(main test)

행위(arrangement)는 거래, 영업, 계약행위, 합의,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며, 해당 거래, 영업, 계약행위, 합의, 계획 등의 법적 형식과는 무관하다. 주목적 또는 주목적 중의 하나는 인도 세법에 별도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적 의미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 혜택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 세금 납부의 이연효과 및 조세조약상의 혜택 등도 포함하며 세금 혜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세법상의 세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공제, 회피, 이연
- ② 세법상 환급액의 과다
- ③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공제, 회피, 이연
- ④ 조세조약을 이용한 과다환급
- ⑤ 소득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3) 특정 추가 기준(special additional test)

특정 추가테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가 포함된다.

- ① 과도한 권리 또는 의무 테스트
- ② 오용 또는 남용 테스트
- ③ 상업적 실질 테스트
- ④ 진실된 목적 테스트

4) IAA의 결과

어떠한 행위가 IAA로 간주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분을 받게 된다.

- ① 행위 단계의 부인 또는 결합
- ② 세법 목적상 행위 부인
- ③ 행위 거래 당사자의 부인 또는 결합

- ④ 행위 당사자 간 수익 비용의 재배분
- ⑤ 행위 당사자의 거주지국 재판단 및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재판단
- ⑥ 수행된 행위 구조 및 형식을 무시하고 거래 실질 판단
- ⑦ 자본/부채, 투자/수익 등의 재판단

GAAR은 다른 어떤 세법 대신에 혹은 세법에 추가하여 납세의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도 세법상의 다른 조세회피조항에 추가하거나 결합하여 적용된다. GAAR은 가이드라인 및 규정된 조건, 방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GAAR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관계 법령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GAAR 적용률에 대해 공표하였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조약의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GAAR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조세조약에 우선하는 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인도 세법이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라. 절차 규정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 세무조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중요 사항의 IAA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은 국세청장에게 GAAR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은 6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GAAR 적용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이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납세자가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이 IAA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 ② 납세자가 통지서에 응답하였으나 불충분한 경우: 이 경우 승인위원회(approving panel)의 결정을 따른다.
- ③ 납세자가 충분한 응답을 한 경우: 이 경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세무조사관과 서면으로 추가 논의한다.

국세청장의 결정은 세무조사관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승인위원회는 CBDT에 의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승인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포함된다.

- ① 국세청장 혹은 그 이상의 과세당국 고위 공무원
- ② 국장 직급 혹은 그 이상의 인도정부 법률담당 공무원

승인위원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의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이때 승인위원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양쪽 모두에게 추가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조사담당관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승인위원회가 해당건을 IAA로 결론내린 경우, 조사관은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관은 반드시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GAAR 규정상 IAA 여부에 대한 사전답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GAAR 규정은 2016/17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며, 과세당국은 이때까지 관련 법규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4. 이전가격세제

가. 개요

인도 이전가격 규정의 목적은 국제거래를 통하여 인도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타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관련 법률은 소득세법 제92~92F조, 시행령 제10A~10E조에 규정되어 있다.

인도는 OECD 회원국은 아니나 인도의 이전가격 규정은 넓은 의미에서 OECD TP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규정은 이전가격 결정방법, 관련 문서 구비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가격 결정의 중요성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이슈는 인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다국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인도 이전가격 규정 중에서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① 2013/2014과세연도부터 도매업(wholesalers)의 경우 (+/-) 1%, 나머지 업종의 경우 (+/-) 3%를 적용함
- ② TPO(Transfer Price Officer)는 과세당국(Assessing Officer)이 송부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짐
- ③ TPO의 이전가격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
- ④ 회계법인의 보고서 제출기한 관련 개정
- ⑤ 인도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지 않는 NJA(Notified Jurisdiction Area)에 위치한 자와의 거래 시 거래에 참여한 모든 자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
- ⑥ 국제거래의 정의 명확화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 ⑦ 특정 경우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규정 적용
- ⑧ APA 제도 도입
- ⑨ TPO의 권한 강화
- ⑩ DRP(분쟁해결위원회)의 권한 강화
- ⑪ DRP 결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과세당국도 이의제기 가능
- ⑫ 거래 무신고 또는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자료의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

나. 이전가격 규정

인도의 이전가격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의 이전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정상가격 개념은 인도의 소득이 국외로 이전되거나, 인도 내의 손실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인도의 과세대상 금액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1) 대상 국제거래

이전가격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재화 판매, 유무형자산의 구입 및 대여, 서비

스 제공, 원가분담 약정, 자금 대여 및 기타 소득의 이전을 수반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이다. 국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PE) 간의 거래도 정상가격 거래대상이 된다.

또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제3자와 특수관계자 일방이 사전에 계약을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제3자와 타방 특수관계자의 거래 조건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구조를 통한 이전가격 규정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한다.

2011년 Finance Act에 따라 인도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지 않는 NJA(Notified Jurisdiction Area)에 위치한 자와의 거래 시 거래에 참여한 모든 자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한다.

2) 특수관계자

인도 세법 규정상 특수관계자는 OECD모델조세조약상 정의인 직·간접적으로 경영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간의 관계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로 본다.

- ① 지분(의결권)의 26%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② 총자산 장부가액의 51% 이상의 자금을 대여
- ③ 총차입금의 10% 이상을 지급보증
- ④ 과반수 이상의 임원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⑤ 일방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이 타방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또는 독점적인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 ⑥ 일방 생산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90% 이상을 타방이 공급하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⑦ 제품 공급에 있어서 타방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⑧ 한 개인(HUF, Firm)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개인(HUF, Firm)의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인 경우
- ⑨ 각 기업 간에 상호 이익이 있는 기업인 경우

다. 정상가격 결정

1) 정상가격의 결정방법

인도 세법 규정상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동일하다.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② 재판매가격방법(RP: Resale Price)
- ③ 원가가산방법(CP: Cost Plus)
- ④ 이익분할방법(PS: Profit Split)
- ⑤ 거래순이익률방법(TNM: Transaction Net Margin)
- ⑥ 기타 규정된 방법(현재까지 규정된 방법 없음)

정상가격 방법의 적용순위는 없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정상가격 방법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거래간 비교가능성
- ②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정도와 신뢰성
- ③ 거래의 성격, 회계기준 차이의 정도/조정가능성 등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거래의 성격
- ②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
- ③ 계약 조건
- ④ 시장 환경
- ⑤ 중요 차이의 존재 여부 및 합리적 조정 가능성

2) 과세기준 정상가격

정상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적용되어야 하는 가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정상가격이 하나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그 정상가격들의 산술평균(arithmetical mean)한 값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인도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비교대상가격의 산술평균 값을 정상가격으로 보며,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도매업의 경우 (+/-) 1%, 기타 업종의 경우 (+/-) 3%의 범위까지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도매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2-III-1〉 정상가격의 조정

구분	2009년 개정 전	2009년 개정 후
서비스 수익 (A)	115	
영업비용 (B)	100	
영업이익 (C)	15	
총원가가산율 (C)/(B)	15%	
정상가격 가산율 (E)	25%	
서비스수익 정상가격 (F)	125	
정상가격 범위 (95% F~105% F)	118.75~131.25	
정상가격 조정금액	3.75 (118.75-115)	10 (125-115)

2011년 Finance Act 에 따라, NJA에 위치한 국가와의 거래 시에는 5%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업종에 5%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업종별로 중앙정부가 적용률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정상가격의 사전 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2012년 Finance Act에 따라 APA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CBDT가 납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전가격을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 해당 가격은 정상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APA에 사용할 이전가격 결정방법론은 일반적인 규정과 동일하며, APA 승인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APA는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최대 5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철회된다. 또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 수정 APA를 신청할 수 있다.

마. 문서화 의무

1) 개요

인도 TP 규정의 문서화 의무는 대체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문서를 매년 유지 및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모든 관련 문서는 적시에 구비하여야 하며, 늦어도 소득신고 기한인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의무 대상 문서는 지분관계도, 그룹 설명자료, 사업 설명자료, 거래 설명자료(성격, 계약내용, 거래량), 재무 예측치 등이다.

문서화 의무와 관련된 인도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III-7〉 문서화 의무 판례

판례	내용
Cargill India Pvt. Ltd v DCIT (2008) ITR (AT) 223 (Del)	세법상 규정된 문서화 의무는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하여, 모든 자료를 완벽히 구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은 케이스별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구비하고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요청하여야 함
UCB India Pvt. Ltd v ACIT (2009) 317 ITR (AT) 292 (Mum)	문서화 유지 의무는 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따라서 문서화 유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상가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즉, 문서화의 부족 및 자료 불충분 자체가 정상가격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음

납세의무자는 이에 더하여, 기능 및 위험분석, 비교가능 거래 분석 및 경제학적 분석 등을 포함한 이전가격 분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정상가격 산정방법 선정 이유와 합리적인 정상가격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기의 자료들은 이용가능한 데이터 및 자료, 시장분석자료, 가격공시 자료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연간 총 국제거래금액이 1천만루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서화 의무는 없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정상가격을 입증할 책임은 있다.

2) 회계법인 보고서

납세의무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보고서(Form 3CEB)를 구비하여야 하며, 소득신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Finance Act에 따라, 신고 기한이 9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문서화 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자료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법인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된 인도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표 2-III-8〉 회계법인 보고서 판례

판례	내용
Vanenburg Group BV, In re (2007) 289 ITR 464 (AAR)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이 인도 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TP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TP 문서화 의무 및 회계법인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음. 그러나 만약 인도에서의 면세가 특정한 조세 감면이나 공제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감면이나 공제 자체가 부인되어 궁극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상기의 이전가격 관련 의무 면제는 적용될 수 없음
I Gate Global Solutions Ltd v ACIT (2007) 112 TTJ (Bang) 1002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 자진신고조정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바. 가산세

인도의 이전가격 규정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문서화 의무 불이행 : 거래금액의 2%
- ② 세무조사 시 요청자료 미제출 : 거래금액의 2%
- ③ 소득 조정 : 조정금액에 대한 세액의 100~300%
- ④ 회계법인 보고서 미제출 : 10만루피

2012년 Finance Act에 따라, 다음의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가 신설되었다.

- ① 자료 및 문서화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② 국제거래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 ③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의 경우

사.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

1) 개요

인도의 이전가격 규정 및 이전가격 세무조사행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의견 교환,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점차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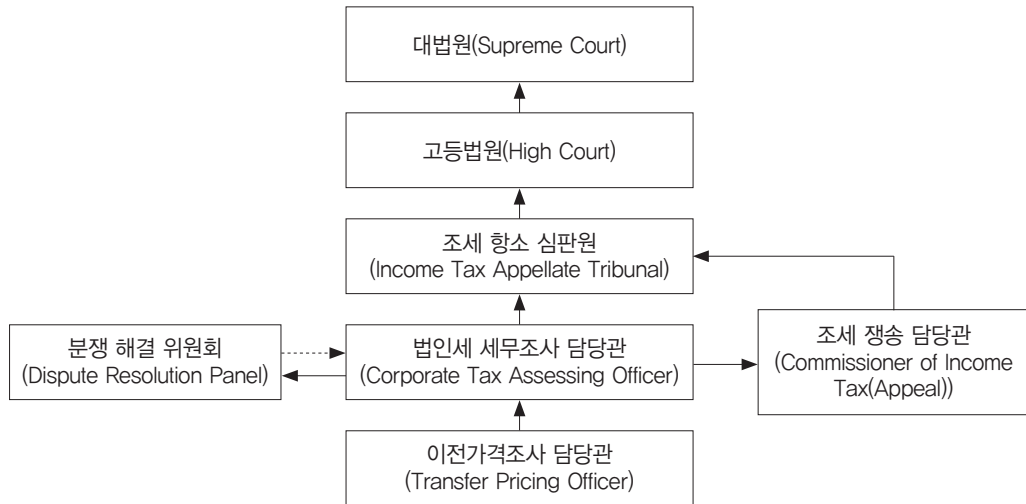
인도 세법에서는 인도 과세당국 내의 별도의 이전가격 조사담당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 이전가격 규정 및 CBDT에 의하여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이전가격 담당 조사관(TPO)으로 구성된다.

이전가격 조사담당 조직은 Income-tax (International Tax)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OECD 및 기타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인도에는 현재 Mumbai, Deli, Kolkata, Bangalor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Pune, Chandigarh, Jaipur, Kanpur, Cochin, Raipur 등의 도시에 이전가격 조사담당 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은 각각 인도의 여러 주 및 Union Territory의 이전가격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 체계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III-1] 이전가격 조사 및 불복체계



이전가격 조사는 일반적으로 AO가 기업 조사 시 국제거래 관련 사항을 TPO에게 전달하여 정상가격 여부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전달받은 TPO는 해당 국제거래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11년 Finance Act 개정에 따라 TPO는 AO가 전달하지 않은 국제거래 건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CBDT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O 역시 일반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납세의무자의 국제거래 총금액이 1억 5천만루피 이상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TPO에게 해당 사건을 전달하여야 한다.

3) 자료제출 기한

납세의무자는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30일 연장될 수 있다.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유지하고 적절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4) TPO와 AO가 독립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TPO 또는 AO는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독립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 ① 회사가 적용한 가격이 이전가격 규정에 위배되어 결정된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제공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법에서 규정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사용한 정보 또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성이 없을 때
- ④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5) TPO의 권한

TPO는 이전가격 조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① 자료 수집, 조사, 참석 요청,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자료의 검토
- ②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
- ③ 2011년 Finance Act에 의하여 현지 조사권한이 부여됨

또한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자료교환협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체약국 과세당국에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6) 조사결과 통지의 수정

인도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조사 내역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 통지를 수정할 수 있다.

TPO는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또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의 조사결과 통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O는 TPO의 수정에 따른 과세 증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의 수정은 과세연도 말로부터 4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 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세무조사 기한

일반적으로 AO에 의한 세무조사는 해당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3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7년 Finance Act에 따라 TPO의 세무조사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3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Ⅲ-9〉 세무조사 기한

구분	2012년 7월 1일 이후 TPO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신고일자	2009년 10월 15일
TPO의 조사 완료 기한	2013년 1월 31일
AO의 조사 완료 기한	2013년 3월 31일

상기의 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불복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8) 불복 절차

납세의무자는 TPO의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AO가 통지한 과세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불복 담당관은 이전가격에 대한 불복 제기인 경우에는 이를 이전가격 담당조직에 할당하여야 한다.

불복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9년 Finance Act에 따라 분쟁해결위원회 (Dispute Resolution Panel, DRP)가 신설되었다. 이후 조세항소심판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O의 통지 및 DRP 절차 이후 조세심

판 청구는 AO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조세심판 청구 이후 고등법원에 소 제기는 심판청구 통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에는 법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고등법원의 이전가격 소송 중 주목할 만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표 2-III-10〉 고등법원의 주요 판례

판례	내용
Moser Baer India Ltd & Ors v ACIT (2009) 316 ITR 1 (Del)	TPO는 정상가격 결정 후 과세통지 이전에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Denso Haryana Pvt. Ltd v CIT (2009-TIOL-696-HC-DEL-IT)	비교대상 거래분석의 목적 상 상품의 수입가격은 해당 수입연도의 국내 가격과 비교하여야 하며, 다음연도(판매년도)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Maruti Suzuki India Limited v Addl. CIT (2010-TII- 01-HC-DEL-TP)	인도 내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국외특수관계자의 상품 및 로고의 마케팅, 유통, 광고비용 등이 비교대상 회사가 부담한 비용보다 과다한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인도 내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많은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비용을 인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것임

고등법원 패소 후에, 대법원 상고 전 특별청원(Special Leave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당국 역시 납세의무자가 조세심판을 통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9) 분쟁해결위원회(DRP)

2009년 재정법에 따라 3명의 조세쟁송 담당관(Commissioner of Income Tax)으로 구성된 분쟁해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AO는 2009년 1월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이전가격 과세통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DRP 이전에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자료 준비 후 9개월 이내에 DRP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AO는 DRP 이후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때 앞부분에서 언급한 세무조사 기한은 적용되

지 않는다.

아. 기타 이슈

1) 이전가격과 관세 과세당국과의 관계

이전가격 과세당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과세당국 역시 제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수입가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제품 또는 상품의 수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가격 방법과 관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가격과 관세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관세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지나, 이전가격 측면에서는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 과세당국 모두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의 이전가격 및 관세 과세당국은 정보교환 등 상호 업무 협조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현재 이전가격과 관세 규정 간의 조정 및 협조를 담당할 실무 담당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계이고, 현재까지는 두 과세당국 간의 별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실정이다.

2)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상호합의는 상당히 큰 금액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대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절차이며, 상호합의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국제조세 이슈는 주로 이전가격(TP), 고정사업장(PE), 원천징수(WHT) 등이다.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특수관계기업 일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과세되는 경우 타방에서는 해당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대응조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양 국가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은 조세조약 및 관련 법률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상호합의는 국내법상의 분쟁 해결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상호합의 진행 시, 양 과세당국은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이전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할 수 있으며, 인도 과세당국은 특히 미국 및 영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에 관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해당 MOU에 따라 미국 및 영국 내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과세가 된 경우,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세금 추징이 유예되나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에 적절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호합의의 진행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합의 기간이다. 권한 있는 두 과세당국 간의 협의 시, 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으며,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MOU에 따라 상호합의의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인도 내에서 과세를 당한 많은 납세의무자가 상호합의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다른 여러 나라와 MOU를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 과소자본세제

기업의 자본금에 비하여 차입금(특히 주주로부터의) 비율이 높은 경우 과소자본상태라 표현하며,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됨에 반해, 자본금에 대한 배당지급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한다.

인도 세법상 이자율은 이전가격 대상이나, 자본과 차입금 비율에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조세피난처세제

인도는 현재 조세피난처(CFC: Contorlled Foreign Companies) 관련 세법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미송금 이윤에 대해서 인도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5) 비공개자료의 이용

인도 과세당국은 때때로 세법에서 정한 권한을 이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쟁기업들로부터 비공개자료를 구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제3자 거래자료를 확보하여 동시에 진행중인 다른 세무조사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확보한 비공개자료는 정보 제공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와 공유하며, 이 자료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 이외에도, 이 이슈는 전략적 가격 정책의 기밀유지 여부의 측면에서 인도의 이전가격 행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항이다.

자. 이전가격 관련 주요 판례

현재까지 인도 법원에서 판결한 이전가격 관련 주요 판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chefenacker Motherson Limited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요한 차이 조정방법에 있어서 생산능력, 기술사용, 감가상각 차이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금주의 이익(cash profit)을 사용하였고,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TNMM 적용 시 현금주의 이익을 PLI로 사용할 수 있다.

2) Skoda Auto India Private Limited

기업 초기의 사업 개시비용(start-up cost)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비교가능성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

3) UCB India pvt, Ltd.

TNMM 적용 시 회사 전체의 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회사가 TNMM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구분손익에 관한 자료가 관리되어야 한다.

4) Quark Systems pvt, Ltd.

회사가 경제학적 분석 시 선정한 비교가능 회사 중에, 비교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오류로 인하여 비교가능 회사로 선정된 회사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출할 수 있다.

5) Perot Systems TSI(India) Ltd.

인도 내의 회사가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에 무이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상 정상 이자수익을 인도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6) IL Jin Electronics(I)(P) Ltd.

회사가 45.51%의 원재료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고, 54.49%는 인도 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TNMM을 이용하더라도 이전 가격 조정대상은 45.51%에만 국한하여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적용한 방법론이 합리적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

7) Cheil Communication India Private Ltd.

원가 이윤 가산(Cost plus mark up)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mark up은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혹은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실비변상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회사의 비용을 구성하지 않는 이른바 pass-through cost에 대해서는 mark up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Serdia Pharmaceuticals(India) Pvt. Ltd.

CUP 방법 적용 시 보다 상세한 기능, 자산, 위험 분석이 필요하다.

9) Maruti Suzuki India Ltd.

인도 내 마케팅 활동에 따라 그룹의 마케팅 무형자산(브랜드) 가치가 증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상가격 보상이 요구된다.

10) Gemplus India Pvt. Ltd.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②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실제로 제공되었음
- ③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수익/절감 비용에 맞게 대가가 산정되어야 함

11) Logix Micro Systems Ltd.

회사의 결손 발생 원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적절한 이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외 특수관계자의 채권이 장기 연체된 경우, 회사는 법정기간(이자지급 유예)을 제외하고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12) GlaxoSmithKline Asia pvt. Ltd.

인도 내 과세권 측면에서 볼 때 중립적인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편 소비세제

I. 서비스세(Service Tax)

인도의 헌법상 소비세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존재한다. 첫째는, 수입품에 대한 countervailing duty와 service tax, central excise duty를 포괄하는 연방정부 단계의 CenVAT(Central Value Added Tax)이고 하나는 주 단계의 State sales tax와 State VAT이다.

1. 개요

인도의 서비스세(service tax)는 용역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소비세법의 별도 법은 없고 1994년의 재정법(Finance act) 제5장에 의하여 부과된다. 인도 소비세는 다음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① 간접세: 간접세의 형태로 중앙정부 수입의 원천이다.
- ② 별도 법이 없음: 별도로 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CBEC의 관할: CBEC(Central Board of Excise&Customes)의 관할이다.
- ④ 고정 세율(uniform rate):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12%이다.
- ⑤ 이중과세 없음: 서비스가 한 번 제공되면 서비스 세금도 한 번 납부한다.
- ⑥ Jammu와 Kashmir에는 미적용: Jammu와 Kashmir를 제외한 전 인도에서 적용된다.
- ⑦ 과세대상 용역에 과세

- ⑧ 소규모사업자 제외: 100만루피 이하는 면세점이다.
- ⑨ 과세대상 용역의 규정: 법으로 과세대상 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 ⑩ 세금은 대체로 용역 제공자에 의해 납부된다.

2.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대상자(person)가 서비스세를 납부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서비스세를 납부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납부(reverse charge)라고 하고 예외적인 경우란 다음과 같다.

- ①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과세대상 서비스가 인도 외의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제공될 경우 그 서비스를 국내의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 ② 보험대리인의 서비스 : 보험대리인의 보험 계리 서비스의 경우 세금은 보험회사에 의해 지급된다. 보험대리인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③ 뮤추얼펀드의 대리인의 용역 : 뮤추얼펀드의 대리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뮤추얼펀드에 납세의무가 있다.
- ④ 스폰서십을 받는 인도에 위치하는 회사나 기업 : 인도 내의 기업이나 회사에 제공되는 스폰서십 서비스의 경우 이 스폰서십을 받은 기업이나 회사가 서비스세를 지불한다.

3. 과세대상 서비스

서비스세는 과세대상 서비스에 부과하며 과세대상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약 119개의 서비스가 과세대상이며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서비스세 과세대상

	대상
A	광고대행 (Advertising agency's services), 항공 (Airport services), 항공여행 (Air travel agent's services), 건축 (Architect's services),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service), 경매 (Auctioneer's service), 휴게소 (Authorised service station's services), 자동입출금기 관리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 operations maintenance or management services)
B	은행 및 기타 금융업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미용 (Beauty treatment service), 방송 (Broadcasting services), 사업보조 (Business auxiliary services), 전시 (Business exhibition services), 사업보조) Business support services)
C	유선방송 (Cable services), 화물 (Cargo handling service), 공인회계사 (Chartered accountant's services), 청소 (Cleaning activity service), 결제 및 송금 (Clearing and forwarding agents' services), 동호회 (Club or association service), 상업건축 (Commercial or industrial construction services), 교육훈련 (Commercial training or coaching service), 비서 (Company secretary's services),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services (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access or retrieval services)), 복합건물 건축 (Construction of complex service), 자문 (Consulting engineer's services), 컨벤션 (Convention services), 원가회계 (Cost accountant's services), 택배 (Courier service), 신용 및 직불카드 (Credit card, debit card, charge card or other payment card service), 신용평가 (Credit rating agency's services), 통관대리 (Custom house agent's services)
D	디자인 (Design Services), 콘텐츠개발과 공급 (Development and supply of contents service), 준설 (Dredging service), 세탁 (Dry cleaning services)
E	조립 및 설치 (Erection, commissioning or installation service), 행사 (Event management service)
F	패션 (Fashion designing service), 선물계약 (Forward contract service), 프랜차이즈 (Franchise service)
G	일반보험 (General insurance service)
H	건강 (Health and fitness services)
I	보험부대용역 (Insurance auxiliary services),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인테리어 (Interior decorator's services), 인터넷카페 (Internet café service), 인터넷 전화 (Internet telephony services)

〈표 3-1-1〉의 계속

	대상
L	법률자문(Legal consultancy service), 생명보험(Life insurance service)
M	우편(Mailing list compilation and mailing service), 경영자문(Management or Business consultant's services), 수선(Management, maintenance or repair service), 결혼식용 텐트(Mandap keeper's services), 인력관리(Manpower recruitment or supply agency's services), 시장조사(Market research agency's services), 광산 및 석유가스(Mining of mineral, oil or gas service)
O	여론조사(Opinion poll services), 항만(Other port services), 외식(Outdoor caterer's service)
P	포장(Packaging activity services), 실외텐트(Pandal or shamiana contractor's service), 사진(Photography services), 항만(Port services), 프로그램(Programme producer's services), 홍보관리(Public relation management service)
R	기차여행(Rail travel agent's services), 부동산중개(Real estate agent's services), 부동산 대여(Renting of immovable property service), Recovery agent's services, 등록(Registrar to an issue's service), 택시대여(Rent-a-cab scheme operator's service)
S	광고물대여(Sale of space or time for advertisement services), 과학기술자문(Scientific or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보안(Security agency's services), 주식변경(Share transfer agent's service), 선박관리(Ship management services), 토지조성(Site formation and clearance), 굴착(excavation and earth moving and demolition services), 후원(Sponsorship services), 음향(Sound recording studio or agency service), 증기선(Steamer agent's services), 주식중개(Stock-broker's services), 창고(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 석유탐사(Survey and exploration of mineral, oil and gas service), 지도제작(Survey and map-making service)
T	기술조사(Technic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ervice), 기술평가(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 통신(Telecommunication Service), 여행(Tour operator's service), 항공화물(Transport of goods by air service), 철도화물(Transport of goods in containers by rail service), 육상운송(Transport of goods by road service), 파이프라인(Transport of goods, other than water, through pipeline or other conduit service), 항공여객운송(Transport of passengers embarking in India for international journey by air service), 크루즈여객운송(Transport of persons embarking from port in India by cruise ship service), 여행사(Travel agent's service)

〈표 3-1-1〉의 계속

	대상
U	주식공모(Underwriter's service)
V	비디오제작(Video production agency's services)
W	근로계약(Works contract service)

4. 과세표준 및 세율

서비스세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총액으로 과세된다. 이때 원재료 금액은 제외하며 VAT나 판매세(Sales tax)를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서비스세를 납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고 서비스의 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4년 제정 당시 과세대상 서비스에 12%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동세액의 2%의 교육세 및 1%의 SAH 교육세를 포함하여 12.36%의 세율로 과세되었다.

서비스세에 2% 부과되는 교육세는 일반교육세이고 1% 부과되는 SAH 교육세는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의 약어로서 1% 부과된다.

이때 송장에 교육세와 SAH 교육세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5. 면제와 감면

가. 일반 면제

중앙정부는 면제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서비스세의 일부나 전부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 면제는 조건부거나 비조건부 모두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 서비스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서비스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두 교육세를 모두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세는 서비스수출규정(Export of Service Rules)에 따른 수출되는 서비스인 경우는 면제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세가 면제된다.

- ① SEZ 구역의 기업이나 SEZ 개발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 서비스인 경우
- ②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RBI)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경우
- ③ UN기관이나 국제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인 경우

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면제

전년도 회계연도의 수입금액이 100만루피 미만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0만루피가 될 때까지 서비스세를 면제한다. 90만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다. 만약 서비스가 다른 납세대상자(person)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제공자의 경우라도 서비스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서비스세가 구매자가 서비스세를 부담하는 구매자부담(reverse charge) 방법으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동 서비스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 부분감면(Abatement) 및 총액 계산(Composition Scheme)

특정 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만 서비스세를 납부하는 부분감면(abatement)이 제공된다. 이러한 부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관세, 매입서비스(input service) 및 자본재에 대한 CenVAT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특혜 규정(No. 12/2003-ST)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총액 계산(composition scheme) 방법은 서비스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총액의 일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간편 계산방법을 사용시에 Cevat 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요한 부분감면 및 총액 계산방법의 특례 규정들은 모두 관련 법규나 명령을 따른다.

6. 세무행정 및 신고 납부

가. 소비세 및 관세 부분의 조직 체계

- 1)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Gpvernment of India)
- 2) 중앙 소비세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 Board)
- 3) 중앙 소비세청장(Chief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 4) 중앙 소비세청 국장(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각 Central Excise의 국(Commissionerate)별로 존재함)
- 5) 중앙 소비세청 부국장(Additional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 6) 중앙 소비세청 부부국장(Joint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 7) 중앙 소비세청 과장(Deputy/Assistant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for each division)
- 8) Superintendent(각 계(for each range) : 가장 낮은 지위의 Gazetted Officer 임(Customs Department의 appraiser와 같은 등급)
- 9) Inspector(Gazetted Officer가 아니며 Customs의 Examiner와 같은 등급임)

나. 사업자 등록

서비스세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대상자(person)들은 소비세청의 Superintendent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일을 경과하는 경우 1일 200루피씩 1만루피까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대상 서비스가 여러 가지인 경우라도 한 번의 등록만 하면 된다. 연간 90만루피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등록은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자가 100만루피를 초과하여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의 면제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등록은 전자상으로도 가능하며 이때 온라인상으로 등록번호가 즉시 부여된다. 그러나 등록증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이후 수령할 수 있다. 7일이 지나도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서비스세 납부기한(Due Date for Payment of Service Tax)

이전까지는 서비스세는 수령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발생시점 기준으로 납부한다. 2011년 3월 11일까지 서비스세는 associated enterprise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했고, 일부 금액 수령의 경우 비율대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비스세의 납부 조항은 2011년 4월 1일부로 크게 변화였다. 납부일은 대부분의 경우 송장(invoice) 발행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수금을 수령한다면, 수령 시에 서비스세를 납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14일 내에 invoice가 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세는 3월을 제외하고는 다음달 5일(전자납부의 경우 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개인, proprietary firm of partnership firm인 경우, Point of Taxation Rule(3월의 경우 제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는 분기의 바로 다음 분기 말 5일 내(전자납부의 경우 6일)에 납부할 수 있다.

3월 동안에 발생한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모든 납세자에게 있어서, 3월 3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라. 서비스세 납부방법

전년도에 100만루피를 넘는 금액을 서비스세로 납부하였던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의무적이다. 그보다 소규모의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선택적이다. 납부세액은 1루피 이하에서 절사한다. 기타 사항은 CBE&C에서 결정한다.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매일 100루피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동 벌금에 대한 지연이자(연간 18% 이율)는 면제되지 않는다.

II. 물품세(Exise Duty)

1. 개요

세관법(Customs Act, 1962)은 불법 수입과 제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1962년에 제정되었다. 모든 수입품들은 인도 통화의 환율에 따른 최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보호의 관점에서 부과되고 있다.

인도 내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duties of customs)는 1975년 제정된 관세법(Tariff Act, 1975)에 따른 세율로 과세된다. 수입 및 수출에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운송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상품의 분류에 등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세 감독국(CBEC)의 중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인도 세관 관세가이드’의 도서를 발간한다. 그 법은 재고품에 대한 규정까지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소비세 수입은 인도 정부에 대한 수익의 가장 큰 단일 원천이다. 연합 정부는 중앙 소비세 의무의 부과 범위와 양자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중앙 소비세 징수의 계획은 적절한 적응과 가격 관리의 다른 목적으로 필수 상품, 산업 성장, 소규모 산업의 진흥을 도우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인도 헌법 제265조에서 세금의 징수 및 부과는 법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4년 제정된 중앙 소비와 소금에 관한 법률(Central excise and Salt Act)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는 1985년 인도 소비관세법(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에 규정된 대로 부과된다.

2. 물품세의 종류²²⁷⁾

가. 기본 물품세 의무

이 물품세는 중앙 소비와 소금에 관한 법률(Central excise Act)에 따른 의무로서 인도 소비관세법(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의 규정과 세율에 따라 인도 내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 모든 소비재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제조업자가 납부하지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때 제조란 제조된 상품의 완성 의무, 제조된 상품의 포장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물품세의 전가는 제조 또는 생산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은 제조의 장소로부터 재화의 판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소비재도 물품세 납부 전에는 이동할 수 없는데 이때 이동에는 판매, 다른 장소로의 이전, 무료 배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에서 물품세는 Central Excise Act(1944)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법은 Central Excise Duty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법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할 기본적인 권한을 규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행령이 운영되고 있다.

- ① The Central Excise Rules, 2002 (Section 143 of the Finance Act, 2002)
- ② The Central Excise (Settlement of Cases) Rules, 2001
- ③ The Central Excise (Removal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 for Manufacture of Excisable Goods) Rules, 2001
- ④ Central Excise Valuation (Determination of Price of Excisable Goods) Rules, 2000
- ⑤ Consumer Welfare Fund Rules, 1992
- ⑥ The Central Excise (Advance Rulings) rules, 2002
- ⑦ Central Excise (Compounding of Offences) Rules, 2005

227) 본절의 내용은 http://business.gov.in/taxation/excise_duty.php를 참조하였다.

물품세는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조직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산하의 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의 일부 조직으로 부과와 징수, 밀수 방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CBEC는 하부 조직으로 Custom Houses, Central Excise Commissionerates 및 the Central Revenues Control Laboratory이 있다.

물품세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품의 구분이 필요하다. 물품세는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 (CETA)에 따라 재화를 분류한다. 동법은 물품세가 과세되는 물품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20장에 96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물품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제1장에는 유제품에 관련한 물품이, 제6장에는 화학 제약품이, 제11장에는 섬유와 관련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Central Excise Tariff Act는 2004년에 수정되었는데 6자리 코드로 상품을 분류하던 것에서 8자리 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물품세의 추가적인 의무와 특별 물품세

특정 종류의 물품들은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에 따라 특별물품세 (special duty of excise)의 과세대상이다. Additional Duty of Excise (Goods of Special Importance) Act, 1957와 같은 다른 법들에 따라 추가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 ① Basic Excise Duty(기초물품세) : 기초물품세는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의 First Schedule에 따라 과세된다.
- ② Special Excise Duty(특별물품세) : 특별물품세는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의 Second Schedule에 따라 과세된다. 현재는 해당 물품이 거의 없다.
- ③ Additional Duties of Excise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섬유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물품세) : 이 추가물품세는 Additional Duties of Excise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Act, 1978에 따라 과세되고 기본물품세에 15%의 세율로 추가 과세된다.
- ④ Additional Duties of Excise (Goods of Special Importance)(수입품에 대한

추가 물품세) : Additional Duties of Excise (Goods of Special Importance) Act, 1957에 따라 추가 과세된다.

그 외에 National Calamity Contingent Duty(NCCD)나 기타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물품세 규정이 있다.

3. 납세의무자

물품세를 납부할 책임은 제품의 경우, 항상 제조업체나 생산자에게 있다. 제조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① 개인적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②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③ 제3자에게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업자로 간주된다.

- ① 공장이 임대된 경우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임차인
- ② 제품의 원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실제로 제품을 제조한 사람
- ③ 제조업자의 경우 원재료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원료 공급자 및 소비자

4. 과세대상과 세율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4%에서 다음의 주요 예외사항인 경우 8%로 과세된다.

- ① 비스킷, 사베트, 케이크, 패스트리 등으로 지정된 식품
- ② 제30조 이하의 마약 및 의약품, 의료 장비
- ③ 종이, 판지 및 그 기사의 특정 종류, 파라실렌(Paraxylene)
- ④ 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원 구동 펌프

- ⑤ 250루피를 초과하고 750루피 미만인 RSP의 신발, 압력솔
- ⑥ 20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RSP의 진공 및 가스 전구, 콤팩트 형광 램프
- ⑦ 신체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 대형 자동차/엔진 용량 2,000cc의 유틸리티 차량
- ⑧ 가솔린 구동 트럭 및 로리의 물품세는 20%에서 8%로 감소하는 예외임
- ⑨ 특별 끓는 점의 spirit에 대한 물품세는 14%로 감소
- ⑩ 나프타에 대한 물품세는 14%로 감소
- ⑪ 물품세를 납부한 고속디젤과 20%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우 소비세에서 면제

이 외에도 법정된 화학물에 대하여 4%에서 8%로 증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또한 법정 물품들에 대해 면제도 존재하는데 여기엔 스마트카드 기록장치나 EVA 화학 혼합물 등이 포함된다. 포장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물품세가 면제되며 브랜드 보석에 대하여는 2%에서 0%로 물품세가 감소된다.

Ⅲ. 판매세(Sales Tax)²²⁸⁾

1. 개요

판매세는 재화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에는 주정부의 판매세(State Sales Tax)와 중앙정부 판매세(Central Sales Tax)의 두 종류가 있다. Central Sales tax는 일반적으로 주 간의 거래, 주 외의 거래, 인도에서의 수출과 인도로의 수입 물품에 대해 과세된다. 거래 대상의 주가 다른(inter-state Trade) 경우에는 주정부 판매세와 중앙정부 판매세 모두 부과되나, 같은 주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판매세만이 부과된다. 주정부에는 당해 주 밖에서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수출 과정에서 일어난 재화의 판매 또는 구입에 대하여는 과세권이 없다.

광의적으로 보면 거래 대상의 주가 다른(inter-state Trade) 경우의 중앙판매세(CST)는 재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주에서 과세된다. 비록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징수가 이루어진 주에 의해서 관리된다. 거래 대상의 주가 다른 판매(inter-state Trade)에 대한 조세를 관리하는 판매세 주무국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CST법을 관리하는 권한이 또한 부여되어 있다.

재화의 판매나 구입은 다음의 경우 주가 다른 거래로 간주된다.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의 이동을 야기하는 경우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가 이동하는 동안 재화에 대한 권리증서의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제품의 이동이 시작되고 같은 주에서 종료 때,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제품이 이동된

228) 판매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 외에 국세청(2008) 「인도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와 <http://finance.indiamart.com/taxation/salestax.html>을 참조하였다.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매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 밖으로 물품을 운송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동 의무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계약조항 내에 주 밖으로의 이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이 없는 경우 주 간의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주 내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물품이 다른 주로 이동한다면 주 내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

모든 판매자는 주 사이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그에 의해 초래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중앙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이며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를 포함한다. 중앙판매세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판매상은 등록이 되어야 한다.

3. 과세표준

중앙판매세의 납부는 판매상의 매출액에 대한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된다. 매상고는 판매상에 의해서 수령되거나 받게 될 판매가격의 총액이다. 순판매세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재화의 판매가를 차감한다.

판매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상에게 지급될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현금할인이 허용된 금액을 차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분리되어 부과되는 경우에 운반이나 인도비용 또는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는 인도 전이나 인도 시점에 재화에 대하여 판매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세율

1956년 제정된 중앙소비세법(Central Sales Tax)에 따라 1%에서 2%, 3%로 세율을 인상하고 1975년 7월에 4%까지 인상하였다. 그러나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2007년 4월부터 4%에서 3%로 세율을 감면하였고 2008년 4월부터 3%에서 2%로 세율을 낮추어 현재 세율은 2%이다.

5. 면제

재화의 판매가 그 주 지방세법에 의거, 조건 없이 면세되거나 4% 이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중앙판매세의 세율은 0이거나 그러한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낮은 세율이 될 것이다. 그 세금은 적용된다면 각 주 내에서 재화의 판매에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주내의 거래나 상업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동하는 동안 그러한 재화에 대한 권리 중의 이전에 의해서 동일 재화의 연속된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가 된다.

- ① 정부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특정 명세가 있다면 등록된 판매상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② 판매상이 그 재화가 구입된 등록 판매상으로부터 과세당국에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분, 주식, 증권 및 청구권의 판매는 판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6. 사업 청산시 중앙판매세의 납세의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 수령자가 기업에 의해 임명되어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임명일의 30일 이내에 판매세 당국에 공지하여야 한다. 판매세 당국은 3개월 이내에 청산시 회사로부터 세금의 총액을 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판매세 당국은 청산 시에 우선순위 채권자이다.

청산인은 판매세를 납부하기 이전에는 기업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청산

인은 판매세법에 따라 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를 먼저 납부할 수 있다.

개인 유한회사가 청산 과정중에 있는 경우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사들의 개인적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사들은 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의 미납이 이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히 한 경우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7. 제재

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fine)이 있거나 벌금이 없는 간단한 형벌이 있으며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오류가 있는 경우, Central Sales Tax Act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판매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명의상 대여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다른 목적으로 재화를 이용한 경우 등에 제재가 있다.

8. 주 판매세법(State Sales Tax Laws)의 일반 원칙

재화의 판매는 금전의 지불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는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세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우 재화의 판매에 대한 세금은 한 번만 부과된다. 여러 주법의 조항들은 납세자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판매중개인 등의 종류로 구별하고 있고 납세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납세자들이 등록한 사업의 종료에 따라 과세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분기 신고 시 납세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과시기에, 납세자는 관련 증빙을 판매세 과세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같은 경우의 재판매자는 유효한 재판매 증서가 있는 경우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가 면제되는 학교나 자선기관이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IV. 부가가치세(State VAT)

1. 개요²²⁹⁾

독립 이후 조세개혁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이다. 부가가치세(VAT)는 각 단계별로 과세의무를 지게 되는 다단계 과세(multi-point destination) 과세방식이다. VAT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납부한다. 각 단계에서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받기 때문이다. 이때 매달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환급이 발생하고 이 환급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만약 2차연도에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VAT는 기본적으로 주에서 과세되고 각 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 징수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VAT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VAT를 부과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재무부 내의 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은 두 하부조직(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와 Central Board of Customs and Central Excise (CBEC))을 통해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문제를 통제한다.

세수국의 판매세 관할 부서(The Sales Tax Division, of Department of Revenue)는 중앙 판매세(Central Sales Tax) 업무를 관할하면서 주간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관장한다. The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EC)는 Central Value added Tax (CENVAT) credit에 대한 정책을 관할한다.

229) <http://business.gov.in/taxation/vat.php>

반면 주 단계의 VAT의 시행에 관한 결정은 2004년 6월 18일에 열린 Empowered Committee (EC) of State Finance Ministers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주정부의 판매세는 주별로 다르고 또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하리아나(Haryana) 주는 VAT를 2003년에 최초 시행하였고 2005년 4월 1일부터 인도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11개의 주정부의 판매세는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고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개념이 같다. 타밀나두(Tamilnadu)주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우타프라데쉬(Uttar Pradesh)주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2. 과세대상과 세율

이상적으로 VAT는 단일세율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율의 차이는 최소이어야 한다. 주 단계의 VAT의 세율은 White Paper²³⁰⁾의 문단 2.18과 2.1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주 간에 변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30) White paper는 권한 있는 당국에서 작성된 정책 보고서를 의미한다. 부가세법에 대한 동 보고서는 29개 주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2005년 1월 17일 작성하였고 State Sals Tax VAT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각 주들이 이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않는다.

〈표 3-IV-1〉 VAT 과세대상과 세율

세율	상품
0	자연이나 미가공 산물, 사회적 의미가 있는 국기와 같은 물건들은 법으로 과세가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부가세 면제 권장 항목들은 약 46개가 있으며 이는 주가 각각 결정한다.
1%	금과 은제품, 귀금속류
5%	기초생활필수품(의약품 포함), 모든 산업과 농업용 원자재, 특정한 법정 재화와 자본재(White Paper에서는 4%를 권장하였으나 많은 주들이 5%로 상승시켰다.)
13.5~15%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상 제품(White Paper에서는 12.5%를 권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들이 현재 13.5%에서 15%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20%	항공 연료와 패트롤롤 생산물
제한 없음	주류, 담배, 복권

3. 과세방법

VAT는 매출액(turnover)이 매년 50만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들만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서는 20만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VAT는 세무신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제도(composition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소규모 사업자인 500만루피 미만의 매출액을 가지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편방법은 여러 주 사이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수입, 수출업자는 제외한다. 이는 인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중앙세가 아닌 주세(state tax)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부가가치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인도의 경우 SEZ(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부담이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또한 최종생산물이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 2%를 차감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매출액에 대하여는 12.5%로 세금을 납부하고 10.5%의 세율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제4편 기타세제

I.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

1. 개요

증권거래세는 인도 공인 주식시장에서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이고 매도자나 매수자에 따라 다른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표 4-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세율 및 납세의무자

주식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주식의 매수 - 주식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 실제로 주식의 양도와 발행이 있는 경우	0.125% (0.1%)	매수자
주식의 매도 - 주식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 실제로 주식의 양도와 발행이 있는 경우	0.125% (0.1%)	매도자
주식의 매도 - 주식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 실제로 주식의 양도와 발행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0.025%	매도자
2008.6.1 이전 -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의 매매	0.017%	매도자
2008.6.1 이후 - 주식의 옵션 매매 -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 주식의 선물 거래	0.017% 0.125% 0.017%	매도자 구매자 매도자
뮤추얼펀드로의 주식형펀드(equity-oriented fund)의 부분 매매	0.25%	매도자

주: () 안의 세율은 2012년 7월부터 감면되는 세율임(Finance Act, 2012)

2. 과세대상 주식의 가액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과세된다.

- ① 2008년 6월 1일 이전, 파생상품과 관계된 주식 거래의 경우 옵션이 내재된 주식의 발행가격(strike price)과 옵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2008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거래는 옵션 프리미엄과 행사가격(settlement price)로 결정된다.
- ② 선물의 경우 선물이 거래될 때의 가격
- ③ 다른 종류의 주식 거래시에는 구매되거나 판매되는 가격

위 가격 결정 방법은 다른 조항에 따라 다른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3. 기타 규정

가. 증권거래세상 용어의 정의

- ① Assessing officer(과세권자): Income-tax officer나 assistant commissioner of income tax or deputy commissioner of income tax 등
- ② derivatives(파생상품): Securities Contract(Regulation) Act, 1956에 따르는 파생상품
- ③ Equity-oriented fund: 투자펀드가 65% 이상을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 뮤추얼펀드의 방법으로 설립된 경우
- ④ Mutual fund, Securities
- ⑤ Taxable securities transaction: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파생상품 EOF의 거래 또는 EOF가 MF로 판매하는 경우
- ⑥ Taxable commodities transaction: 인정된 연합체에서 상품의 옵션, 상품의 파생상품의 옵션, 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나. 증권거래세의 징수

모든 주식시장과 상품거래시장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뮤추얼펀드의 대표자는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달 그 달의 7일까지 재무부(Government Treasury)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징수되지 않아도 납세자는 매달 그 달의 7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서식의 제출

규정된 기한까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이 통지를 보낸다.

4. 증권거래세의 세무행정

가. 부과 절차(Assessment Procedure)

과세관청은 과세의 목적에 맞는 계좌, 서류, 증거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자료가 수집된 이후 과세관청은 평가의 근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과 주식 및 상품거래의 가치를 결정한다.

대상 회계연도의 말부터 2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기록에서 발견된 실수를 확인하면 과세관청은 수정 대상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달 1%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증권거래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①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데 실패한 납세자의 경우 징수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동일한 금액
- ②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였으나 Government Treasury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매일 1000루피의 금액(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한도로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매일 100루피의 금액을 납부한다. 증권거래세 부과 단계에서 공지를 따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만루피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그럴만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나. 불복(Appeals)

과세명령에 대한 이견이 있는 납세자는 30일 내에 CIT(Commissioner of Income Tax)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1천루피의 청구비용이 소요된다.

CIT의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나 CIT는 50일 이내에 AT(Appellate Tribunal)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1천루피의 청구비용이 소요된다.

다. 형벌(Prosecution)

잘못된 진술이나 잘못된 계좌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CIT의 이전 제재는 검사의 기소가 필요하다.

II. 배당분배세

기업들은 세후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세후 수익에서 배당된 금액은 다시 주주 부담으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동일한 금액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많은 국가들은, 면제방식(exemption method)이나 공제방식(credit method) 중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한다. 면제방식에서,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주주에 대해 완전히 면제된다. 공제방식에서, 주주는 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인도에서 1996년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주주 부담으로도 과세가 되었다. 1997년 재정법(Finance Act)은 주주 부담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재무부의 손실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보상하기 위해, 1997년 재정법은 결의, 배당 또는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회사가 납부하는 추가적인 조세 또한 도입하였다.

1. 국내 회사가 배당금으로 분배한 수익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1150조는 배당분배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해 규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배당금 형태로 국내 회사가 결의, 분배 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된다(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
- ② 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해당 회사 총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더하여 부과된다.
- ③ 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해당 배당금이 임시 또는 확정적인지 여부 또는 이익 잉여금이나 경상수익에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 ④ 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총소득에 대해 국내 회사가 내야 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납부해야 한다.

- ⑤ 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해외 회사는 납부하지 않는다.

가. 배당금의 정의

배당분배세는 배당금으로 결의, 분배 또는 지급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배당금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① 회사가 자사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주에게 수행하는 면책을 수반하는 배당
- ② 사채, 무상환 사채나 예금증서 등을 통하거나 우선 주주에 대한 무상주를 통한 배당
- ③ 회사 청산에 따른 배당
- ④ 자본감소(reduction of capital)에 따른 배당
- ⑤ 소유집중회사에 실질적인 이익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선수금 또는 대출

배당금이 상기 ①~④ 범주에 해당되면, 회사는 배당되는 수익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배당금은 주주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배당금이 ⑤ 범주에 해당되면 회사는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배당금은 주주에 대해 과세된다.

나. 배당금에 대한 세율

2013-14과세연도의 배당분배세의 세율은 15%이고 10%의 부가세와 3%의 교육세를 반영하면 16.995%이다.

다. 배당분배세 납부기한

배당분배세는 배당금 결의일, 배당금 분배일, 배당금 지급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라. 배당분배세의 지연납부 이자

배당분배세가 상기 정해진 시한 즉, 14일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으면, principle officer 또는 해당 회사는 해당 조세의 최종 납부일 바로 다음 날부터 해당 조세가 실제 납부된 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이익분배금에 대한 세액의 월 1% 단 순이자 또는 그 일부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마. 가산세 및 법적 처벌

배당분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부하지 못한 이익분배금 조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할 배당분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바. 배당분배세 공제 가능 여부

배당분배세는 회사나 주주 어느 쪽이든 과세소득 공제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 해외 관할권의 배당분배세 공제 가능성

해외 관할권에 속하는 주주들에 배당되는 이익에 대해 인도 회사가 납부하는 조세의 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조세는 인도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인도에서 납부된 조세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세는 수령자의 소득이 아닌 배당금 지급 회사에 부과된다. 따라서, 배당분배세의 공제 여부는 대체적으로 해당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속한 관할권의 현지 법에 달려 있다.

2. 뮤추얼펀드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

인도의 단위 신탁 또는 뮤추얼펀드의 지분 소유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는 아래 표와 같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표 4- II -1〉 뮤추얼펀드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

(단위: %)

구분	세율
MMMF (money market mutual fund) 또는 유동자금에 의해 개인이나 HUF (Hindu Undivided Family)에 배당되는 소득	25
MMMF (money market mutual fund) 또는 유동자금 이외의 펀드에 의해 개인이나 HUF (Hindu Undivided Family)에 배당되는 소득	12.5
모든 펀드에서 상기를 제외한 모든 납세대상자(person)에게 배당되는 소득	30

상기 조세는 뮤추얼펀드가 납부한다. 상기 조세는 주식형 펀드(equity-oriented fund)에 의해 배당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형 펀드는 투자 가능한 펀드가 펀드 총수익의 65% 이상을 국내 회사의 주식 자본에 투자하는 경우의 펀드를 의미한다. 이러한 펀드의 주식 지분 보유율은 시가와 종가 수치의 월평균을 연평균하여 계산된다.

지분 소유주는 뮤추얼펀드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및 이자의 납부와 관련한 여타 조항과 이러한 조세의 납부 불이행에 관한 기타 처벌 조항은 배당분배세 납부에 적용되는 내용과 동일하다.

III. 부유세(Wealth Tax)

1. 개요

부유세는 매년 납세자의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는 달리 부유세에 서는 납세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 HUF(Hindu Undivided Family), 기업에 부과되며, 평가일의 순자산에 과세된다. 부유세법 제2조 q항에서는 평가일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로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는 순자산의 1%를 납부하고 순자산이 150만루피를 초과할 때에만 납부의무가 있다. 이때 순자산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순자산의 합을 의미하며 대상 자산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과세대상, 과세 포함, 감면 자산

가. 과세대상 자산

다음의 자산 중 예외규정으로 적용된 자산을 제외하고 부유세가 과세된다.

- ① 거주용 또는 상업적 목적, 게스트하우스의 유지, 시 근처 지역의 농장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나 구축물
- ② 자동차
- ③ 보석, 금, 백금 또는 보석으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작한 고급가구
- ④ 요트, 보트 및 항공기
- ⑤ 도시 토지
- ⑥ 5만루피를 초과하여 수중에 보유하는 개인 및 HUF의 현금, 이 외의 인의 경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총금액

나. 과세에 포함하는 자산

부유세법 제4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후에도 납세자의 순자산으로 보는 과세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표 4-Ⅲ-1>의 다음 자산은 부유세 과세대상이다.

<표 4-Ⅲ-1> 부유세 대상 자산

납세자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간주 자산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거주하거나 적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산 - 개인의 미성년 자녀나 결혼한 딸이 보유한 자산 - 인 또는 AOP에게 이전한 취소가능 계약 자산 - 부적당한 대가로 아들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산 - 그의 자녀들의 배우자에게 즉시 또는 이연된 이익이 발생하도록 부적당한 대가로 인이나 AOP에게 이전한 자산
firm의 파트너/ 조합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m이나 association의 파트너/구성원의 지분의 가치 - 미성년자의 지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지분 가치는 부모의 자산에 포함된다.
개인, HUF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재산으로 전환되는 개인의 모든 재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동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소유로 전환됨 b) 전환된 자산은 개인의 소유자산으로 간주됨 c) 전환된 자산의 부분, 이 부분에 개인의 배우자에 의해 수령된 주식은 배우자에게 개인이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모두	- 취소불가능 계약으로 이전된 자산의 취소권이 생긴 경우 자산으로 간주됨
모두	- 기부자의 수중에 있으면서 장부상으로만 이전된 재산의 증여
모두	- 비분할 부동산의 보유자를 소유자로 봄
co-operative society, 회사 또는 AOP(Associate of Person)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ety, 기업 또는 조합의 소유인 거주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할당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건물 부분의 소유자로 봄 - 이러한 계획하의 특별한 설치물의 가치는 건물 부분과 관련된 채무로서 공제됨
모두	- 특정 법률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로 봄

다. 과세 제외 자산

부유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표 4-III-2>의 자산은 과세제외한다.

<표 4-III-2> 부유세 과세 제외 자산

면제 자산의 특성	예외
인도 내에서 자선 또는 종교적인 모든 공익 목적의 신탁 또는 법률단체 하의 납세자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영업과 관련되는 자산
납세자가 속해 있는 HUF의 모든 상속재산의 납세자의 지분	
통치자(Ruler)가 점유한 건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앙정부의 상속인으로 등록된 통치자의 소유 보석	
인도 혈통 또는 인도 국민이 외국에서 영구 거주 목적으로 인도에 들어오는 경우 그의 귀국 1년 내에 인도로 가져온 재산	
개인 또는 HUF에 속해 있는 일주택, 주택의 부분, 작은 밭	

3. 과세방법

가. 순자산의 계산방법

부유세 과세대상이 되는 순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항목	인도 루피
제2(ea)항의 자산	3,000,000
제4조의 deemed asset	1,500,000
총자산	4,500,000
제5조의 면제 자산	(-) 500,000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	4,000,000
제2(m)의 차감 부채	(-) 100,000
순자산	3,900,000

나. Foreign Citizens, Non-residents와 NOR의 순자산

인도 국민이 아닌 개인, 인도 내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HUF, 인도 내의 거주자나 HUF이지만 NOR(비정규거주자)인 경우 또는 비거주자 기업인 경우에는 해외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 납세대상자(Person)에 따른 납세 범위

〈표 4-Ⅲ-3〉는 납세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납세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인도 국적 개인과 HUF이면서 인도 거주자인 경우 인도 내, 외의 모든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표 4-Ⅲ-3〉 납세대상자(Person)에 따른 납세 범위

	인도 거주자	인도 비거주자와 NOR
인도 국적 개인(citizen) 과 HUF	과세 재산: $(a-b) + (r-s)$	과세 재산: $(a-b)$ 비과세 재산: $(r-s)$
인도 외 국적	과세 재산: $(a-b)$ 비과세 재산: $(r-s)$	과세 재산: $(a-b)$ 비과세 재산: $(r-s)$

주: a: 인도에 위치한 모든 자산 b: 인도에 위치한 모든 부채
r: 인도 밖에 위치한 모든 자산 s: 인도 밖에 위치한 모든 부채

4. 과세행정

가. 신고 방법

면세점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모든 인은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부과

자기 부과, 고지, 정기 부과, 기한 등의 규정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단 납부할 세액과 이자를 조정한 이후 세금과 이자를 고지하는 기한은 부유세법 제16조에 따라 처음 과세된 이후 2년으로 한다. 상세 조사의 공지기간은 법 제16(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지 12개월 이내로 한다.

부유세법 제16A조에 따라 자산의 평가자들에게 자산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법정 평가자가 평가한 자산의 가치가 시장가치보다 낮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가 신고된 자산의 가치보다 크고 그 증가액이 법정 비율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지연이자와 가산세(Interest and Penalties)

순자산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에 실패하여 지연이자를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산세, 자산의 숨김에 따른 공지, 벌금의 감액에 대한 규정이 있다.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조세조약에 부유세를 포함한 국가들이 있으나 한국과의 조세조약에는 제외되어 있다.

참고문헌

CCH, India Master Tax Guide 2011/12, CCH, 2011

CCH, India Master Tax Guide 2012/13, CCH, 2012

KOTRA, 「KOTRA 국가정보 인도편」, 2010

인도통계청 홈페이지(www.mospi.nic.in)

인도재무부 홈페이지(indiabudget.nic.in)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India 2012, A publication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PwC, Navigating growth amidst challenges Union Budget, 2013

〈저자약력〉

최기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영화(현, 한영) 회계법인 근무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보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금융세무본부 근무

현, 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인도 편 -

2013년 11월 18일 인쇄

2013년 11월 25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7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0,000원

